

우리나라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2016.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 동 규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훈 공인회계사

조 승 수 공인회계사

신 영 효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2
1. 개관	12
2. 혼성불일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14
가. D/Nl(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14
나. DD(Double Deduction outcome)	19
다. 간접 D/Nl	21
3. 제정원칙 및 정의	24
가. 제정원칙(권고사항 9)	24
나. 구조화 약정(권고사항 10)	25
다. 특수관계인,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권고사항 11)	27
라. 기타 정의(권고사항 12)	28
III.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고려사항	30
1. 혼성불일치의 발생원인 분류	30
2.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33
가. 금융상품 · 혼성양도 · 대체지급에서 혼성불일치 전제로의 배당과세혜택	33
나. 금융상품	34
다. 혼성양도	45
라. 역혼성체와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	48

마.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 요약.....	54
IV. 주요국의 혼성불일치 관련 세제 현황.....	56
1. 주요 투자국의 국외배당과세 정책 및 배당·이자소득 구분.....	56
가. 미국.....	57
나. 일본.....	63
다. 싱가포르.....	65
라. 네덜란드.....	67
마. 룩셈부르크.....	69
바. 캐나다.....	72
사. 국제비교.....	75
2.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연결납세.....	78
가. 미국.....	79
나. 중국.....	80
다. 베트남.....	82
라. 홍콩.....	82
마. 국제비교.....	83
V. 해외의 입법현황.....	85
1. EU	85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85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87
2. 미국.....	92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92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94
3. 호주.....	95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95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96
4. 영국	101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101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103
5. 일본	117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117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117
6. 국제비교	120
VI. 시사점	123
1. 주요 분류별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123
가. 금융상품과 관련된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124
나. 혼성채 등과 관련된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125
다. 이전불일치에 대한 위험 평가	128
2. 조세정책적 시사점	128
가. 경제적 영향·세수확보 측면을 고려한 적용시기 고려	128
나. 시행시기 이전의 충분한 대비기간 및 전파	130
다. 불확실한 과세에 대한 명확화	132
3.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실체법적 시사점	133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정비	133
나. 동업기업특례제도의 적용제한 규정	134
다. 비용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135
라. 적용 배제의 대상 고려사항	136
마. 일반적 또는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과의 상호보완 가능성	137
바. 특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중과세에 대한 고려	138

4. 여타 세제에 대한 시사점.....	140
가. 과소자본세제와의 상호작용.....	140
나. 유보소득 과세(CFC 규정) 고려사항.....	142
다. 연결납세 · 합병 · 법적실체와 도관 간 변경 시 결손금공제제도 보완.....	144
5. 조세행정적 시사점.....	145
가. 개별 사례의 축적을 통한 접근방법 및 이의 적용대상.....	145
나. 조세정보 교환 노력.....	146
다. 이중포함소득 및 결손금 산정을 위한 구분경리.....	148
라. 납세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고려.....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59
〈부록 1〉 BEPS Action 2 권고사항.....	159
〈부록 2〉 BEPS Action 2 사례 요약.....	173

표 목차

〈표 II-1〉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23
〈표 II-2〉 제정원칙 및 개념 정의 관련 권고사항	29
〈표 III-1〉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요소 구분.....	31
〈표 III-2〉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분류	40
〈표 III-3〉 항목별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과 그 설명 위치.....	55
〈표 IV-1〉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3개년(2013~2015년) 평균.....	56
〈표 IV-2〉 혼성금융상품의 세무상 처리(싱가포르).....	66
〈표 IV-3〉 주요 투자국의 배당 및 이자소득 정책 비교.....	77
〈표 IV-4〉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3개년(2013~2015년) 평균.....	78
〈표 IV-5〉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결손 이전 가능성.....	84
〈표 V-1〉 혼성불일치 유형별 EU 지침	91
〈표 V-2〉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따른 조세수입 추산(미국).....	93
〈표 V-3〉 호주 조세위원회의 권고안	97
〈표 V-4〉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따른 조세수입 추산(영국).....	102
〈표 V-5〉 상황 2에 따른 허용불가능한 불일치 금액 산식.....	108
〈표 V-6〉 영국의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116
〈표 V-7〉 일본의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세무처리.....	119
〈표 V-8〉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국제 비교.....	121

〈표 VI-1〉 금융상품의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사례.....	125
〈표 VI-2〉 혼성채 등의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사례.....	127

I. 서론

-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OECD/G20은 2015년 10월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 중 혼성불일치 대응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 혼성불일치는 Action Plan 15개 보고서 중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에서 다루고 있음
- OECD/G20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은 공동의결 및 포괄적 협력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이행체계에 맞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현재 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66개국(2016년 10월 31일 기준) 중의 하나임
 - 이행체계는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기존기준 수정, 모범관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혼성불일치에 관련된 권고사항은 공통접근으로 분류됨
 - 공통접근은 강한 이행의 권고이며, 향후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기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혼성불일치 규정은 공통접근임에도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음
 - EU 회원국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혼성불일치 대응규정 입법을 위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가장 먼저 대부분의 입법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혼성불일치는 폭넓은 범위, 다양한 사례, 국외 세제와의 연계, 관계되지 않는 정보의 식별 등으로 인해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항목임
 - 금융상품, 도관체와 법적 실체, 고정사업장, 이중거주자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세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국외세제의 상황을 대입하여야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함
 - － 또한 세제 이외에 각국의 금융시장, 회사법상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국내의 연결세제, 손실이전규정, 합병세제, CFC규정, 과소자본세제 등과 연계되어 적용됨
 - 혼성불일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도 요구됨

- 따라서 본고는 혼성불일치 규정을 준비하기 위해 Action 2 보고서 중심이 아닌 국내외 세제를 사례 등과 대비하여 연구를 수행함
 - Action 2 보고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실제 세제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tion 2 보고서 본문을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권고사항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으며, 사례와 국내외 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

- 다만, 이 연구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 및 국외세제 파악에 대한 한계 등으로 연구의 범위와 깊이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국외세제에 대한 명확한 세무상 대우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모든 거래상황에 대한 국외세제의 조사가 이루어지 못함
 - 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외의 세제상 대우를 확인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통계 및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의 계량적 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

II.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 개관

- OECD에서 발표한 BEPS Action plan 2 보고서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거래의 유형별로 권고사항을 제시함
 - 혼성불일치 거래는 D/Ni, DD, 간접 D/Ni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세부 권고사항이 제시됨
 - 혼성금융상품 규정, 역혼성체의 지급 규정의 경우 권고사항 이외에도 국내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규정이 함께 제시됨
- 혼성불일치 거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세부 권고사항이 제시됨
 - 첫째, 소득에서 공제/소득에 불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지급(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이하 D/Ni): 지급인은 비용으로 공제 처리하나 수취인은 관련 소득을 경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혼성금융상품: 금융상품의 조건 및 혼성양도 등으로 인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 －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Disregarded payment made by a hybrid): 혼성불일치를 의도한 거래나 지배그룹의 관계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인식하지 않는 지급
 - － 역혼성체의 지급(Payment made to a reverse hybrid): 설립국가에서는 도관체로 간주되나, 투자국가에서는 과세실체로 간주되는 역혼성체와 관련된 지급

- 둘째, 이중공제되는 지급(Double Deduction outcome, 이하 DD): 동일한 지급에 대하여 중복공제되는 경우
 - 공제가능한 혼성지급(Deductible payment made by a hybrid): 국외 지점 혹은 혼성체를 통한 거래로서 지급국가에서 공제한 지급액을 모법인 관할국에서도 공제하여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지급
 - 이중거주자의 지급(Deductible payment made by dual resident): 이중거주자의 지급액이 양 관할국의 법률에 공제함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되는 지급
 - 셋째, 간접 D/NI결과가 발생하는 지급: 조직화된 거래를 통해 불일치가 이전되어 간접적으로 D/NI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이전된 불일치 거래(Imported mismatch arrangements): 일반 대출과 같은 비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역외 혼성불일치 효과를 국내로 이전하는 거래
- 혼성금융상품 및 역혼성체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규정도 함께 제시됨
- 권고사항 2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지급인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에 대한 수취인의 배당소득 면제를 부인하고, 지급인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에 비례하여 수취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한하도록 권고함
 - 권고사항 5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역혼성체의 지급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과 역외투자제도를 개선하고, 도관으로 분류되는 중간실체의 도관성 제한을 고려하도록 권고함
- 다음에서는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 제시된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별 권고사항을 살펴봄

2. 혼성불일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가. D/Nl(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1) 혼성금융상품(권고사항 1)

- ☐ 권고사항 1에서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양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규정과 후속규정 및 규정 적용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음
 - 혼성금융상품 규정은 혼성불일치가 초래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지급에만 적용되며 적용 범위에 혼성양도거래가 포함됨
 - 혼성양도란 금융상품 양도를 위해 체결되는 거래의 당사자 모두 각각의 관할국에서 해당 자산 소유자로 간주되는 거래를 의미함
- ☐ 혼성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이 권고되며 금융상품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나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의 지급에 적용되어야 함
 - 지급인 관할국은 D/Nl가 발생하는 지급에 대해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해야 함
 - 지급인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수취인 관할국에서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금액을 경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 혼성금융상품 규정은 세무처리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에 따른 거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에 적용됨
-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 Example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가 제시됨

- 혼성불일치 발생, 혼성금융상품 및 혼성양도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규정 적용에 따른 조정 방법 등을 제시함

2) 금융상품의 세무처분에 대한 특별 권고사항(권고사항 2)

- 권고사항 2에서는 국가 간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의 세무처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특별 권고사항을 제시함
 - 권고사항 2.1에 따르면 과세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을 수령한 관할국에서 배당소득 면제나 이와 동일한 조세감면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뿐만 아니라 수취인 관할국은 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 면제의 유사한 기타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권고사항 2.2에 따르면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성양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려는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함
- 권고사항 2의 적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2 Example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과 권고사항 2 특별 권고사항 간의 조정 및 적용방법을 설명하는 사례가 제시됨
 - 배당세액공제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 2의 우선적용 및 세액공제의 제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음

3)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권고사항 3)

- 권고사항 3의 목적은 세무처분의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구조화 하거나, 동일 지배그

룹의 관계사 간 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수취인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인식되지 아니한 혼성체가 지급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D/NI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수취인 관할국의 법률에서 소득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즉, 이중 포함된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 적용할 경우)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disregarded payment)은 세무정책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권고사항 3은 우선규정을 통해 지급인의 관할국에서 이중으로 포함된 소득에서 공제된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을 제한하고,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통해 수취인의 관할국에서 경상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
 - 수취인과 지급인의 관할국에서 모두 지급이 소득으로 포함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포함된 소득으로 간주함

- 권고사항 3은 기본적으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적용하며 불일치의 당사자가 동일한 지배그룹 내에 있거나, 구조화 약정 당사자로부터 기인한 지급에 적용함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3 Example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혼성금융상품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고사항 3의 적용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례, 권고사항 2의 특별규정과의 조화를 설명하는 사례가 제시됨
 - 혼성체를 이용한 혼성대출,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한 미인식 혼성지급이 발생한 상황에 권고사항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사례에 따르면 각 관할국에서는 과세기간이나 손익의 인식시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권고사항 3에 따른 세무처분의 불일치에 해당하지 않음

4) 역혼성체의 지급(권고사항 4)

- 역혼성체에 의한 공제가능한 지급액이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세무 처분상 불일치를 발생시키므로 권고사항 4에서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범위까지 지급인 관할국에서 해당 지급에 대한 비용 공제를 부인하도록 권고함
 - 역혼성체란 설립지 관할국에서 도관체로 간주되는 반면에, 투자자 관할국에서 과세 실체(opaque)와 같은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는 거래 당사자를 의미함
 - 역혼성체가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지급액을 배분하고, 설립지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배분이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때 당사자는 거래상 도관체로 간주됨

- 권고사항 4는 기본적으로 역혼성체로 인해 발생한 혼성불일치에 적용하며 불일치의 당사자가 동일한 지배그룹 내에 있거나, 구조화 약정 당사자로부터 기인한 지급에 적용함
 - 역혼성체는 투자자에게는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고, 설립지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도관체로 간주되는 거래 당사자를 의미함
 - 만약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가정 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함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4 Example에서는 역혼성 규정에 따른 조정 방법, 역혼성 규정 적용 대신 CFC 규정 적용 등을 통한 불일치 해소 사례 등이 제시됨
 -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역혼성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상황의 경우 역혼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5) 역혼성체의 세무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권고사항 5)

- 권고사항 5에서는 역혼성체에 대한 세무처분과 관련하여 권고사항 2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의 개선을 위한 3가지 특별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도관체에 대한 국외 지급의 세무처분이 발생시키는 혼성불일치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자 관할국의 국내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혼성불일치 규정과는 달리 권고사항 5의 특별 규정은 지급에 대한 세무처분을 조정하지 않음
- 권고사항 5에서는 CFC 규정과 역외투자제도의 개선,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과세 도관성(tax transparency)의 제한, 중개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 요구를 권고함
 - CFC 규정과 역외투자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급인의 관할국에서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음
 - 과세 도관성(tax transparency)의 제한을 통해 설립지 관할국에서 역혼성체를 거주자인 납세자처럼 취급할 것을 권고함
 - 과세관청은 해당 관할에서 설립된 도관체에 대하여 적절한 보고와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투자자 보유 지분, 투자자에게 배분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 상기 정보는 투자자 관할국의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되어야 하며, 국가 간 행정 차원의 협력 시 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비밀유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권고함¹⁾
- BEPS Action 2 보고서에서는 권고사항 5에 대한 별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례의 해결방안 및 분석에 권고사항 5에 따른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1)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G20 정상들이 지지한 회계정보의 자동적 교환기준(the AEOI Standard, OECD 2014a), OECD 모델조세협약 제26조, 상호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ECD, 2010) 등이 존재함

- 권고사항 5에 따른 CFC 규정과 역외투자제도의 개선, 역혼성체에 대한 과세 도관성의 제한, 중개기관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보요구 등이 보고서상 제시된 혼성불일치 해결방안을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함

나. DD(Double Deduction outcome)

1) 공제가능한 혼성지급(권고사항 6)

- 권고사항 6에서는 지급인의 관할국에서 공제 가능하며, 모법인의 관할국에서도 중복 공제되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혼성지급인에 대해 논의함
 - 혼성지급인(hybrid payer)이란 각 관할국에서 중복적으로 비용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인을 의미함
 - 이중거주자, 국외지점 혹은 혼성체와 같은 국가 간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불일치를 의도하는 경우 혼성공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고사항 6.1(d)에서는 공제 가능한 혼성불일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초과 공제분에 대하여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권고사항 6의 우선규정에 따르면 모법인 관할국에서 이중포함소득의 금액까지 비용공제를 제한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시 후속규정을 통해 지급인의 관할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공제를 제한함
 - 우선규정에 따르면 모법인 과세관할에서는 청구인의 이중포함소득(양쪽의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목적상 포함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중복 공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우선규정 미적용 시 후속규정에 따라 지급인 과세관할에서 혼성지급인의 비이중포함소득(non-dual inclusion income)에 대한 비용공제를 부인함
 - 단, 우선·후속규정 적용 후의 초과 공제는 다른 기간의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납세자는 어떤 과세관할에서도 해당 공제가 과세소득을 경감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함

- 우선규정의 경우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후속규정의 경우 모법인 관할국에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불일치의 당사자들이 동일한 지배집단의 구성원이거나, 납세자가 구조화 약정의 당사자인 상황에 적용됨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6 Example에서는 중복공제 및 이중포함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권고사항 6의 규정 및 실행방안 등을 통한 불일치 해소방안 등을 분석하고 있음
 - 이중포함소득의 판단 시 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조정은 사례에 따라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CFC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의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음
 -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못한 비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입증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을 설명함

2) 이중거주자 지급(권고사항 7)

- 권고사항 7에서는 이중거주자에 의한 지급이 양 관할국의 법률에 의해 중복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중거주자란 납세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할국 법률에 따른 과세목적상 거주자임을 의미함
 - 권고사항 6과 마찬가지로 이중거주 지급인 규정의 기본적 정책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현행 국내 규정, 행정지침, 가정 및 세액 산출방식에 최대한 근거하여 실행 방안을 선택해야 함
 - 상이한 과세기간, 손익 인식에 대한 기간 귀속의 차이는 권고사항 7에 해당하는 과

세결과상 불일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권고사항 6의 적용 시에도 마찬가지임

- 권고사항 7에 따르면 각각의 거주지 관할국에서는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의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해야 하며 규정의 적용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 이중으로 포함된 소득과 상계되는 지급은 불일치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지급은 다른 과세기간의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될 수 있음
 -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급공제도 가능함
- 규정에 따라 거주자 관할국에서의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다하게 비용이 부인”되어 공제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
 - 권고사항 7.1(c)에 따르면, 상기의 사실에 대하여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하여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과세관청은 비 이중포함소득과 상계하기 위한 초과 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7 Example에서는 이중거주자가 지급한 차입이자로 인하여 각각의 관할국에서 이중공제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함
 - 권고사항 7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공제를 해결해야 하며 과도한 비용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포함소득을 생성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다. 간접 D/Nl

1) 이전된 불일치거래(권고사항 8)

- 권고사항 8에서는 역외 혼성불일치 효과를 국내의 과세 관할로 이전하는 조직적 거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역외 과세관할국에 혼성불일치 규정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세무상 결과의 불일치가 지급인 과세관할국으로 이전될 수 있음
 - 다국적 그룹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혼성 공제에만 적용되며 보고서상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관할국의 납세자가 수령하는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전된 불일치는 추적규정과 우선규정(tracing and priority rule)을 통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을 결정함
- 추적규정 · 우선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구조화 약정상 이전 불일치(이하 조직적 이전 불일치) 규정, 직접 이전 불일치 규정, 간접 이전 불일치 규정의 순서대로 판단함
- 권고사항 8의 규정에 따르면 D/NI를 발생시키는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하며 동일한 지배그룹 내에 있거나, 구조화 약정 당사자로부터 기인한 지급에 적용해야 함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8 Example에서는 구조화 약정에 대한 규정의 적용, 규정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의 배분, 혼성공제 및 이중포함소득에 대한 규정의 적용 방법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추적접근방법을 통해 구조화 약정과 관련된 이자를 수취한 중간 계열사 간 거래를 추적하여 적용대상 및 조정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함
 - 사례를 통해 직접 이전 불일치과 간접 이전 불일치 규정 간 조정방법 및 타 규정과의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음

〈표 II-1〉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불일치 유형	거래 유형	국내법의 개선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	권고규정		
			우선규정	후속규정	적용범위
D/NI (Deduction/ No Inclusion)	혼성 금융상품 (권고사항 1)	- 지급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에 대한 수취인의 배당소득 면제 부인 - 지급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에 비례하여 수취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한(권고사항 2)	지급인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수취인의 정상소득에 포함	특수관계자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 (권고사항 3)	-	지급인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수취인의 정상소득에 포함	동일 지배그룹 내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
	역혼성체의 지급 (권고사항 4)	- CFC 규정과 역외투자 제도의 개선 - 도관으로 간주되는 중간실체의 도관성 제한(권고사항 5)	지급인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	동일 지배그룹 내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
DD (Double Deduction)	공제가능한 혼성지급 (권고사항 6)	-	모회사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지급인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우선규정의 적용제한 없음 후속규정의 경우 동일 지배그룹거래와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에 적용
	이중거주자 지급 (권고사항 7)	-	거주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	우선규정에 제한이 없음
간접 D/NI	이전된 불일치거래 (권고사항 8)	-	지급인의 지급에 대한 공제부인	-	지배그룹의 구성원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약정

자료: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p.20

3. 제정원칙 및 정의

- BEPS Action plan 2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된 유형별 권고사항의 제정원칙 및 주요 개념 등을 권고사항 9~12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 권고사항 9에서는 권고사항 제정원칙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과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권고사항 등을 제시함
 - 권고사항 10에서는 불일치를 의도하여 거래를 구조화하는 상황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함
 - 권고사항 11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의 대상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의를 다룸
 - 권고사항 12에서는 보고서상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를 제시함

가. 제정원칙(권고사항 9)

- 권고사항 9에서는 권고사항의 제정원칙과 의도한 바를 설명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과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상 권고사항의 목적을 일관되게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들의 실행원칙을 제시함
- 보고서의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제정원칙들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관할국 법률에 따른 조세혜택을 되돌리기보다는 불일치를 해소해야 함
 - 보고서상 규정은 각 관할국에서 법제화되기 위해 충분히 유연하도록 고려되었으며 납세자의 이행가능성을 높여 협력비용을 최소화함
 - 규정은 포괄적, 자동적이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함
 - 과세관청은 협력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국내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 권고사항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관할국들은 상호협력해야 함
 - 권고사항들에 대한 합의된 지침과 경과규정을 개발해야 함
 - 시행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 등을 포함하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체에 대한 관할국의 세무처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함
 - 권고사항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납세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Action Plan 3, 4를 포함한 BEPS의 다른 Action Plan과 권고사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9 Example에서는 우선규정과 후속규정 간 조정, 이자비용 제한 규정과 권고사항 간 상호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음
 - 회계기간 및 규정 적용 시기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 적용의 복잡성, 이중과세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국은 국내법을 혼란시키지 않고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해야 함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혼성금융상품 적용에 따른 조정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므로 혼성불일치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함

나. 구조화 약정(권고사항 10)

- 권고사항 10에서는 불일치를 의도하여 거래를 구조화하는 상황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함
 - 구조화 약정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사전에 불일치를 의도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납세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선의의 납세자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

- 구조화 약정이란 혼성불일치의 영향이 거래조건을 통해 가격에 반영되거나 거래의 사실과 상황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도록 사전에 설계된 거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구조화 약정을 판단할 수 있음
 - 혼성불일치를 일으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거나, 계획 중 일부를 구성하는 거래
 - 혼성불일치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 단계, 거래를 수반한 약정
 - 거래의 전체 혹은 부분이 혼성불일치로 인한 조세회피이익의 절세상품이 되거나 판촉됨
 - 혼성불일치가 발생한 관할국의 납세자에게 주로 판촉됨
 - 혼성불일치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 경우, 금융수익을 포함한 거래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고 혼성불일치 요소 제거 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산출되는 거래

- 납세자 혹은 동일 지배집단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혼성불일치의 인식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혼성불일치로 인한 세무상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면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 구조화 약정에 대한 판단은 역혼성체를 이용한 거래 혹은 이전된 불일치 거래에서 가장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음
 - 펀드와 같은 조세중립적인 수단(vehicle)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은 구조화 약정 해당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임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0 Example에서는 불일치가 계약조건상 반영된 거래, 백투백론, 절세상품화된 거래, 납세자 대리인 대상 거래, 이전된 불일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례에서는 거래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일치 효과가 거래의 조건을 통해 반영되는지 여부, 거래의 설계, 사실관계 및 상황이 세무상 불일치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고 있음

다. 특수관계인,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권고사항 11)

- 권고사항 11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정의를 다루고 있음
 -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지분의 합산을 통한 공동지배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보고서상 권고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행을 목적으로 함
- 동일지배집단에 속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 혹은 제3자가 양 당사자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임
 - 연결회계를 적용,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직간접으로 의결권을 행사 및 OECD 모델 조세협약(2014) Article 9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일지배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 영향력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출자지분과 의결권의 전체를 지배 또는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공동지배란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 혹은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함
 - 두 당사자는 동일 집단(family)의 구성원이며,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함(regularly acts)
 -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권 혹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수행함
 -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권 혹은 소유권은 동일 인물이나, 지배집단에 의해 관리됨
 - 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분이 합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자가 투자지침상 조건에 따른 투자의 원천과 혼성불일치에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두 펀드는 공동지배의 판단상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 관계로 간주되지 않음

-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1 Example에서는 신탁자산에 대한 특수관계자 규정 적용, 조합의 파트너, 의결권과 지분가치의 산정, 공동지배주주 간 지분의 합산,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라. 기타 정의(권고사항 12)

- 권고사항 12에서는 보고서상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를 제시함
 -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각국의 개념과 용어를 이용하여 권고사항을 법제상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함과 동시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용어의 해석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상호 협력해야 함
 - 권고사항 12에서는 발생수익, 거래, 집합투자기구, 정관, D/NL, DD, 임원, 분배, 출자지분, 자본이익, 설립지 관할국, 가족, 재무이익, 혼성불일치, 경상소득, 투자자, 투자자 관할국, 불일치, 화폐, 역외투자제도, 수취인, 지급인, 지급인 관할국, 당사자(Person), 납세자, 신탁, 의결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함
- BEPS Action 2 보고서에서는 권고사항 12에 대한 별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례의 분석 및 해결방안의 판단 시 권고사항 12에 따른 정의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표 II-2〉 제정원칙 및 개념 정의 관련 권고사항

No.	주제
제정원칙 (권고사항 9)	제정원칙의 목적, 권고사항의 이행과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권고사항
구조화 약정 (권고사항 10)	불일치를 의도하여 거래를 구조화하는 상황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권고사항 11)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의 대상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의
기타 정의 (권고사항 12)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보고서상 용어 정의

자료: OECD, Action 2(2015)

Ⅲ.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고려사항

1. 혼성불일치의 발생원인 분류

- 혼성불일치의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D/NI(간접 D/NI), DD를 발생시키는 사유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체, 이중거주자 등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정리된 바가 없음
 -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ction 2 보고서의 사례를 이용함
 -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매우 광범위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재 보고서의 사례가 가장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어 있음
 - Inbound와 Outbound의 구분이 필요한데, 투자현금흐름 및 실체(또는 도관)의 설립을 기준으로 분류함
 - － 혼성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현금흐름의 유입)하거나 실체 등을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경우 Inbound로 정의함

〈표 Ⅲ-1〉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요소 구분

분류 ²⁾	내용	D/NI 또는 DD요소	규정 적용여부	우리나라	
				In	Out
혼성 금융 상품 규정	이자비용 → 배당소득 (주주대출의 지분증권 재분류(1.12) 혼성체의 혼성금융상품(1.23))	배당소득(경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면제(1.1)	○	✓	
		부분면제(1.2)	○	✓	
		경감세율(1.3)	○	✓	
		외국납부세액공제(1.4)	○	✓	✓
		면세지위(1.5)	X		
		소득세 미부과국(1.6)	X		
		숙지주의과세(1.7)	X		
		면세계좌(1.9)	X		
		국외PE 유입소득 과세면제(1.8)	X		
		투자지국의 CFC과세(1.24) ¹⁾	△	✓	✓
		채권매매시 발생이자지급액(1.36) ¹⁾	○		✓
	배당 → 배당소득	지급지국에 대한(배당소득 NI는 해당)			
		지급지국 특수기구 배당소득공제(1.10)	△	✓	✓
		지급지국 배당에 대한 법인세 환급(1.11)	○		✓
	이자비용 → 이자소득	부채/자본 분리회계 측정차이(1.13)	○	✓	
		가상이자 인식(1.14)	X		
		환율차이(1.17)	X		
		인식시기차이(1.21,22)	△	✓	✓
	권리의무 변경	차입조건 변경대가(1.18) ¹⁾	○	✓	
		중도상환대가(1.19)1)	○	✓	
		채무면제(1.20)	X		
	복합금융상품	CB전환프리미엄차이(1.15)	X		
		복합금융상품 부채/자본 요소 측정차이(1.16)	○		✓
	일반적 자산양도	판매후리스(1.25) ¹⁾	△		
		자산양도(1.26)	X		
		자산양도이자대가(1.27,28,29)	○		✓
		주식양도우발대가(1.30) ¹⁾	○		✓
	혼성양도	(주식)환매조건부거래(1.31) ¹⁾	○	✓	✓
		주식대여(1.32) ¹⁾ + 차입자배당과세(1.33) or 금융상품매매업자(1.34)	○	✓	✓
		법적형식으로 보는 주식대여(1.35) ¹⁾	○		
		금융상품매매업자의 배당수취자격미이 전(1.37)	X		

〈표 Ⅲ-1〉의 계속

분류 ²⁾	내용	D/NI 또는 DD요소	규정 적용여부	우리나라	
				In	Out
금융상품 특정권고사항	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2.1)		○	✓	✓
	채권양도 (원천징수분)납부세액공제(2.2)		○	✓	✓
	혼성금융상품규정보다 특정권고사항 우선적용(2.3)		○	✓	✓
미인식혼성지급규정	혼성체의 이자지급(3.1)		○	✓	
	연결납세제도하의 PE 이자지급(3.2)		○		✓
역혼성규정	면제지위회사의 역혼성 이용(4.1)		X	✓	
	부분적인 역혼성 이용(4.2)		○	✓	✓
	CFC 적용시 역혼성 배제(4.3)		X		
	공제가능 혼성지급규정보다 역혼성규정의 우선적용(4.4)		○	✓	✓
공제가능혼성지급규정	시기·평가차이의 공제조정(6.1)		○	✓	✓
	PE의 이자지급(6.2)		△	✓	✓
	주식매수선택권(차이) 이중공제(6.3)		○	✓	✓
	CFC과세소득의 혼성체에 이중포함소득 적용(6.4)		○	✓	✓
	파트너십의 이중공제(6.5)		○	✓	✓
이중거주자규정	이중거주자의 연결납세 등을 통한 이중 공제		○	✓	✓

주: 1) 차입자 관할국에서는 비용으로, 투자자 관할국에서 과세면제되는 등의 경우에 한함

2) 이전불일치규정은 금융상품조건·과세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을 실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혼성불일치로 인한 영향이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가. 금융상품·혼성양도·대체지급에서 혼성불일치 전제로의 배당과세혜택

1)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Outbound)

- ☐ 우리나라는 국외투자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D/NI 중 NI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됨
 - 국가간 배당에 대해 과세면제·부분면제·경감세율 등이나 배당에 대한 법인세 환급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NI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개인의 배당에 대한 귀속법인세 세액공제(gross-up)는 내국법인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국제거래에서 D/NI를 발생시키지 않음
-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배당에 대한 귀속법인세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이므로 국외에서 공제된 비용(D)이 국내에서 배당으로 분류되는 경우 포괄적 과세가 되지 않음(NI)²⁾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론상으로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와 효과가 동일하므로 배당에 대한 혼성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출자에 대한 지분비율과 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있음
 - 내국법인이 의결권 주식총수의 25%(해외자원개발회사 투자의 경우 5%)를 보유하고³⁾,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함⁴⁾

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3)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2) 외국의 배당면제 등(Inbound)

- 반대로 국내투자에서는 배당을 수령하는 관할국의 제도에 따라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다르게 발생함
 -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즉, D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 관할국에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NI가 다르게 나타남
 - 유럽국가의 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나 미국 등의 간접외국세액공제 제도 등은 NI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IV장에서 기술함

나.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혼성성

-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사유는 부채/자본의 혼성성을 가진 혼성금융상품으로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발생함
 - 혼성불일치가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발생해야 하며,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사례 1.5~1.9)
 - 다만, 비과세계좌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일반적인 경우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적용대상임(사례 1.8, 1.9)
- 혼성불일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기준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하지만 혼성성이 높을수록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혼성성에 대한 판단은 혼성불일치 위험 추정에는 도움이 됨

- 혼성불일치는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배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인이므로 엄밀하게는 발행자의 부채·자본 분류기준과는 관련성이 낮음
- 그러나 발행자의 부채가 자본의 특성을 가질수록 투자자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자본특성 수준을 살피는 것은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금융상품의 혼성성(Inbound)

- 금융상품을 유가증권 법정주의로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혼성성 측면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체적인 분류 내에서 일반적인 약정을 기준으로 살펴봄
 - 금융상품의 분류 자체는 법정주의에 따라 규율되나 혼성성은 분류 내의 세부약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임
 - －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의무전환사채는 동일한 전환사채라고 하더라도 혼성성 측면에서는 다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정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라 살펴볼 것임
- 이익참가부사채는 상법⁵⁾에 따라 사채의 성격이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 잉여금의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혼성성의 가능성이 존재함
 - 사채의 조건 등은 일반 사채와 유사하나 이익에 참여할 수 있어 이자 이외에도 이익의 분배를 받을 수 있음
 - － 이익의 분배는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지급으로 처리되고 있음
 - 세법상의 대우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시 이익참가부사채의 고려방법⁶⁾, 이익참가부사채의 형태로 발

5) 「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익배분 질의회신 등을 고려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따라서 발행자의 기업회계상 자본의 배분이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격상 이를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신종자본증권⁷⁾은 만기가 발행자의 옵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상법상의 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로 기업회계(K-IFRS)에서 자본으로 인식되고 관련 이자를 이익의 배분으로 처리하고 있어 혼성성의 가능성이 존재함

- 원래 신종자본증권은 과거 Basel II하에서 은행의 Tier 1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또는 지주회사)이 발행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 자본으로 분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부채비율 조정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업에서도 발행되고 있음
 - － 상법에서 이익참가부사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되고 있었으며, 증권신고서에서도 이익참가부사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여 상법상 사채 내의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이자지급의 이연, 발행자의 상환기간 연장 옵션, K-IFRS상 자본으로의 분류, 이익배분으로서 형태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이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함
 - － 이자지급의 누적 여부, Step-up 수준, 채권의 변제순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비금융업은 실무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임
- 세무상의 대우는 사채이므로 관련 이자지급은 이익의 배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지급으로 보아 이익잉여금 감소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⁸⁾
 - － 관련 수수료 등의 직접발행비용은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⁹⁾

6) 법인, 서면법규과-39, 2013.01.15.; 법인, 서면법규과-388, 2014.04.21.

7) 신종자본증권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실무상 또는 감독규정상 정해진 명칭이며, 순수 영구채 또는 Basel III하의 조건부 자본증권 영구채와는 달리 발행자의 만기연장옵션 사채이므로 영구채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8) 법인, 법인46012-141, 2003.02.27.; 법인, 법인세과-329, 2014.07.24. 등.

- 이익참가부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자의 기업회계상 자본의 배분이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혼성불일치규정 대상은 비금융업에 한할 가능성이 높음
 - － 비금융업은 후순위 측면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강한 반면, 지급보증 및 상환에 대한 경제적 강요는 부채로의 성격이 강함
 - － 금융업은 규제자본으로 혼성불일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¹⁰⁾, 현재 도입 또는 도입예정 국가들은 대부분 이의 적용을 규제자본에 유예하고 있음¹¹⁾
- 조건부 자본증권은 특정 사건 발생 시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자본시장법¹²⁾에 따른 사채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자본분류 및 이자지급을 이익배분으로 인식해 혼성성이 존재하나, 발행자의 한계로 인해 혼성불일치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Basel Ⅲ는 은행(또는 금융지주회사)이 기존의 신종자본증권을 점진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조건부 자본만을 기타자본으로 인정함
 - 적기시정조치 또는 부실기업 징후 시 상각·전환을 제외하고는 신종자본증권과 유사하나, 발행회사의 한계 및 실무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혼성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
 - － 발행회사가 상장법인(비상장 은행 등은 가능)에 한정되므로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임
 - － 현재까지 조건부 자본증권은 규제자본의 대상 회사인 은행 등에 제한되었으며,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혼성불일치의 위험이 없으나 향후 비금융업에서 발행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법규법인 2013-62. 2013.05.15.

10) OECD, op. cit., 2015, p.11.

11) 제 V 장의 영국, 호주 사례 참조.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2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 신종자본증권과는 달리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비금융업회사가 정관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기재한 경우에 주의가 필요함

- 후순위채무는 변제순위가 후순위란 점으로 인해 혼성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혼성금융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후순위면서 상환기간연장옵션 등이 존재하는 경우 자본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는 위에서 다른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에서 이미 다루었음
- 주식과 결합하여 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결합된 경우 소비대차인지 주식매각인지의 혼성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주식발행과 동시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약정은 경제적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일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는 개별 거래별로 부여된 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풋·콜옵션을 일방·양방으로 부여하는지 여부, 행사금액에 기지급 배당금의 산정방법, 주식의 의결권 보유자 등에 따라 경제적 실질은 달라질 수 있음
 - 자기주식과 관련된 경우는 혼성금융상품과 관련되며, 사업결합 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재무적 투자자의 옵션은 혼성양도와 관련된 것임
 -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불명확하나 판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후 자본감소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차입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판단하고 있어¹³⁾, 이러한 견지가 유지된다면 혼성성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유상감자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식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함
-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 RCPS), 상환우선주 등은 혼성성은 존재하나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혼성금융상품의 혼성성과는 반대의 영향

13) 대법원 2013.5.25. 선고 2013두673 판결.

이므로 관련되지 않음

- RCPS 등은 K-IFRS상 부채로 분류되면서 혼성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무상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D/NI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파생결합증권 그 자체는 혼성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과세대우가 발행자와 투자자가 다른 점과 투자에 대한 (잔여)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음

-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파생연계증권(DLS)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에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는 증권¹⁴⁾
 - － 파생결합사채는 과실에 대해서만 기초자산과 연계되므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은 아니나 혼성금융상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파생결합증권 과세상의 대우는 발행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투자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확정이자 형태가 아닌 모든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지분의 특성과 유사함
 - － 「소득세법」에서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증권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상 사채의 형식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함¹⁵⁾

□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자본전환특성으로 인해 혼성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혼성금융상품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만기가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전환특성이 있다고 해서 지분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15) 「소득세법」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및 제5항.

- 약정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의 특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자로 지급되기는 하나 전환특성이 강해져서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음
 - 상환이 되지 않는 의무전환사채의 경우 이자의 형태로 지급되기는 하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므로 자본의 특성이 강함
 -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의무전환사채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채권단에게 발행되는 사례만 확인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오히려 부채/자본의 분리회계나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평가에 따른 인식시기 차이가 세무상 인정되는 국가 거주자와의 거래로 인한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높음

〈표 Ⅲ-2〉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분류

구분	세무상 구분	혼성성 판단 요소		혼성불일치 가능성
		혼성성(자본) 요소	부채 요소	
이익참가부사채 ¹⁾	부채	• 과실의 자본배분	• 상환의무 등	○
(비금융업)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부채	• 과실의 자본배분 • 이자지급이연 • 발행자만기연장옵션 • IFRS상 자본	• 선순위 • 상환 경제적 강요 • 높은 이자 step-up • (경우에 따라) 제3자 보증	○
(이전의 은행 등) 신종자본증권	부채	• 과실의 자본배분 • 이자지급이연 • 발행자만기연장옵션 • 후순위 • IFRS상 자본	• 이자step-up	X ²⁾
조건부 자본증권(전환형)	부채	• 과실의 자본배분 • 발행자만기연장옵션 • 후순위 • 이자지급이연 • IFRS상 자본	• 사유(부실기관지정 등) 발생시 주식전환	X ²⁾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부채	• 과실의 자본배분 • 발행자만기연장옵션 • 후순위 • 이자지급이연 • IFRS상 자본	• 사유(부실기관지정 등) 발생시 상각	X

〈표 Ⅲ-2〉의 계속

구분	세무상 구분	혼성성 판단 요소		혼성불일치 가능성
		혼성성(자본) 요소	부채 요소	
후순위채무	부채	• 후순위 • 이자지급이연	• 채무와 조건 동일 • 기업회계상 부채	X
옵션결합 주식	불명확	• 법적 형식은 지분과 옵션	• 경제적 실질(담보차입)	X
RCPS(상환우선주 포함)	자본	• 법적 형식은 지분	• IFRS상 부채	X
파생결합증권	부채	• 배당소득으로 분류	• 상환의무 등	△
CB, BW	부채	• 지분전환특성	• 상환의무 등	X

주: 1)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마다 발행형태(상법상의 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가 다르지만, 편의를 위해 이익참가부사채에 포함시킴

2) 규제자본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게 혼성금융상품에 충족할 가능성이 존재함

자료: 저자작성

나) 외국에서 발행한 금융상품의 혼성성(Outbound)

□ 우리나라 거주자가 투자자인 경우 국외 금융상품의 혼성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는 각 국가별 금융상품과 세무상 대우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서 전반적인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주요국별 우리나라에서 배당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식별과 이에 대한 세무상 대우의 확인이 요구되나 각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발행 시 개별 조건 및 실무상 세무처리를 알기가 어려움

–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처리는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축적된 경험을 이용하거나 국가간 사례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 이후 발견되는 사례들을 추적하여 어떤 국가의 어떤 금융상품이 비용으로 공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배당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추적함
 - 이러한 경험 추적 측면에서는 개별 단편적 사례 연구도 의미가 있음
- 또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각 국가의 금융상품 및 이의 세무상 대우에 대해 각국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한 금융상품 중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을 식별함

2) 금융상품의 인식 · 시기 차이

- 혼성불일치는 금융상품의 혼성성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요소 분리(bifurcation)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요소 분리 또는 부채/부채 요소 분리를 통해 D/NI가 발생함 (사례 1.13, 1.16)
 - 일반적으로 부채/자본 요소분리는 D/NI 그 자체이지만, 부채/부채 요소 분리는 시기 차이이므로 이는 혼성불일치 규정의 차이 해소기간 설정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짐
 - 이러한 분리회계는 기업회계상 복합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CB, BW, RCPS임
 - 하나의 금융상품이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거나, 부채의 특성을 가지더라도 다른 특성의 부채(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인 채권)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 이전가격(사례 1.16), 환율(사례 1.17) 등의 지급의 평가 차이 자체는 혼성불일치 요소가 아님

가)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인식 · 시기 차이(Inbound)

- 우리나라는 세무상 분리회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Inbound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인식 · 시기 차이로 인한 혼성불일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부채/자본의 분리 및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
 - 예를 들어 CB의 자본요소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자본요소 인식분만큼 공제되는 이자인식액(D)이 발생하지 않음

나) 외국 금융상품의 인식 · 시기 차이(Outbound)

- 반대로 우리나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리회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금융상품 발행국가에서 분리회계를 세무상 인정하고 있으면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발행된 CB에 대해 발행회사 관할국에서 부채/자본요소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면 자본요소 인식분만큼 공제가능한 이자(D)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음(NI)
 - 따라서 세무상 분리회계를 허용하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국제조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무상 분리회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IFRS 도입에 따라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함¹⁶⁾
 - 프랑스는 투자자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분리회계를 허용하지만 발행자는 허용되지 않음¹⁷⁾

16) Patricia Brown, "The debt-equity conundrum - General Report,"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34.

17) Jean-Yves Hemery & Siamak Mostafavi, "The debt-equity conundrum - France,"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300.

- 이스라엘은 명확한 부채/자본 구분 규정이 없어 불명확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GAAP에 따라 구분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¹⁸⁾
 - 그러나 이는 ‘기업회계의 준용’ 방법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님
 - 뉴질랜드는 CB 등을 부채/자본으로 분리하는 일반 규정을 가지고 있음¹⁹⁾
 -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분리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인수권(warrant)과 결합된 사채에 대해서만 잔여지분방법을 이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²⁰⁾
 - 영국은 GAAP에 적용되는 분리회계를 세무목적상에서도 적용하고 있음²¹⁾
 - 미국은 분리회계를 세무목적상 허용하나 지분전환특성 그 자체만을 사유로 분리회계를 허용하지는 않음²²⁾
- IFA 201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의 지분전환특성을 가진 사채(CB, BW 등)를 취득하게 되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응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투자자의 금융상품 인식금액은 국외 발행자의 만기상환액이므로 대응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만기상환액을 초과하는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세되는데 Action 2 보고서에서는 혼성불일치 발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대응규정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사례 1.16)

18) Yoram Keinan & Shay Menuchin, “The debt-equity conundrum – Israel,”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p. 368-369.

19) Alan Judge & Casey Plunket, “The debt-equity conundrum – New Zealand,”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525.

20) Axel Hilling, “The debt-equity conundrum – Sweden,”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p. 708-709.

21) David Southern, “The debt-equity conundrum – United Kingdom,”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p. 763-764.

22) Diane Ring, “The debt-equity conundrum – United States,”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p. 781-782.

다. 혼성양도

- 혼성양도는 거래된 금융상품(주식)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복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이전을 통해 D/NI가 발생하는 거래임
 - 혼성양도는 기초자산을 이전받는 매수자(대여에서는 기초자산대여자) 측면에서의 거래이며, 매도자(또는 기초자산차입자)는 금융상품거래에 해당함
 - 혼성양도만으로는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당이전에 대한 공제(D)와 이에 대한 배당세제혜택(NI)이 이루어져야 함
 - － 주식차입 후 금융상품매매업자에 대한 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사례 1.34, 1.35 참조) 이는 우리나라 과세제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기초자산의 법적 보유자의 배당에 과세되는 경우 혼성불일치에는 해당하나 조정금액은 없음(사례 1.33, 1.34 참조)

1)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혼성불일치는 금융과 관련된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격의 환매만을 범위에 다루어야 하며 최초 양도를 해제하고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을 가져오는 환매조건은 대상에서 제외함
 - 원상회복을 가져오는 환매조건약정은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우발상황에 따른 원인행위의 해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혼성불일치의 거래와는 차이가 존재함
 - － 이러한 원인행위의 해제를 가져오는 환매조건권리의 행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양도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판례도 존재함²³⁾

- 우리나라는 비금융업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대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중 어떤

23) 서울행정법원 2012.05.23. 선고 2011구단21945 판결.

방식으로 과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수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초자산이 채권 등으로 증권예탁원 등의 확인이 되는 경우²⁴⁾에만 담보차입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 형식을 따른다²⁵⁾고 하나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 － 판례(파기환송심)에서는 환매조건부주식에 대해 담보차입으로 본 사례가 있음²⁶⁾
- 우리나라 조세법령에서 환매조건부 매매 거래는 금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질의회신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음²⁷⁾
 - － 반면에 과거의 법원 판례는 환매조건부라고 하더라도 진정 매각으로 보아 금전 소비대차로 보지 않았음²⁸⁾
- 한편 혼성불일치의 원인이 되는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매수자²⁹⁾는 허용되나, 매도자의 경우 불명확하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Repo 거래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수자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구분하나³⁰⁾, 매도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언급하고 있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불분명함
 - － 배당보상금 자체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으나³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에서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문언상 해석됨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

25) 손영철, 「환매조건부매매 및 대차거래에서의 세법상 실질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7호 제3권, 한국세법학회, 2011, p.218

26) 서울고등법원 2011.11.02. 선고 2011누14441 판결.

27) 국조, 재국조 46017-203, 1997.11.04.

2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451 판결.

29)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2005.02.17.

30) 재소득 46073-48, 2002.02.22.; 소득, 서일46011-10536, 2002.04.25. 등.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 따라서 우리나라의 매도자가 배당보상금(manufactured dividend)을 수취하는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Inbound거래에서는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없게 됨
 - 혼성불일치를 위해서는 매수인의 배당보상금 비용공제(D)와 매도인의 배당세제혜택(NI)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후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매도자의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Outbound인 경우에는 매도자 관할국의 배당보상금에 대한 세무상 대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매조건부매매 시 지급되는 배당보상금에 대한 국외의 과세제도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 비금융업의 주식에 대한 환매조건부매매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간과 지분 요건이 존재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2) 금융상품대차거래(share lending etc.)

- 금융상품대차거래의 경우도 앞선 환매조건부 매매 거래와 동일하게 혼성불일치가 Outbound³²⁾(내국법인이 주식차입자)에서만 발생함
 - 기초자산에 대한 자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임

32) 주식대여는 기초자산에 대한 자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In·Out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담보물이 제공되므로 다른 기준과 편의상 담보물을 현금인 것처럼 구분함.

라. 역혼성체와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

- 혼성체 · 역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으로 인한 혼성불일치는 도관 · 이중거주자 지위를 이용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약상 소득의 귀속을 판정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건들은 조약상 소득의 귀속자 판정을 위한 도관 여부를 다루는 것이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소득 · 비용의 인식 및 과세주체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별이 선행되어야 함
 - 다만 외국 단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련성이 있음
- 혼성체 · 역혼성체 · 이중거주자에 따른 혼성불일치 규정은 크게 혼성체 등의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의 비용 상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역혼성체와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이 됨
- 역혼성체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소득의 NI를 발생시키므로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역혼성체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은 공제되나(D), 역혼성체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NI)
 - 역혼성체에 대한 지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혼성불일치가 발생함(사례 4.1: 투자자가 면제회사가 아니라면, 4.2. 4.4)
 - 반면에 권고사항 5에 따른 CFC(사례 4.3), 역혼성체에 납세지위 부여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은 그 자체만으로 D/NI 또는 DD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연결납세제도, 손실이전(loss surrender), 합병, 역혼성체에 투자를 통해 비용을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 상계하여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 이러한 이유는 혼성체 등의 소득도 이중으로 과세되기 때문임
- 납세자의 입증으로 설립국가에서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사례 6.2)
 - －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는 혼성금융상품(사례 3.1), 연결납세제도(사례 3.2, 6.5), 혼성체의 역혼성체 투자(사례 6.1), 손실이전규정(사례 6.3, 6.4), 연결납세제도와 혼성체의 역혼성체 투자의 결합(6.5) 등임
- 다만, 영구미공제 결손금(stranded loss)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사례 6.2 등)

□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국외의 역혼성체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에 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³³⁾, 이는 역혼성규정과 관련되지 않음

- 역혼성규정에서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는 역혼성체에 대한 설립지 관할국에서 도관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납부세액공제제도는 역혼성체의 주주에 대한 과세가 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임

1) 역혼성체

□ 우리나라의 역혼성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도관(국외에서는 실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역혼성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도관과세제도는 조합, 신탁과 동업기업에 적용되고 있음

-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의 합자조합·익명조합은 법인의 형태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임
- 신탁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봄³⁴⁾

33)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34) 「법인세법」 제4조.

-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은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부여됨³⁵⁾
 - 동업기업과세 대상에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익명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 및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 등이 해당되며, 일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조합과 회사는 제외됨³⁶⁾
- 이러한 우리나라의 도관체들에 대해 국외에서 실제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조사의 한계로 인해 국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주요국별 사례의 추적과 국가간 공조가 필요함
 - 우리나라 단체 등을 국외 조세법상의 대우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탈리아 등과 같이 모든 외국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보는 국가³⁷⁾의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미인식혼성지급이 발생함
- 반면에 외국의 역혼성체는 미국의 파트너십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제IV장에서 다룸
 - 역혼성체에 대한 규정은 미인식혼성지급 규정인데 이는 지급자에 대한 부인만 존재하지만, 지급자가 우리나라 관할에서 내국법인의 국외 역혼성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CFC규정의 보완을 위해서 검토가 요구됨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26까지.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37) O. Popa, Chapter 6: Past, Present and Future of Tax Structuring Using Hybrid Entity Mismatches in International Tax Structures in the BEPS Era: An Analysis of Anti-Abuse Measures (M. Cotrut et al, eds., IBFD 2015), Online Books IBFD (accessed 2 August 2016).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국외의 도관체도 외국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로서 법인격 등의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제시하고 있음³⁸⁾
 - －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법인격 부여,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 권리·의무의 주체, 「상법」에 비추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임³⁹⁾
 - 다만, 이의 해석에 있어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따르는 것인지와 각국의 세법상 대우에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존재함⁴⁰⁾
 - 판례에서는 미국 텔러웨어 주의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을 외국법인으로 본 사례가 존재함⁴¹⁾
 - － 다만, 이 사례를 소득의 귀속자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국법인인지 여부 판단이 혼성불일치에서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2)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

-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법인으로 보는 외국단체를 도관으로 볼(혼성체로 볼) 가능성은 「법인세법」상 높지 않음
 - 앞서 기술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기준에 해당 국가에서 법인격 부여 등의 조건이 있어, 외국의 법인격이 존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도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사례에서도 내국법인과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간

38)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39)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40)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29권 제1호, 한국조세협회, 2012.2., 69면.

41)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950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주함⁴²⁾

- 일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실질과세 등에 따른 취득자에 대한 귀속판단⁴³⁾이 있으나 이는 수익·비용의 귀속에 대한 것은 아님

□ 그러나 고정사업장·이중거주자로 인한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고정사업장과 이중거주자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영업목적상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특히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거주자판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면 내국법인으로 간주함⁴⁴⁾
- 국외의 혼성체 등만으로는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제도를 통해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외 제도는 제Ⅳ장에서 다룸

□ 국외에서 우리나라 법인실체를 도관으로 보거나 이중거주자 등이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할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미국의 check-the-box rule이 적용되는 (동업기업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도관으로 간주하여 혼성체가 됨
 - 해외사업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법적 성격의 유사성 비교법, 설립지국의 세법상 취급에 따르는 방법, 선택분류법, 강제분류법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⁴⁵⁾
 - 이번 연구에서는 국외 사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42) 조심 2013.11.29. 2012서1711 결정.

43)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44) 「법인세법」 제1조제1호.

45) 구성권, 「국제조세에 있어 혼성불일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p.35

- 혼성체 등은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연결납세 제도, 역혼성체 투자,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이전 및 조직변경 규정을 통해 상계가 가능함
-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지분율 요건과 대상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킬 수는 있음
 - 연결납세제도는 다른 내국법인의 소득과 혼성체의 손실을 상계하여 혼성체 등의 DD를 발생시키는 요인임
 - － 외국법인의 배제, 지분율 100% 요건으로 인해 혼성체 등의 손실(결손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외에 혼성체 등이 위에서 다루어진 역혼성체에 투자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와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함
 - 우리나라에 역혼성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성체의 역혼성체 투자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적격합병 등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이전받아 향후 당해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혼성불일치가 아닌 공제가 혼성불일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 합병 이전에는 혼성체 등의 비용에 대해 DD가 이루어지 않으나, 향후 적격합병 등을 통해 혼성체 등의 지위가 해소되는 경우 누적된 결손금이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되는 상황이 발생함
 - 혼성체 등이 법인 재편성 등의 어떠한 형식으로든 혼성체 등의 지위를 탈피하게 되면 혼성불일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직변경 시 혼성체에서 제외되면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음
 - 혼성체로 간주되는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손금으로 누적 후 주식회사로 조

직변경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므로⁴⁶⁾ 혼성체가 아닌
주식회사의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됨

마.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 요약

- 전체적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세제상 대우만을 두고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혼성불일치
위험평가가 가능하나, 이는 제도상 발생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발생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님
 - 실제 사례를 통한 혼성불일치의 식별이 되지 않았으며,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내 제도와 이에 대응하는 국외 세제 등이 적용되는 발생거래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음
- 제도상으로는 권고사항별로 혼성불일치 위험이 다르게 평가되는데, 금융상품 등의 인
식 차이나 역혼성체 · 혼성체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확인됨
 - 권고사항 1 및 권고사항 2.1과 관련하여 혼성불일치 위험은 국외투자 시 인식 차이
로 인한 부분에서 높으며, 국내 · 국외 모두 금융상품의 혼성성에 따른 부분이 존재
할 수 있으며, 혼성양도나 국내투자 시 인식 차이로 인한 부분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권고사항 3~7과 관련하여 국외 혼성체를 통한 D/NI, DD를 제외하고 모든 혼성불
일치 가능성은 존재함
- 일부 권고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수행함
 - 국외의 배당 과세방법 및 배당과 이자의 구분과 국외의 역혼성체 및 손실의 상계제
도에 대해서 제Ⅳ장에서 보다 상세히 조사함
 - 국외의 금융상품 등은 현실적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하여 사례의

46) 법인 46012-2249, 1997.08.21. 법인, 서이46012-10183, 2001.09.17.

축적을 통한 습득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혼성체와 역혼성체를 발생시키는 국외의 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혼성양도 등은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고려하지 않음

〈표 Ⅲ-3〉 항목별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과 그 설명 위치

	(투자현금 또는 설립기준) Inbound		(투자현금 또는 설립기준) Outbound	
	본고에서의 위치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	본고에서의 위치	혼성불일치 발생가능성
혼성금융상품(R1)				
배당과세방법(R2.1)	Ⅳ.1	존재	Ⅲ.2.가 1)	존재
혼성성	Ⅲ.2.나 1) 가)	존재	Ⅲ.2.나 1) 나)	존재 ¹⁾
인식차이	Ⅲ.2.나 2) 가)	낮음	Ⅲ.2.나 2) 나)	(부분적으로) 높음 ²⁾
혼성양도	Ⅲ.2.다	낮음 ³⁾	Ⅲ.2.다	낮음 ³⁾
기타(조건부인수대가 등)	- ⁴⁾			
역혼성체(R4)	Ⅲ.2.라 1)	높음 ⁵⁾	Ⅳ.2	높음
혼성체(R3,6)	Ⅲ.2.라 2)	높음 ⁵⁾	Ⅲ.2.라 2)	낮음
PE(R3,6) · 이중거주자(R7)	Ⅲ.2.라 2)	존재	Ⅲ.2.라 2)	존재

주: 1) 국가별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시사점에서 대안 제시).

2) 국제조세협회의 각 국가별 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향후 국가별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음(시사점에서 대안 제시),

4) 중요치 않거나 또는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국내·외 세제가 매우 불확실하여 조사가 불가능함(시사점에서 대안 제시).

5) 향후 국가별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자료: 저자작성

IV. 주요국의 혼성불일치 관련 세제 현황

1. 주요 투자국의 국외배당과세 정책 및 배당·이자소득 구분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Inbound) 혼성성을 가진 혼성금융상품으로 인해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부여될 수 있어 우리나라 주요 투자국의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배당 및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규정을 조사함
 - 주요 투자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순위를 이용하여 산정함
 - 본 절의 조사대상은 이 중 상위 3개국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이며 국외배당 세제혜택과 배당 및 이자소득 구분에 대해 살펴봄

〈표 IV-1〉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3개년(2013~2015년) 평균

(단위: 건, 천달러)

국가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미국	320	4,204,494
일본	371	2,280,794
싱가포르	142	1,541,575
중국	537	1,216,298
홍콩	191	1,184,149
네덜란드	60	1,158,040
몰타	16	983,720
룩셈부르크	17	939,167
캐나다	54	742,677
버진아일랜드	44	547,074
전체	2,590	18,153,9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17.1.6.)

가. 미국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⁴⁷⁾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⁴⁸⁾가 허용됨
 - －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법인은 일정요건 충족 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 ☐ 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분요건이나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⁴⁹⁾
 - 미국에 위치한 모기업이 해외기업의 주식을 최소 1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하위 6단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나 최종 모회사인 미국 내 기업의 간접소유비율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함
 - 보유요건은 직접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주 및 대부분의 우선주는 배당락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31일의 기간 동안 주식을 16일 이상 보유해야 함

47) IRC §901

48) IRC §902

49)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2) 배당 · 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배당은 기업이 현재 또는 누적된 이익(earnings and profits)⁵⁰⁾ 범위에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⁵¹⁾
 - 배당은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 경우, 주주의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비과세 자본이득으로 분류되는 배당, 주식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이익이 주주의 과세표준을 초과한 배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 가능한 이익은 70이며, 주주의 과세표준(tax basis)이 20일 때 법인이 주주에게 100을 지급한 경우, 70은 배당, 20은 비과세 자본이득(non-taxable return of capital), 10은 이익과 과세표준을 초과한 부분으로 주식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이익이라 볼 수 있음⁵²⁾
 - 기업은 현재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이전 연도에 누적된 이익을 배분할 경우 배당 처리(Dividend treatment)를 적용함
 - 배분된 금액이 현재 과세연도의 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이전 연도 누적 이익에서 배분된 것으로 처리함
 - 이러한 경우 각각의 배분은 현재 발생한 이익과 비례하여 배분된 것으로 간주함
 -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배당하기에 배분 시점에 이익이 없어도 연도말에 이익이 존재한다면 배당이 가능함
-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통해 배분되었어도 배당으로 처리하며, 주식배당의 경우

50) “Earnings and profits”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배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소득세 목적상 순이익이나 재무회계 목적상 이익잉여금 개념과 동일하지 않음(IRC §312)

51) IRC §316

52) J.G. Rienstra,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일부 과세대상 배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금 또는 다른 재산(부동산, property)으로 이루어진 배분 모두 배당으로 보며, 재산(부동산)을 배분할 경우 배분금액은 배분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와 동일함⁵³⁾
- 과세대상에 속하는 주식배당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함
 - ① 주주가 현금을 포함해 주식발행이나 다른 재산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배분
 - ② 기업의 자산 또는 이익에 따라 주주의 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배분
 - ③ 일부 보통주 주주가 우선주를 수령하고, 다른 보통주 주주가 보통주를 수령하는 배분
 - ④ 주식배당 등을 고려한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증가 이외의 우선주 배분
 - ⑤ ②번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전환 우선주 배분
- 이러한 배분의 특징은 주식배당으로 인해 특정 주주 등의 부가 다른 주주에 비해 증가하는 점임

- 개인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은 각 개인별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30% 또는 조세조약(tax treaty)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됨
- 개인이 받은 배당금이 적격배당일 경우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할인된 세율이 적용되나 비적격 배당에 해당하면 일반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됨⁵⁴⁾

나)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돈의 사용 또는 인내에 대한 보상”⁵⁵⁾이라 정의되며, 기업 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지불과 관련해 과소자본규정(thin capitalization)에 따라 부채로 분

53) IRC §301(b)(1)

54) IRC §1(h)(11)

55)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을 이자로 볼 수 있음

- 만약 기업의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 지급(payment)은 이자가 아닌 배당으로 취급되어야 함
- 미국에서 이자소득과 관련된 상품으로는 최초 발행 할인채(Original issue discount obligations), 시장할인채(Market discount obligations), 분리채(Stripped bond rules), 고수익 할인채(High-yield discount obligations), 자본의 지급가능 공채(Debt instruments payable in equity) 등이 있음
 - 개인의 이자소득에는 저축 및 대출협회,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이나, 은행예금, 회사채, 미국연방정부 채권, 세금 환급에 대한 이자, 무이자 및 저이자 대출에 다른 인정이자 등이 있음
 - 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대출 및 사채, 은행예금, 모기지, 세금 환급에 대한 이자 등으로 구성됨

□ 미국의 2016년 모델협약 article 11(4)에서 이자는 모든 종류의 부채에 대한 청구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2006년 미국 모델 소득세협약에도 이 같은 정의와 함께 미국이 이자로 취급하는 소득 유형의 목록이 포함됨
 - 채무상품의 만기시점에 발행가격과 상환가격의 차이
 - 이연판매계약에 대한 귀속이자 금액
 - 분리채에 다른 이자 또는 OID 금액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에 따른 최초 발생 시 할인액
 - 파트너십의 이자소득 배분금액 등
- 이처럼 부채 의무에 따른 이자에는 고정이자뿐만 아니라 OID와 분리채의 할인액도 포함됨
- 2016년 모델협약에서는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 가능한 권리가 있는 채무의 이자도 article 11의 목적상 이자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으나, article 10(배당)에서 언급되는

소득은 제외됨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법상 투자자의 투자 실체(substance)에 따라 금융상품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은 보통 “혼성증권(hybrid securities)”으로 불리는 부채와 자본의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금융상품이 존재할 수 있음⁵⁶⁾
 - 현재 이익이 세무상 부채 또는 자본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 등은 없음
 - 법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연방법원(Federal common law)의 판단이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주요 지침으로 작용함
 - 법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 부채 또는 배당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사례의 사실 및 상황을 분석 및 비교하여 판단함
 -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부채와 자본을 구분함⁵⁷⁾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만기일에 대한 무조건적 약속이 있는지 여부
 - 소유자가 원금과 이자지급을 집행할 권리를 보유했는지 여부
 - 금융상품 발행자의 부채 자본비율
 - 금융상품 보유자가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미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
 - 금융상품 보유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 이자 및 원금 보장을 위한 담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 보유자의 상황에 대한 기대 등
 - 2016년 4월 4일 미국 재무부는 section 385.66에 따른 규정을 공포하여 일부 부채 및 자본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으로 보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채로 볼 수 있

56) Joint Committee On Taxation, “Overview Of The Tax Treatment Of Corporate Debt And Equity,” 2016, p. 13.

57) Joint Committee On Taxation, op. cit., 2016, pp. 14~15.

는 요건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과세관청에 부여함

- 1980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규정인 section 385이 제정되었으나 1983년 최종적으로 폐지된 바 있음

□ 미국에서는 혼성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Code section 909를 제정한 바 있음⁵⁸⁾

- Section 909는 관련 수입이 정해질 때까지 세금 및 공제를 정지하는 규정으로 만일 납세자가 납부 또는 발생한 외국 소득세와 관련해 외국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관련 소득의 과세연도 이전에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Code section 909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특정 혼성금융상품이 해외에서는 부채로 미국 내에서는 배당으로 취급되어 “외국세액공제 분리(splitter)”거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됨
- 혼성금융상품의 예로는 Convertible Preferred Equity Certificate(CPEC)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룩셈부르크 발행자 입장에서는 부채로, 미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되는 상품임
 - CPEC의 특징은 49년 만기, 정상가격에 따른 고정 연간 이자율, 발생 시 설정된 고정비율로 발행자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특정 조건하에서 공정시장가치로 상환될 수 있는 능력, 발행인의 지분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자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
 - CPEC는 룩셈부르크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세금공제가 되며, 지불된 이자는 원천징수세도 면제되고, 미국의 상품 보유자 입장에서는 적격배당이나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서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을 수 있음

58) Alston & Bird LLP, <http://www.alstontax.com/convertible-preferred-equity-certificates/>(검색일자: 2017.1.8.)

- 실질적으로 이자이지만 배당으로 불리는 것은 협동조합, 신용조합, 국내건축 및 대출 협회, 국내 저축 및 대출협회, 연방 저축 및 대출협회,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배당으로 배분한 소득 등이 있는데, 이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나. 일본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국외배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의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 다만, 일본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주식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본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일부를 반영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을 공제하지 않기로 함
 -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았다면 외국배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15년 4월 1일 이전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은 2018년 4월 1일까지 기존의 외국배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배당 · 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 모든 종류의 지급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배당소득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잉여금 또는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배분, 투자법인의 금전 배분 또는 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제외) 및 특정수익 증권발행신탁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소득을 말함⁵⁹⁾

나)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공사채의 이자, 합동운용신탁(joint management trust) · 공사채투자신탁 · 공모공사채(publicly offered bond management investment trust)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 배분에 관한 소득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⁶⁰⁾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일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와 자본의 구분은 주로 회사법에 근거하고 있음⁶¹⁾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의 특징은 회사법의 목적상 납세자가 채택한 법적 형식을 근거로 정해지며, 일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발행될 수 있음
 - － 회사법 및 증권규정(Securities Regulations)에 따라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참가 또는 비참가 우선주 등 여러 형태의 상품 발행이 가능함

59) NTA,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330.htm>(검색일자: 2017.1.5.)

60) NTA,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310.htm>(검색일자: 2017.1.5.)

61) Masao Yoshimura, "The debt-equity conundrum - Japan,"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402

다. 싱가포르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국외배당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면제할 수 있음⁶²⁾
 - 개인(싱가포르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받는 경우 제외) 이외의 모든 거주자로서 국외 관할권의 세금이 최소 15%이고, 국외에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제공받지 않은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비거주 개인은 국외 배당에 대한 세액이 면제됨
 - 일방적 세액공제(Unilateral tax credit)는 국외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 2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됨⁶³⁾

2) 배당·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배당에 대해 싱가포르 세법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싱가포르에서 설득력 있는 권위(authority)를 가진 영국 판례법에서는 배당금을 “자본 감소가 아닌 주주에 대한 배분”이라고 정의함⁶⁴⁾
 - 보너스나 가증권(scrip) 등은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기업이 주식자본의 감소, 주식환매 또는 주식상환행사 등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상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

62) 싱가포르 소득세법 section 13E

63) 싱가포르 소득세법 section 50A(3)

64) Nina Umar,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November 2016.

나) 이자소득

- ☐ 이자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없지만 소득세법 section 12(6)에 이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부채와 관련된 소득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음
- 대출이나 부채와 관련된 이자, 수수료 또는 약정 · 관리 · 보증 · 서비스 등에 지출된 다른 지불 등을 이자로 볼 수 있음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14년 5월 19일 「혼성금융상품의 소득세 처리」라는 e-Tax Guide를 발행하여 혼성금융상품의 자본 또는 부채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⁶⁵⁾
- 혼성금융상품은 부채와 자본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세무 목적상 부채 또는 자본으로 간주되는 혼성금융상품의 세무 처리를 나타냄

〈표 IV-2〉 혼성금융상품의 세무상 처리(싱가포르)

구분	부채로 간주	자본으로 간주
발행자	공제규정이 충족될 경우 배당금은 공제가가능함	배당금 공제 불가능
투자자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다면 배당금은 과세됨	세액면제 자격이 없는 국외배당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은 면세 대상임
		REIT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됨

자료: IRAS, 2014, p.1.

- ☐ 혼성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의 구분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로 법적 형식(legal form)을 따져 판단하고, 첫 번째 단계로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두 번째 단계로 사실과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검토해 판단함

65) IRAS,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2014, p.1.

- 먼저 혼성금융상품이 소득세 목적상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 곳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할 때 금융상품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형식을 고려하여 결정함
 -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법적 조건이 발행자의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s)을 나타낼 경우 혼성금융상품은 자본으로 구분될 것임
- 법적 형식으로 혼성금융상품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사실과 상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음
 - 이익취득의 성질(Nature of interest acquired), 발행사에 대한 참여권, 금융상품이 부여한 의결권, 원금상환의무, 지불금(Payout), 지불을 집행할 권리(Investor's right to enforce payment), 다른 규제기관의 분류, 청산 또는 파산 시 상환우선 순위 등
- 혼성금융상품이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발행국의 혼성금융상품 특징을 포함한 사실과 상황을 조사하여 결정함

라. 네덜란드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네덜란드는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외배당에 지급된 세금에 대한 일방적인 면제(unilateral relief)는 없으나 일부 상황에 부합될 경우 면제 혜택이 부여됨⁶⁶⁾
 - 국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약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함
 - 다만, 네덜란드 거주 기업이 재배분에 따라 적격외국참여(qualifying foreign participations)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금융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 투자 참여에서 수령한 참여이익(participation profits) 및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국외배당금은 면제 혜택이 부여됨

66) Paul te Boekhorst,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20 December 2016.

- 적격외국참여는 국외자회사의 납입자본 및 발행에 최소 5% 이상 참여해야 함

2) 배당 · 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배당에 대해 네덜란드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과세목적상 이 용어는 기업(BVs와 NVs⁶⁷⁾)의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과 수익증서(profit certificates) 및 발행된 이익공유대출(profit-sharing loans)을 포함함
 - 배당이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되어 배분되는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배당으로 과세됨
 - 회사법을 위반한 배당지급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재정납입자본(fiscal paid-up capital)도 배당으로 분류함
 - 재정납입자본은 명목상 납입자본, 주식발행에 대한 프리미엄 지급, 비공식 납입자본(간주자본출자, deemed capital contribution)⁶⁸⁾을 포함함
 - 네덜란드는 배당 목적의 이익에 우선 과세를 한 후 배당을 받은 주주 단계에서도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금융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나) 이자소득

- 이자수취(interest received)라는 용어는 네덜란드 세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자수취는 소득세 대상이 아님.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Box3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됨⁶⁹⁾

67) BVs는 private company(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NVs는 public company를 말함.

68) 비공식 납입자본이란 기업이 주식이나 다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주가 납입한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함.

- Box 3은 저축 또는 투자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과세연도의 1월 1일 재산 및 자산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간 4%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30% 고정 세율을 부과함(실효세율은 1.2%로 볼 수 있음)
-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참여대출(participation loans)의 이자는 배당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됨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네덜란드에서 혼성금융상품의 배당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로 판례법을 기초로 발전됨⁶⁹⁾
- 네덜란드 대법원에 따르면 과세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구분은 민법을 기초로 분류되고 있음
- 다만, 과세 목적상 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예외 항목들이 있음
 - 구성원이 대출을 승인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출자에 동의한 경우
 - 대출로 승인했으나 상환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대출기관이 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하에 대출이 승인된 경우

마. 룩셈부르크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일반적으로 비거주(국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간주배당금이나 청산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소득은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면제

69) Khadija Baggerman-Noudari,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December 2016.

70) Gerrit De Keizer & Michiel Sunderman, "The debt-equity conundrum - Netherlands,"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489.

(participation exemption)나 50%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

- 국외배당의 경우 비거주 자회사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불한 배당에 대해서 금융 소득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룩셈부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비거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거나 EU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EU Parent-Subsidiary 지침 article 2에 언급된 기업이어야 함
 - 예를 들어 해외에서 최소 10.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tax base)이 룩셈부르크와 유사한 기준으로 계산될 경우 룩셈부르크의 법인소득세와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국외자회사가 EU 회원국 등에 해당될 경우 주식을 최소 10%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가치가 최소 120만유로 이상이어야 적용됨
 -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혼성금융상품이나 일반적 남용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provision)의 개정에 따라 Parent-Subsidiary Directive가 변경되어 EU 회원국과 EU Parent-Subsidiary 지침 article 2에 언급된 기업이 배분한 이익은 금융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를 적용할 수 없게 됨
 - 이처럼 금융소득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회사가 'EU회원국에 소재하며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article 2에 언급된 회사'이거나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비슷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소재한 회사'이면 법인세 및 지방세 산출 시 배당금의 50%를 배제시킬 수 있음

2) 배당 · 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룩셈부르크 세법상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기업이 주주에게 정기적인 이

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⁷¹⁾

- 배당은 현금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참여증서(participating certificates) 등에 따른 이익의 배분을 포함함⁷²⁾
 - 주주의 비기대 이익(Non-arm's length advantages)은 배당으로 간주되며, silent partner에 대한 지급도 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배당으로 과세됨
- 배당소득에는 현물지급, 간주 배분, 중간 배분 등이 있음
- 다음의 배분은 배당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주주가 회사주식의 실질적 참여로 소유한 경우 자본이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기존주식 가치 감소 시 새로 할당된 주식
 - 자본 감소에 따른 주식 상환
 - 기업 청산에 따른 지분
- 법인(기업, 유한책임회사,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협동조합)의 이익 배분금은 배당으로 과세되는 반면, 도관체(transparent entities)의 이익 송금(profit remittances)은 이익이 창출된 활동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예를 들어, 독립적 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business profit)으로 과세됨

나) 이자소득

- 룩셈부르크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article 97(1)(5)에 따라 동산(movable property)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됨
 - 유동화 수단(securitization vehicle)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된 이익은 이자의 형태로 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유동화법(Securitization Law)에 다른 규정

71) Chiara Bardini & Michel Lambion,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4 November 2016.

72) 룩셈부르크 소득세법, article 164

이 없는 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음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룩셈부르크 역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규정은 없고, 자본과 부채는 형태상 실질적인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⁷³⁾
 - 금융상품을 명칭이나 자격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도록 함
 - 과세관청 역시 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 조세평가(tax assessment)를 발행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분류를 수행하거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사전에 논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바. 캐나다

1)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 국외계열사(foreign affiliates)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특별규정(special rule)을 적용하여 정상소득으로 취급하는 반면, 캐나다에 소재한 기업의 배당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국외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대해 캐나다 소재 기업은 간접 공제(indirect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 이러한 간접 공제를 통해 국외계열사가 배당금 지급대상 소득에 이미 지불한 세

73) Geoffrey Scardoni, Anna Sergiel, and Louis Thomas, "The debt-equity conundrum - Luxembourg,"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 444.

금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캐나다 소재 기업이 국외계열사 주식을 최소 1% 이상 보유하며, 관련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국외계열사 주식을 최소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국외계열사로 볼 수 있음(각각 직접 또는 간접 보유 포함)
- 캐나다 소재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외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배당의 원천소득 성격에 따라 특별공제(certain deductions)를 청구할 수 있음
- 캐나다는 국외계열사의 이익을 면제잉여(exempt surplus), 과세가능잉여, 사전취득잉여(pre-acquisition surplus)로 구분하며, 이러한 잉여금은 세법에서 정한 매우 복잡한 규정을 적용받아 계산됨
 - 면제잉여는 listed countries⁷⁴⁾에서 적극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자본이득 등을 통한 잉여로 여기서 배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캐나다 소득세에서 면제됨
 - 과세잉여는 수동형 투자타입의 소득으로 listed countries와의 국가에서 적극적 사업소득이나 면제잉여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 이득 등을 통한 잉여로 여기서 배당이 지급될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 및 원천징수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section 113(1)(b) and (c) of the ITA)
 - 사전취득잉여는 면제잉여나 과세잉여 외의 모든 잉여로 구성되며, 사전취득잉여에서 배당이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완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이는 비용의 회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열사의 주식 처분시 더 큰 자본이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국외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캐나다 소재 기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으로 취급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함(section 93(1) of the ITA)
 - 이를 통해 캐나다 소재 기업은 자회사의 면제 또는 과세잉여의 이익을 얻고, 자

74) listed countries란 면제잉여를 계산할 목적으로 캐나다와 양자간 소득세조약을 맺은 국가를 의미함. 2007년 3월 19일 부터는 캐나다와 포괄적인 조세정보 교환협정(comprehensiv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도 포함됨.

본이득세도 피할 수 있음

- 국외계열사가 면제잉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하는 기업은 자본이득보다 비과세 배당을 받을 수 있음

2) 배당 · 이자 소득의 구분

가) 배당소득

- ☐ 배당은 대부분의 주식배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기술한 것 외에 세법에서 달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section 248(1) of the ITA)⁷⁵⁾
 -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잉여금이 포함됨
 - 잉여금은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 또는 납입잉여(contributed surplus)도 포함됨

나) 이자소득

- ☐ 이자도 배당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사법판결문에 따르면 이자를 “다른 이의 금전 사용을 위해 빌려준 대가로 받는 임대료 형태”라고 묘사되어 있음⁷⁶⁾

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규정은 없으며, 자본과 부채의 구분은 세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 및 기타 특징 등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있음⁷⁷⁾

75) 다만, 비거주 기업이 뮤추얼펀드신탁 또는 기업에게 지급한 주식배당은 예외임.

76) Blair Dwyer,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1.

77) Jodi Kelleher & Dean Kraus, “The debt-equity conundrum - Canada,” IFA Cahiers 2012 -

사. 국제비교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투자국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배당에 대한 세제를 살펴본 결과 주요 투자국들은 모두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해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국외배당에 대해 과세면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음
 -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외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며, 배당락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31일의 기간 동안 주식을 16일 이상 보유해야 하는 지분요건과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일본은 주식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국외배당은 배당금액의 95%를 과세소득에서 면제하고 있었으나 2016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은 일본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싱가포르의 국외배당 지급국의 해당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최소 15% 이상으로서 과세된 경우에만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면제함
 - 네덜란드도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면제함
 - 룩셈부르크는 국외배당을 과세소득에서 면제받으려면 배당 지급국의 법인세율이 최소 10.5% 이상으로 배당금에 과세가 되었거나 EU 회원국 등에 속한 국가로 주식을 최소 10%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가치가 최소 120만유로 이상일 경우 배당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캐나다는 국외배당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배당금을 면제하거나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며, 캐나다 소재 기업과 관련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최소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적용요건이 있음
- 주요 투자국 중 혼성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의 구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국가는 없었으며, 대체로 관련된 법률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석 및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판단 기준을 주요 지침으로 사용함
- 일본도 배당 및 이자소득의 법적 구분 규정은 없고, 주로 회사법에 근거하여 판단함
- 싱가포르의 배당 및 이자소득 구분 규정은 없으나 「혼성금융상품의 소득세 처리」라는 지침을 지난 2014년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자본과 부채를 구분함
- 네덜란드는 배당 및 이자소득 구분 규정은 없고, 판례를 기초로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의 특징을 구분함
- 룩셈부르크는 금융상품을 근본적인 경제적 실질 및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함
- 캐나다도 배당 및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며, 세법에 규정된 법적 권리나 의무 등 법적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의 특징을 판단함

〈표 IV-3〉 주요 투자국의 배당 및 이자소득 정책 비교

구분	국외배당					혼성금융상품의 배당 및 이자소득 구분	
	국외소득 면제방식	외국세액 공제방식	공제(면제) 비율	적용요건 ¹⁾		법적 규정 유무	판단 기준
				최소 지분	보유 기간		
미국	-	○	100%	10%	16일 ²⁾	×	투자 실체 및 법원의 판단에 따름
일본	○ ³⁾	-	0%, 95%	25%	6개월	×	주로 회사법에 근거하여 판단
싱가포르	○	-	100%	- ⁴⁾ (25%)	-	△	국세청에서 구분 Guide 제공
네덜란드	○	-	100%	5%	-	×	주로 판례에 따름
룩셈부르크	○	-	50%, 100%	10%, 120만 유로	1년 ⁵⁾	×	경제적 실질과 과세관청의 판단
캐나다 ⁶⁾	○	○	100%	10%	-	×	세법에 규정된 법적관계를 바탕으로 판단

주: 1) 해외자회사 대상 적용요건임

2) 보통주 및 대부분의 우선주의 경우 배당락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31일의 기간 동안 16일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일본은 BEPS 프로젝트를 일부 반영하여 기존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95% 세액면제 하던 것을 해외자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배당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하게 함으로써 이중비 과세를 방지함

4) 싱가포르의 국외배당 적용요건으로 국외 회사 관할권의 세금이 최소 15% 이상으로서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적용됨. 또한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25% 소유할 경우 일방세액공제(Unilateral tax credit)가 적용됨

5) 룩셈부르크에서 과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배당지급 국가의 법인세율이 최소 10.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6) 캐나다는 국외배당의 성격에 따라 면제잉여(exempt surplus), 과세가능잉여(taxable surplus), 사전취득잉여(pre-acquisition surplus)로 구분해 각 배당에 따라 과세면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자료: 저자작성

2.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연결납세

- 본 장에서는 역혼성체가 발생시킬 수 있는 혼성불일치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연결납세를 주로 살펴봄
 - 도관체를 통해 손실을 이전하여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 상계시킴으로써 혼성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
 - 검토 목적상 법인격 없는 실체인 파트너십 등의 과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한 결손금 상계(group relief) 가능 여부를 검토함
- 우리나라의 과거 3개년간 주요 해외직접투자(outbound)국을 중심으로 검토함
 - 다만, 케이만군도의 경우 연간 법인등록수수료 납부의무만 존재하고 어떠한 경상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므로 혼성성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가능성 검토를 생략함
 - 케이만군도는 한국의 주요 투자국인 데 반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조세회피 방지의 차원에서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

〈표 IV-4〉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3개년(2013~2015년) 평균

(단위: 건, 개, 천달러)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미국	1,329	492	8,501,489	1,911	5,666,657
중국	1,714	740	4,252,754	2,440	3,719,152
케이만군도	82	29	3,342,895	157	2,002,362
베트남	1,299	419	2,147,259	2,616	1,409,799
홍콩	362	103	1,869,371	411	1,107,546
싱가포르	177	49	1,241,305	223	973,655
네덜란드	47	8	1,137,921	135	954,335
오스트레일리아	71	16	1,070,961	137	1,680,316
일본	446	168	1,050,708	482	942,987
캐나다	91	24	1,020,345	143	731,079
합계	8,389	2,843	36,955,899	12,988	28,140,7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1>(검색일자: 2017.1.6.)

가. 미국

1) 도관과세⁷⁸⁾

- 내국세법 제761조에 따르면 세법상 인정되는 파트너십의 형태는 신디케이트, 공동기업, 조인트벤처, 기타 법인격 없는 조직 등임
 - 내국세법상 기업 유형은 법인과 법인격 없는 실체인 파트너십으로 구분되며 파트너십은 그 구성원들의 책임정도에 따라 일반조합,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합자조합 등으로 구성됨
- ‘check the box rule’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내국세법상 독립된 실체로 취급받아야 함
 -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영업, 금융업 또는 사업을 행하는 공동기업으로서 그 외의 계약상 관계가 있으면 세무상 독립된 실체로서 인정받음
- 경제실체가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경우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부담함
 - 손익배분비율은 파트너들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 손익배분비율은 무시되고 지분율에 따라 손익배분비율이 결정됨
 - 손익배분비율의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경제적 효과(SSE: Substantial Economic Effect)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경제성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판단함

78) 임동원,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76~83.

- 결손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파트너에게 배분될 수 있음
 - 파트너십 계약과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이 적정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함
 - 배분된 결손금은 파트너 지분의 세무상 가액을 초과하여 공제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차기로 기한없이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파트너가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함
 - 내국세법 제469조에서 규정하는 활동으로 인한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 해당하지 않음

2) 연결납세

- 연결집단의 과세소득과 공제금액의 신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지배집단 내 구성원의 순손실 금액은 그룹 내 다른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으며 내부거래는 제거되거나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
 - 단, 특정 상황에서는 내부판매거래에서 발생한 결손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중국

1) 도관과세

-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법인격 없는 실체로는 파트너십(合伙企业, partnership), 일부 합작기업(合作企业, CJVs) 형식 외 대표사무소(常驻代表机构, ROs) 또는 지점 등이 존재함⁷⁹⁾

79)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China*, 2016, pp.11~12.

- 파트너십은 중국의 외상투자파트너십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며 무한책임조합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음
 - 파트너십에 대해 도관 접근방식을 취함에 따라 파트너에게 파트너십의 세전과세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⁸⁰⁾
 - 계약상 손익약정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본출자 기여에 따른 지분율 대로 손익을 귀속시킴
 - 파트너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파트너십의 결손과 파트너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상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약정 비율대로 귀속시킬 수 있음

- 합작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s: CJVs)은 법적 형식 측면에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별도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합의체 혹은 계약협력합의체 형태로 구분됨
 - 파트너들의 손익, 위험분담 약정에 따라 주주회, 이사회, 공동관리위원회 등의 여러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인합의체 운영방식은 일반 기업 수준으로 과세되며 계약협력합의체의 경우 규정상 과세방식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트너십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연결납세

- 외국인투자실체에 한하여 과세당국의 별도의 승인을 얻으면 주요 사업장에서 중국내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⁸¹⁾
 - 이외의 외국인 투자실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의 과세실체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함

80) Shi Qi Ma, "China(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November 2016.

81) Ernst & Young, 2016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296

다. 베트남

1) 도관과세

- 파트너십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독립된 과세실체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존재함⁸²⁾
 - 다만, 조인트벤처와 같은 합작투자의 경우 조인트벤처의 소득을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

2) 연결납세

-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지배집단 내 결손금 이전이 불가능함⁸³⁾
 -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종속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총비용을 각 사업장의 발생비용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역의 과세관할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함

라. 홍콩

1) 도관과세

- 홍콩의 파트너십은 별도의 과세실체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파트너십의 수익과 손실이 법인 파트너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 파트너십의 소득이 파트너

82) Rachel Saw, "Vietna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July 2016.

83) Ernst & Young, op. cit., 2016, p. 1648.

에게 귀속됨⁸⁴⁾

- 법인이 참여한 일반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으로서 파트너가 20인 이내인 경우 결손에 대해 파트너 지분비율만큼 귀속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연결납세

- 홍콩은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결손에 대한 지배집단 내 이전이 불가능하며 결손에 대해 소급공제 대신 차기로 이월하는 것만이 허용됨⁸⁵⁾
 - 뿐만 아니라 경상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에 대해 경감세율 과세대상 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특별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음

마. 국제비교

- 주요 해외투자국의 도관과세와 연결납세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중국은 도관과세와 연결납세가 가능하며, 베트남과 홍콩도 연결납세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도관으로 취급되는 기업형태가 존재함
 - 미국은 ‘check the box rule’ 등에 따라 세법상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제도 허용하고 있어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큼
 - 중국도 합작회사, 파트너십 등 도관으로 볼 수 있는 기업형태가 있고, 외국인투자실체에 한해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 혼성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은 파트너십도 독립된 과세실체로 보나 조인트벤처 형식의 합작회사는 투자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어 도관체가 될 수 있고, 연결납세는 불가함
 - 홍콩도 파트너십을 별도의 과세실체로 간주하나 법인이 참여한 일반파트너십은 소

84) Ying Zhang,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December 2016.

85) Ernst & Young, op. cit., 2016, p. 591.

득이 파트너에게 귀속되어 도관체가 될 수 있고, 연결납세는 불가함

〈표 IV-5〉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결손 이전 가능성

구분	도관과세	연결납세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
미국	‘check the box rule’에 따라 세법상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존재함	○	가능
중국	외상합작회사 및 파트너십 ¹⁾	○ ²⁾	가능
베트남	조인트벤처 형식의 합작회사	X	가능 ³⁾
홍콩	법인이 참여한 일반파트너십	X	가능 ⁴⁾

주: 1) 중국의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결손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파트너의 과세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중국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투자자에 한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3) 베트남의 경우 연결납세를 통한 결손공제는 불가능하나, 조인트벤처 형식의 투자에 한하여 투자자들의 소득과 상계가 가능함

4) 홍콩의 경우 법인이 참여한 일반파트너십으로서 파트너가 20인 이내인 경우 결손에 대해 파트너 지분율만큼 귀속시켜 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자료: 저자작성

V. 해외의 입법현황

1. EU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 2016년 10월 EU위원회는 기발표된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대한 EU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법인세개혁 지침안을 발표함⁸⁶⁾
 - 조세회피방지지침상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은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EU 회원국 간의 혼성체 또는 혼성상품거래 시 원천지국에서만 공제를 허용하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법인세제 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규정을 제공하고자 함
 - 지침안은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외에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 이중과세 분쟁해결체계(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의 내용으로 구성됨⁸⁷⁾
 - 법인세 개혁지침은 유럽의회의 자문과 유럽각료이사회를 통해 채택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86) 2016년 6월에 발표된 조세회피방지지침은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서 이자비용 공제제한, 출국세,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CFC 규정, 혼성불일치 해소의 주제로 구성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7호, 2016, pp. 33-35.

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11-1호, 2016, pp. 20-21.

- 지침안은 제3국과 관련된 혼성불일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원국과 제3국과의 거래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조세회피방지지침보다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또한 이전의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혼성불일치 거래를 대처하기 위해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 혼성양도, 이전불일치, 이중거주자 불일치 등의 설명을 포함함

- EU위원회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거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국가들의 기술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안에서 규정 적용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⁸⁸⁾
 - 회원국의 법인세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사 단계 수준의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관할국들의 세무상 대우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기업 간 거래 정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혼성불일치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2016년 12월 유럽각료이사회는 혼성불일치 지침에 대한 절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였으나 규정의 배제 범위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함⁸⁹⁾
 - 각 회원국들은 혼성불일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국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17년 2월 유럽각료이사회에서는 금융업에 대한 규정의 배제 수준 및 시행시기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는 유럽의회의 자문을 거쳐 유럽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예정임

8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EU) 2016/1164 as regards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ies," Strasbourg, 25.10.2016 COM(2016) 687 final, p.7

89) Ernst & Young, "Global Tax Alert, European Council achieves broad consensus on draft directive aimed at closing down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y tax systems," 2016.

-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금융업부문의 규제자본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트레이더에 대한 제한적 접근의 수준은 OECD Action 2 보고서를 따르고자 함⁹⁰⁾
- 지침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완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함⁹¹⁾
 - 단, 역혼성체와 관련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이는 역혼성체와 관련된 EU의 지침이 OECD BEPS Action2 보고서상의 규정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⁹²⁾
 - 5년간 지침 적용 후 유럽위원회는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회원국은 평가를 위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 2016년 10월 EU위원회가 발표한 지침안에 따른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은 OECD에서 발표한 BEPS 보고서상의 정의 및 권고사항 등을 대부분 준용하며, 회원국 간 거래 및 제3국과의 거래를 구분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함
 - 혼성불일치 관련 지침안은 혼성체, 혼성금융상품, 혼성양도, 혼성고정사업장, 이전불일치, 이중거주자로 인한 혼성불일치를 설명하고 있음

90)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tax avoidance: Council agrees its position on hybrid mismatches," 2017.

91) European Commission, op. cit., 2017.

92) 다른 규정은 혼성불일치발생 유형(D/NI, DD)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으나 역혼성 규정은 혼성불일치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역혼성체의 정의만을 규정함에 따라 혼성불일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과 관련된 모든 역혼성체에 대해 역혼성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상 제시됨

1) 혼성체 불일치

- DD를 발생시키는 혼성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 거래 시 지급이 발생한 원천에서만 공제를 허용해야 함
 - 제3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DD의 경우 제3국에서 해당 비용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원천과 관계없이 회원국에서 해당 비용의 공제를 부인해야 함
 - 단, 비용공제 부인액은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는 OECD의 BEPS 보고서상 권고사항과 동일함

- D/NI를 발생시키는 혼성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 거래 시 지급자 관할국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함
 - 만약, 제3국과의 거래 시 수령자 관할국이 회원국일 경우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급자 관할국이 회원국일 경우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함
 - 단, 비용공제 부인액은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는 OECD의 BEPS 보고서상 권고사항과 동일함

2) 혼성금융상품 불일치

- 회원국 간 혼성금융상품 거래 시에는 OECD 보고서와 동일하게 지급자의 비용 공제를 부인해야 하며 회원국과 제3국간 거래 시에는 지급자의 관할국이 회원국 또는 제3국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다름
 - 지급자 관할국이 회원국인 경우 불일치가 발생하는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해야 하며 지급자 관할국이 제3국인 경우 수취인 관할국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3) 혼성양도

- BEPS 보고서와 동일하게 혼성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로서 환매조건부 거래와 주식대여거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에서 발생한 납세자의 순소득의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

-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란 관할국에서의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관할국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혼성고정사업장으로 인한 불일치의 유형에는 비과세(non-taxation)/NI, DD, D/NI가 제시됨
- 비과세(non-taxation)/NI란 납세자의 관할국과 고정사업장의 관할국에서 모두 과세되지 않는 불일치를 의미함
 - 납세자의 영업활동이 다른 관할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됨에 따라 납세자 과세관할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고정사업장 관할국에서는 해당 관할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되었다고 간주하지 않음
 - 따라서 영업활동이 수행된 장소에서 과세되지 않고 납세자 관할국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non-taxation)/NI가 발생함
- 납세자의 과세관할 및 혼성고정사업장의 과세관할이 모두 회원국인 경우 혼성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혼성고정사업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을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혼성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DD와 D/NI에 대한 권고사항은 혼성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과 동일함
 - 지급이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다른 관할의 고정사업장에서도 공제되는 경우 DD로 인한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가 발생함
 - 고정사업장에서 본사로 지급하는 비용이 고정사업장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반면 납세자 관할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D/NI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함
 - 이는 납세자 관할에서 고정사업장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임

5) 이전불일치

- EU 지침상 정의에 따르면 이전불일치란 비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제3국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혼성불일치의 효과를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이전불일치 규정의 주요 목적은 다국적기업의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다른 혼성불일치 규정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임
- 이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원국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에 따라 제3국으로부터 혼성불일치 효과가 이전되는 경우 회원국은 DD 또는 D/NI가 발생하는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해야 함
 - 회원국의 비용과 대응되는 수익이 제3국들 간 DD 혹은 D/NI를 발생시키는 혼성불일치 거래 관련 공제와 직간접적으로 상계된다면 해당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EU 지침에 따라 혼성불일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 관할의 수취인에 대한 지급에는 이전불일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OECD BEPS 보고서와 동일함

6) 이중거주자 불일치

- 납세자가 회원국과 제3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회원국에서 지급액에 대한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함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공제 부인액은 다른 관할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은 금액과 상계된 지급을 한도로 함
 - 회원국 내 이중거주자에 대한 처분은 지침상 언급되지 않음

〈표 V-1〉 혼성불일치 유형별 EU 지침

유형		회원국 간 거래	회원국과 제3국 간 거래
혼성체 불일치	DD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D/NI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또는 수령자(회원국)의 소득에 포함
혼성금융상품 불일치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수령자(회원국)의 소득에 포함
혼성양도		납세자의 순소득의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세액공제 제한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	비과세/NI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	
	DD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D/NI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또는 수령자(회원국)의 소득에 포함
이전불일치		n/a	지급자(회원국)의 비용공제 부인
이중거주자 불일치		n/a	지급자(회원국)의 비용

출처: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EU) 2016/1164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2. 미국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 2015년 OECD/G20의 BEPS 최종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미국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가짐
 - 합동조세위원회는 2015년 12월 1일 ‘국제조세: OECD BEPS와 EU 국가 보조금’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BEPS에 대한 검토⁹³⁾가 이루어짐

- 미국은 2016, 2017년 예산안에서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실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16년, 2017년 예산안에서는 국적없는(stateless) 소득을 발생시키는 혼성약정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짐

- 2016연도 예산안에서는 현행 규정, 변경의 사유,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⁹⁴⁾
 - 다른 관할국의 세무상 대우와 관계없이 공제되는 이자·사용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현행 관련 규정으로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 규정만을 언급함
 - 혼성체·혼성금융상품·혼성양도 등의 혼성계약을 이용하여 국적없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역혼성체의 경우 CFC규정이 존재함에도 동일국가(the same-country exception, section 954(c)) 및 도관(the look-through exception, 954(c)(6)) 예외규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됨

93) Joint Committee on Taxation, “Background,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November 30, 2015.

94)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6 Revenue Proposals,” February 2015, pp. 35~36.

- 제안은 국외 관할국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관할국에서 동일 지급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면 미국 내의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특정 도관약정, 비특수 관계자 간의 구조화거래, 최소한 25%의 법정세율을 감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관할국에 대한 이자·사용료를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권한을 부여받음
 - 또한, 역혼성체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함
- 2016연도 예산안의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이 입법되지 않고, 2017연도 예산안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됨⁹⁵⁾
- 2016년 예산안의 조세수입예상에서는 위 두 가지 조치로 인한 조세수입이 2026년까지 총 2,535백만달러로 추산하고 있음

〈표 V-2〉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따른 조세수입 추산(미국)

(단위: 백만달러)

구분	비용공제부인	CFC예외배제
2017	45	70
2018	80	121
2019	88	127
2020	97	133
2021	107	140
2022	117	147
2023	129	154
2024	142	162
2025	156	170
2026	172	178
계	1,133	1,402

출처: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venue estimate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7 Revenue Proposals, 재구성.

95)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7 Revenue Proposals," February 2016, pp. 25~26.

- 다만, 일부 미국 내국세법은 BEPS 프로젝트와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혼성불일치 중 일부에 대응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음
 - OECD의 이전 보고서에서는 혼성불일치약정의 조세정책과 이행문제에서 미국의 이중연결손실규정(dual consolidated loss regulation)이 특정 혼성불일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있음⁹⁶⁾
 - BEPS Actions 이행조사에서도 미국은 이중연결손실규정이 일부 Action 2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⁹⁷⁾
- 한편 조약에 대해 US모델조세조약(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개정에서 Action 2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016년 2월 US모델조세조약 개정 시 일부 OECD-G20 BEPS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Action 2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⁹⁸⁾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 현재 미국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은 이중연결손실규정으로 이중거주자인 회사의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 이중연결손실이란 이중거주자인 미국 국내회사의 운영업손실이 국외 관할국의 거주자 기준에 의한 납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국 내 다른 연결그룹 내의 이익과 상계하지 못함⁹⁹⁾
 - 예외적으로 상호합의에 의해 한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거나, 국

96) OECD,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Tax Policy and Compliance Issues," March 2012, pp. 16~17.

97)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United States," 2016, p. 2.

98)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amble to 2016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February 17, 2016, pp. 8~9

99) J.G. Rienstra,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8., Country Analyses," IBFD, accessed 21 Dec. 2016.

외 관할국에서 손실의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적용이 배제됨

- 이러한 이중연결손실규정은 이중거주자 등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타 혼성 금융상품 · 혼성양도 등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Action 2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의 이중공제비용에 대한 방지는 가능하여 권고사항 6의 공제가능 혼성지급이나 권고사항 7의 이중거주자규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권고사항 1의 혼성금융상품, 권고사항 2의 금융상품 세무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 등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함

3. 호주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 2015 예산안에 따라 재무장관이 조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후 결과를 통해 2016 예산안에서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음
 -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적용시기도 2018년 1월 1일 또는 재가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어¹⁰⁰⁾ 불확실성이 높음
 - － 이에 대한 세수추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측정 불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혼성불일치규정의 내재된 복잡성과 유의적인 실체법 변경이 요구되므로 적절하다는 평가도 존재함¹⁰¹⁾
 - － 납세자에게 현존 약정을 평가 · 재구조화하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며, 규정 실

100)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May 2016, p.13.

101) PriceWaterhouseCoopers,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PwC's analysis of the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4 May 2016, p. 11.

행 이전에 보다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수 있고, 다른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과의 운영 및 상호간 효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한편 호주 재무장관은 규제자본과 관련된 혼성불일치규정 적용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를 조세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임¹⁰²⁾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 호주는 아직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으나, 조세위원회 권고사항¹⁰³⁾이 입법의 근간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봄

1) 조세위원회의 권고사항

- 조세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의 혼성불일치 검토 요청에 따라 이의 실행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3월 공개하였음
 - 최종보고서 발행을 위해 중간단계로 토론서¹⁰⁴⁾를 2015년 11월에 공개하여 여러 쟁점사안에 대해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음
 - － 장기 납세의무 이연을 포함한 이중비과세 해소를 위한 목적 전달, 경제적 비용,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호주 내국법령과 혼성불일치와의 상관관계가 주요 내용임
- 보고서는 Action 2 권고사항의 채택부터 사후검토까지의 총 17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2) Treasurer, "Review of application of hybrid mismatch rules to regulatory capital," 4 Aug 2016.

103) The Board of Taxati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Hybrid Mismatch rules: A Report to the Treasurer," March 2016.

104) The Board of Taxati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Hybrid rules: Consultation paper," November 2016.

- Action 2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약간의 수정을 가한 Action 2 권고사항의 채택, 권고사항 2.1의 적용과 2.2의 미적용 등을 권고하고 있음
- 호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또는 재가 후 6개월)의 적용시기, 별도 입법·상위규정의 원칙과 하위규정의 조화·혼성불일치의 우선적용 등의 세부입법상의 권고, 사후검토를 권고하고 있음
- 혼성불일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약정에 대해 적용 및 유예기간 미적용, 시기불일치 기준의 3년 설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예외사항(특별투자기구, 금융상품매매업자 등)·혼성불일치와 과소자본세제의 영향 및 규제자본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표 V-3〉 호주 조세위원회의 권고안

No.	주제	권고내용
권고사항 1	Action 2 채택	일부 미세한 변형이 있으나 전반적인 Action 2의 권고사항을 채택
권고사항 2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 또는 여왕의 재가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권고사항 3	존재약정에 대한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약정에 적용하나 제3자약정이면서 혼성불일치규정 적용 시 투자자에게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일부 인정 시행시기까지 충분한 공지를 병행하여서 유예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음
권고사항 4	세이프하버	최소기준과 목적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이전불일치규정에 대해서는 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고려
권고사항 5	시기차이	혼성불일치가 시기 차이만 존재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시기 차이에 는 혼성금융상품규정(OECD 권고안 1)은 적용하지 않음 3년 이상 만기의 금융상품에는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함
권고사항 6	OECD 권고사항 2.1 및 2.2	OECD 권고사항 2.1은 채택하고, 2.2는 채택을 보류함

〈표 V-3〉의 계속

No.	주제	권고내용
권고사항 7	이중포함소득	복잡성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이중과세소득접근방법을 채택하고 공제되지 않은 초과분은 이월공제허용
권고사항 8	이전불일치	불확실성과 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체계에 대한 고려, 해석·협력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입법설계에 대한 주의,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위한 행정지침을 제공(최소기준·세이프하버규정도 고려)
권고사항 9	적용배제	특별투자기구(유동화기구), 금융상품매매업자(혼성양도에 대해), 관리투자신탁(지분이 널리 분포) 등에 대한 적용배제를 고려
권고사항 10	과소자본세제	혼성불일치규정 적용 부채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배제 여부 및 여타 과소자본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
권고사항 11	원천징수	혼성부채자금조달의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적용
권고사항 12	GAAR	혼성불일치 약정을 재구조화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행정지침을 제정
권고사항 13	정의	금융상품의 정의를 호주 회계기준·원칙에 따른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리스 등 금융상품에서 배제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구조화약정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지침 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분이 널리 분포', '시장성증권'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함
권고사항 14	OECD 권고사항 5	OECD 권고사항 5(역혼성체에 대한 특별 권고사항)는 채택하지 않으며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둠
권고사항 15	혼성규제자본	규제자본에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해서는 복잡성과 상관관계, 포괄적인 검토,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권고사항 16	입법 및 행정	혼성불일치규정은 별도의 체계로 입법, 상위 원칙기준과 하위 세부적 기준의 균형, 다른 세법보다 혼성불일치규정의 우선 적용, 입법에 맞추어 과세당국의 세부행정지침의 제공
권고사항 17	사후검토	호주가 선도적인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국가들의 시행에 비추어 사후적인 검토가 필요함

출처: The Board of Taxation, op. cit., March 2016, pp. 5~10., 표로 재구성.

2) 실행 고려사항

- 시행시기에 대해 위원회는 시행 이전 충분한 대비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혼성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주어져서 자문과 거래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함
 - 이러한 점은 존재하는 약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보다 요구수준이 높아짐
 - 혼성불일치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효과가 납세자들에게 적용과 상호작용에서 보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제함
- 혼성불일치 규정의 최소기준과 목적기준은 혼성불일치 효과와 합치성 측면에서 배제함
 - 혼성불일치는 대응규정이 존재하므로 최소기준에 따른 적용은 제한된 운영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즉, 적용금액 이하의 혼성불일치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에서 대응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거래에 대한 영향은 동일하면서 호주의 세수손실만을 가져오게 됨
 - Action 2는 원래 목적을 고려하지 않으며, 목적기준이 각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시기 차이는 장기이연약정의 방지와 협력비용·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3년이 적정하다고 결론내림
 - 일반적인 금융약정의 기간을 고려할 때 영국의 12개월은 너무 짧다고 판단함
- OECD 권고사항 2.2의 미시행이 호주 세원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어 채택하지 않음
 - 이는 납세협력부담과 복잡성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며,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다시 고려할 것임

- 이전불일치 규정은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협력부담을 줄이는 적용가능한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전불일치 규정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해당 당사자의 과세지위나 과세방법을 인지해야 하므로 다른 규정에 비해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적용상의 어려움이 더 높음
 - － 향후 혼성불일치규정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면 이전불일치규정을 적용할 사례가 줄어들거나 호주는 선도적인 적용으로 인해 이전불일치규정 적용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최소기준 등을 두는 등의 조세행정과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함

3) 호주 내국세법과의 상호관계

- 혼성불일치 규정과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이자비용 부인의 이중효과는 지양해야 하지만 다른 고려할 요소가 많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으로 부인된 이자비용 대상 부채약정이 과소자본세제에서 다른 이자비용의 부인을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국적기업의 자본원가 증가를 가져옴
 - 그러나 혼성불일치 약정을 통한 자산취득이 세이프하버규정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면 보다 높은 세이프하버비율을 가져오게 되는 점과 DD와 D/NI는 다르게 볼 요소도 있다고 판단함
 - － 호주 과소자본세제는 가중평균자산에서 부채 등을 조정한 금액과 자본의 비율을 산정하여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음
-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인지하였으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을 유지함

-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됨에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애초에 지분증권인 경우보다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본원가의 상승을 가져옴
- 혼성불일치 규정이 소득 구분의 재분류를 뜻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혼성약정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부인된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이는 부인의 근거가 우선규정이나 대응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 조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쟁점이 식별되지 않아 별도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 각 체약국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혼성체의 소득에 대한 권고사항은 최근 호주-독일 조세조약 체결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조약에 반영될 예정임

4. 영국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 영국 정부는 2014년 10월 5일 Action 2 권고사항의 국내법 도입의사를 발표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반영한 협의문서를 2014년 추계보고서를 통해 제공함
 - OECD의 최종보고서 공개 이후 추가적인 의견 반영 과정 등을 거쳐 입법과정에 반영함
- 2016년 재정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성금융상품 혹은 혼성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금에 대해 혼성금융방지규정(Anti-hybrid financing)을 시행함
 - 신설되는 규정은 현행 규정인 Part 6A for Part 6 of TIOPA 2010을 대체함
 - 개정의 효과는 혼성체, 혼성금융상품,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혼성불일치가 우선규정 및 후속규정 적용을 통해 해소되는 것임

- TIOPA 2010의 적용대상은 영국 소재 법인 혹은 영국내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비거주 법인의 과세소득이며 기존에는 Part 6 of taxation에 제시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적용해옴
- 2014년 추계보고서와 2016년 예산안을 통해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국제거래 지급관련 예측액을 토대로 산출됨
 - 2014년 추계보고서와 2016년 예산안상 과세기간 기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산된 조세수입은 각각 350백만파운드¹⁰⁵⁾, 960백만파운드임¹⁰⁶⁾
 - 2016년 예산안에 첨부된 정책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추계보고서상 발표보다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산금액이 증가함

〈표 V-4〉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따른 조세수입 추산(영국)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4년 추계보고서 추산	2016년 예산안 추산
2016 - 2017	15	15
2017 - 2018	70	265
2018 - 2019	85	265
2019 - 2020	90	215
2020 - 2021	90	200
계	350	960

출처: HM Government, 2014 추계보고서 및 2016년 예산안 Summary of impacts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016년 12월 9일 재무부는 2017년 시행에 앞서 세부 지침(draft guidance)을 발표하

105) HM Government, "Autumn Statement 2014: policy costings. 'Corporation tax: hybrids'," 2014, p. 42.

106) HM Government, "Budget 2016: policy costings. 'Corporation Tax: extend scope of hybrid mismatch rules'," 2015, p. 19.

였으며,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사안을 개정함

○ 세부지침은 OECD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이외 혼성양도 및 고정사업장의 사례를 추가함

○ 두 가지 개정 내용은 감모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인정 및 단기 발생 불일치에 대한 규정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됨¹⁰⁷⁾

－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12개월이내) 발생하는 불일치의 경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허용기간’으로 규정함(permitted period)

- 영국 과세관청은 신고된 과세정보를 토대로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의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정기적인 납세자 의견의 청취를 통해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예정이라 밝힘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1) 개관

- 영국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모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규정에 포함시킴¹⁰⁸⁾

- OECD가 권고한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을 영국 세법에 반영함

○ OECD의 우선규정에 따라 지급인이 지급한 대가가 수취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대가의 지급은 부인함

107) HM Revenue & Customs, “Corporation Tax: minor changes to the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 technical note,” 2016(검색일자: 2016.12.29.)

108) HM Revenue & Customs, “Corporation Tax: anti-hybrid rules,” 2016(검색일자: 2016.12.29.)

- 영국이 수취인의 관할국이고 거래 상대국이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소득을 영국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킴
- 혼성불일치 방지 등을 포괄하여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legislation)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배당소득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 관할국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나 전체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감소될 수 있음¹⁰⁹⁾
 -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면제를 부인함¹¹⁰⁾
- 영국의 현행 조세회피 방지규정(The current anti-hybrid rules)¹¹¹⁾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혼성체나 혼성금융상품을 통해 조세회피 이익을 누리는 납세자의 비용을 부인하거나 소득을 과세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당 규정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준비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공제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혼성체 혹은 혼성금융상품 거래의 일부이며,
 - 회사는 거래의 결과로써 공제를 요청하고,
 - 거래의 주요 목적은 영국 관할에 속하는 회사의 조세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며,
 - 조세이익 금액이 최소 기준을 초과해야 함(최소기준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수준임)

109) HM Revenue & Customs, "International Manual-INTM170040," 2016(검색일자: 2016.12.29.)

110) HM Revenue & Customs, "International Manual-INTM654020," 2016(검색일자: 2016.12.29.)

111) Belema Obuoforibo,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0. Anti-Avoidance," IBFD, Last Reviewed: 15 August 2016.

2) 혼성불일치 규정

-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 권고사항을 따라 혼성불일치 거래로 인한 세무 효과를 해소시키기 위해 규정을 도입함
 -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을 통해 불공정한 조세이익 추구를 줄이는 한편 좀 더 복잡하지 않은 국제투자구조의 채택을 장려하고자 함
-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국제거래 혹은 국내거래를 통해 영국과 그 외 과세관할간의 세무상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다국적기업 집단의 모법인 혹은 종속회사임¹¹²⁾
- 혼성불일치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체 및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로부터 발생함
 - 혼성금융상품의 사례의 경우 지급인은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받으나 수취인은 면세배당으로 취급하는 것임
 - 혼성체의 사례의 경우 일방 과세관할에서 도관체로 간주되지만 타방의 과세관할에서 과세실체로 간주되는 조합의 예를 들 수 있음
 - 과세실체로 보는 관할에서는 조합에 과세를 하는 반면 도관체로 보는 관할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과세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고정사업장 역시 이와 유사한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혼성불일치 거래를 규정에 명시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고정사업장은 세무 스트럭처링을 위한 대체적 혼성체로 이용되어 불일치를 발생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이용하여 OECD 권고사항 적용의 회피를 막고자 함

112) HM Revenue & Customs, "Corporation Tax: anti-hybrids rules," 2016.(검색일자: 2016.12.29.)

-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는 발생한 불일치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D/NI 적용 범위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양도, 혼성채(지급인, 수취인), 고정사업장 관련 거래임
 - DD 적용 범위는 혼성채(지급인),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 관련 거래임
 - 이전불일치 적용 범위는 혼성금융상품, 혼성채(지급인, 수취인), 고정사업장 관련 거래임¹¹³⁾

-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OECD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함
 - D/NI의 경우 우선규정을 통해 지급인의 공제를 부인하고, 지급인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인의 관할에서 소득에 포함시킴
 - D/NI와 관련하여 영국이 지급인 관할국인 경우, 우선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영국이 수취인 관할국이고 다른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후속규정을 통해 수취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킴
 - DD의 경우 우선규정을 통해 모법인의 비용을 부인하며, 만약 모법인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혼성채 혹은 고정사업장의 공제를 부인함
 - DD가 발생한 경우 영국이 모법인 관할국인 경우 영국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만약 모법인 관할국에서 공제를 부인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 관할국으로서 공제를 부인함

3) 혼성금융상품 규정

- (대상) D/NI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의 대상에는 대출거래(arrangements), 파생상품

113) 영국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이전불일치 거래란 불일치를 제3의 과세관할로 옮김으로써 주요한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거래를 의미함

계약, CTA 2010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 발행주식,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UK 회계기준상 금융상품이 포함됨

- 금융기관의 규제자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혼성금융상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금융상품의 양도거래는 혼성금융상품 규정이 아닌 혼성양도 규정을 적용함

□ (판단조건)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D 4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이 발생함
- 조건 B - 거래 당사자 중 1명은 영국에서 법인세 납부대상임
- 조건 C - 지급과 관련하여 혼성불일치 혹은 허용불가한 D/NI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 조건 D -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됨

□ (권고규정) 우선규정은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시킴

-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 해결방안과 동일함

□ (조정액) 불일치에 대한 조정액은 상황 1에 따른 초과액, 상황 2에 따른 과세미달액 또는 상황 1과 상황 2 금액의 합산으로 결정됨

- 상황 1 - 비용 공제 금액이 수취인의 경상소득 포함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초과액의 전체 혹은 일부가 금융상품의 조건 혹은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해당 초과액
- 상황 2 - 경상소득에 포함된 수취액이 충분히 과세되지 못하고 해당 과세미달금액의 전체 혹은 일부가 금융상품의 조건 혹은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해당 과세미달액

- 단 과세미달로 인한 조정금액의 산출 시 불일치를 허용하는 한도가 존재함
- 이는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금융상품의 조건 및 특성 외에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규정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표 V-5〉 상황 2에 따른 허용불가능한 불일치 금액 산식

$$\text{공제 부인액} = \frac{(\text{과세미달액} \times (\text{과세기간의 총한계세율} - \text{최고세율}))}{\text{총한계세율}}$$

- 허용된 과세기간으로 12개월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줄이고자 함
 - 일종의 세이프하버 기간으로서 거래당사자 간 거래손익의 인식 시기의 차이가 단기이고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일 때 규정의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영국은 12개월의 차이를 허용함

4) 혼성양도 규정

- (대상) 혼성양도거래는 D/NI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양도거래를 의미하며 특히 환매 조건부 채권(repo), 주식대여거래가 이에 해당함
- (판단조건) 혼성양도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D, E 5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혼성양도거래가 발생함
 - 조건 B - 혼성양도거래 자체 혹은 기초 자산과 관련한 지급임
 - 조건 C - 거래당사자 중 적어도 1명은 영국에서 법인세 납부대상임
 - 조건 D - 혼성양도와 관련하여 혼성불일치 혹은 허용불가능한 D/NI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조건 E - 지급인임과 동시에 수취인이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불

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권고규정) 우선규정은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인의 정상소득에 포함시킴
 -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 해결방안과 동일함

5) 혼성지급인 규정

- (대상) 혼성지급인 규정은 혼성체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D/NI가 발생하는 불일치 거래에 적용됨
 - 혼성체란 해당 실체의 소득 전부 혹은 일부분이 다른 관할국의 소득으로 인식되거나 다른 과세 관할국의 독립된 과세실체로 간주되지 않아야 함
- (판단조건) 혼성지급인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D, E 5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이 발생함
 - 조건 B - 지급인이 혼성체의 정의에 해당함
 - 조건 C - 지급인 혹은 수취인 중 1명이 영국에서 법인세 납부대상임
 - 조건 D - 혼성지급인과 관련하여 혼성불일치 혹은 허용불가한 D/NI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조건 E - 거래당사자 간 동일 지배집단에 속해 있거나 불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권고규정) 우선규정은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인의 정상소득에 포함시킴
 -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 해결방안과 동일함

- 이중포함소득이란 거래와 관련하여 혼성지급인과 그 투자자의 회계기간 내 정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영국의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실체의 소득에 포함되며 동시에 허용된 과세기간 내 모법인 관할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다른 국가의 CFC 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른 소득인식은 이중포함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6) 고정사업장 거래 규정

- (대상) 고정사업장이란 영국에 고정된 장소의 전체 혹은 일부를 두거나 대리인을 통해 본사를 대신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 BEPS Action 2 권고사항에 추가하여 영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외국에 위치한 모회사(본사)에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을 이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함
- (판단조건) 혼성지급인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3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거래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됨
 - 조건 B - 영국의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비용이 공제됨
 - 조건 C - 관련된 대응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고정사업장의 비용 공제가 세무상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결손을 감소시킴
- (권고규정) 상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된 비용은 부인되어야 함

7) 혼성수취인 규정

- (대상) 혼성수취인 규정은 혼성체에 대한 지급 거래에서 D/NI가 발생하는 불일치 거래에 적용됨
 - 혼성수취는 당사자가 과세되지 않는 관할에 소재하거나 경상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고정사업장 혹은 지급이 CFC 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생가능함
- (판단조건) 혼성수취인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D, E 5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이 발생함
 - 조건 B - 수취인이 혼성체의 정의에 해당함
 - 조건 C - 지급인 혹은 혼성수취인의 투자자가 영국의 법인세 납부대상이거나 혼성수취인이 유한책임파트너십(LLP)임
 - 영국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0)에 따르면,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법인격이 존재하는 실체로서 사무실을 등록해야 하고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함
 - 조건 D - 수취인이 혼성체로서 혼성불일치 혹은 허용불가한 D/NI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 조건 E - 거래당사자 간 동일 지배집단에 속해 있거나 불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권고규정) 우선규정은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시킴
 - 우선규정에 따라 지급인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만큼 공제를 부인함
 - 후속규정을 따르는 경우 혼성수취인의 투자자의 과세대상 경상소득에 포함시킴

- 앞선 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불일치 금액이 존재하고 혼성수취인이 유한책임파트너십인 경우 제3규정(Tertiary response)을 적용하여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경상소득에 포함시킴
 - BEPS Action 2 보고서의 권고사항 4에서는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역혼성체에 대한 지급액의 부인만을 언급하고 있음

8) 다국적 수취인 규정

- ☐ (대상) 다국적기업이란 최종모회사 혹은 본사 소재지 관할에서 과세실체임과 동시에 다른 관할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함
- ☐ (판단조건) 다국적 수취인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D, E 5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이 발생함
 - 조건 B - 수취인이 다국적기업의 정의에 해당함
 - 조건 C - 지급인이 영국의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함
 - 조건 D - 관련된 대응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기업의 수취가 불일치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조건 E - 거래당사자 간 동일 지배집단에 속해 있거나 불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 (권고규정) 상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함

9) 혼성체로 인한 중복공제 규정

- ☐ (대상) 혼성체로 인한 중복공제 규정은 혼성체 관할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을 지급받

는 투자자 관할국에서도 공제하여 중복공제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적용됨

- (판단조건)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C 3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혼성체와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었음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조건 B - 혼성체 혹은 혼성체의 투자자가 영국의 법인세 납부대상임
 - 조건 C - 혼성체와 그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불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권고규정) 우선규정은 투자자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인의 비용 공제를 부인함
 - BEPS Action 2 보고서의 권고사항 6에서는 불일치를 해결하는 우선방안으로 모법인의 비용 공제 부인을 권고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모법인 대신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10) 이중거주자로 인한 중복공제 규정

- (대상) 이중거주자로 인한 중복공제 규정의 적용은 이중거주실체 혹은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함
 -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예를 들 수 있음
- (판단조건)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 B 2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 회사는 이중거주실체이거나 다국적기업임
 - 조건 B - 영국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과 다른 관할국의 과세목적상의 소득에서 모두 공제됨

- (권고규정) 적용대상이 이중거주실체 혹은 다국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에 차이가 존재함
 - 이중거주실체의 경우 비용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불일치를 해소함
 - 다국적기업의 경우 우선규정에 따라 모법인 관할국에서 비용 공제를 부인하며 우선규정 미적용 시 후속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영국 내 고정사업장의 지급을 부인함
 - BEPS Action 2 보고서의 권고사항 7에서는 중복공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중거주자의 비용 공제 부인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이중거주자 외 다국적기업에도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11) 이전된 불일치 규정

- (대상) 이전된 불일치 규정은 거래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영국으로 혼성불일치 효과가 이전되는 거래에 적용됨
 - 영국의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인 경우 이전된 불일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른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됨
 - 영국과의 거래상대방이 혼성불일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혼성불일치 효과가 영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전불일치 규정은 혼성불일치 규정상 다른 권고사항들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함
- (판단조건)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 조건은 A부터 G까지 총 7가지이며 모든 조건이 단계적으로 만족되어야 함
 - 조건 A -지급은 이전된 혼성불일치 거래와 관련됨
 - 조건 B -지급인이 영국의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함
 - 조건 C -이전된 불일치 거래는 연속적인 여러 거래 중 일부임
 - 조건 D -연속적인 여러 거래 중 일부 거래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조정 대상에 해

당하는 불일치가 발생함

- 조건 E -이전된 불일치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추정됨
- 조건 F -불일치 거래 유형별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거래와 관련 직접당사자에게 적절히 적용됨
- 조건 G -거래당사자 간 동일 지배집단에 속해 있거나 불일치를 의도하여 구조화된 거래에 해당함

☐ (권고규정)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발생한 불일치 금액만큼 지급인의 공제를 부인함

12) 조세회피 방지규정

- ☐ 개별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TAAR(targeted anti-avoidance rule) Section 259M TIOPA 2010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회피방지를 다룸
 - TAAR 규정의 주요 목적은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이익(관련 조세이익 포함)을 얻는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
 - 적용 대상은 영국 법인세 과세 범위 내에 있거나, 거래목적상 과세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인(person)임
 - 단, TAAR 규정을 적용할 때는 OECD에서 발표한 BEPS 보고서상의 원칙과 정책적 목표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권고함

〈표 V-6〉 영국의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불일치 유형	거래 유형	OECD 권고 사항	권고규정		
			우선규정	후속규정	적용범위
D/NI (Deduction/ No Inclusion)	혼성 금융상품	권고사항 1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	특수관계자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혼성양도	권고사항 1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	특수관계자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혼성지급인으로 인한 불일치	권고사항 3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	동일 지배그룹 내 거래 / 불일치를 구조화 의도한 거래
	고정사업장 거래 관련 불일치	권고사항 3	영국내 고정사업장의 비용 공제 부인	-	제한 없음
	혼성수취인으로 인한 불일치	권고사항 4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투자자 /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경상소득에 포함 ¹⁾	동일 지배그룹 내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다국적 수취인으로 인한 불일치	권고사항 4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	동일 지배그룹 내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DD (Double Deduction)	혼성체로 인한 불일치	권고사항 6	투자자의 공제 부인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특수관계자 거래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이중거주자로 인한 불일치	권고사항 7	• 이중거주실체의 경우 비용 공제 부인 •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법인 관할국에서 비용 공제 부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영국내 고정사업장의 지급 부인	제한 없음
간접 D/NI	이전된 불일치거래	권고사항 8	지급인의 비용 공제 부인	-	지배그룹의 구성원 /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거래

주: 1) 유한책임파트너십이 과세대상이고, 우선규정 및 후속규정 적용 이후 해소하지 못한 불일치가 남아있는 경우 제3규정을 적용하여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경상소득에 포함시킴

출처: HM Revenue & Customs, "Draft guidance - Hybrid and Other Mismatches," 2016, p.8 참조하여 저자 작성

5. 일본

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입법 현황

- 일본은 2014년 BEPS 보고서 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였고, 혼성불일치 관련된 Action 2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세법개정이 지난 2015년 이루어짐
 - OECD의 BEPS 보고서 초안의 권고사항 일부(Action 1, 2, 6)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2015년 2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됨¹¹⁴⁾
- 또한 일본은 최근 독-일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BEPS 최종 보고서 중 Action 2를 포함한 일부 내용을 반영함
 - Action 2 보고서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1조의 혼성체(hybrid entity)로 인해 발생된 소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항에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 조세 조약 제1조(Article 1)에 이를 반영한 내용을 포함함¹¹⁵⁾

나.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 현재 일본의 혼성불일치와 관련된 규정은 Action 2에서 제안한 권고사항 중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 세무처리에 대해 지난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반영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임
 - 일본은 기존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배당공제(foreign dividend exclusion: FDE)를 적용해 배당소득 중 95%만큼 세액면제(tax

114) PriceWaterhouseCoopers, Changes in the Japanese Tax Laws Following the OECD · BEPS Project – The 2015 Tax Reform Proposal, BEPS News, 2015, p.1.

115) KPMG, “Amended Japan-Germany Tax Treaty,”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5, p.2.

exempt)를 적용하고 있었음

– 기존에는 해외자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배당의 일부 또는 전체가 공제되었더라도 FDE규정이 적용되었음

○ 그러나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에서 손금 산입이 인정된 배당(예를 들어 호주의 우선주 등)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일본 내 모회사에서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도록 함¹¹⁶⁾

○ 이는 Action 2 보고서 권고사항 2의 금융상품 세무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 역할 중 권고사항 2.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면제 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세법개정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은 일반원칙과 예외규정으로 나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이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함

○ 일반원칙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소득으로, 배당에 대한 국외 원천징수는 공제 또는 creditable로 처리하나 예외규정(Exceptional rule)으로 해외자회사에서 배당소득이 과세되었다면 95%만큼 세액면제(tax exempt)할 수 있음

–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공제된 부분은 공제되지 못하며, 전체가 해외에서 과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95%만큼 세액면제를 적용함

– 배당에 대한 국외 원천징수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공제되었을 경우 국내에서는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함

○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2016년 4월 1일 이전 보유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함

116) Ministry of Finance Japan, <http://www.mof.go.jp/>(검색일자: 2016.12.22.)

〈표 V-7〉 일본의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세무처리

구분		해외자회사 배당금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	
2015년 이전		95% tax exempt		Non-deductible and non-creditable	
2015년 세법개정 이후	원칙	Fully taxable		Deductible or creditable	
	예외 규정	해외(자회사)	국내(모회사)	해외(자회사)	국내(모회사)
		Deductible portion	Non-deductible portion	Deductible or creditable	Non-deductible and non-creditable
		Fully taxable	95% tax exempt		

출처: KPMG, *Taxation in Japan 2016*, 2016, pp. 111-112.

- 일본은 독일과의 조세조약 개정에서 Action 2의 권고사항 중 혼성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혼성체를 통해 파생된 소득을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체약국 거주자 소득으로 보도록 함
- 조항에 따라 혼성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 수익자가 거주하는 곳의 체약국이 실체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됨
 - 일본이 체결한 다양한 조세조약(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등)에 이 조항과 유사한 개념을 기초로 한 거주자 관련 조항(Article 4)에 혼성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의 처리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¹¹⁷⁾

[독·일 조세조약 본문 중 일부]

Article 1(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come derived by or through an entity or arrangement that is treated as wholly or partly fiscally transparent under the tax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is treated, for purposes of taxation by that Contracting State, as the income of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117) KPMG, op. cit., 2015, p. 2.

6. 국제비교

- 혼성불일치에 대한 Action2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중인 주요국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추진계획만을 밝히고 실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U 및 일본은 일부 권고사항만 반영함
 - 미국은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관련된 규정이 실제 입법되지는 않았으며, 기존 제도 중 이중연결손실규정이 권고사항 7의 이중거주자규정만을 대응할 수 있음
 - EU는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일부로서 회원국 간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제3국 간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 및 기타 유형과 관련된 규정을 논의 중임
 - 일본은 Action2 보고서의 초안이 발표된 2014년 혼성불일치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해 2016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을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함으로써 권고사항 2.1만을 대응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은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반영된 규정을 입법하여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호주도 조세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2018년 입법을 예고함
 - 호주는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을 입법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여 Action 2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채택하기로 했으며, 시행 이전 충분한 대비시간을 갖기 위해 2018년 1월 1일(또는 재가후 6개월) 이후 적용하기로 함
 - 호주 조세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총 17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기준과 목적기준은 배제하고, 시기 차이는 3년이 적당하다고 봄
 - 영국은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해 Action2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중 권고사항 5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혼성금융방지규정을 입법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함
 - Action2 보고서와 유사하게 혼성불일치 유형을 D/Ni, DD, 간접 D/Ni로 보고 혼

성금융상품, 혼성양도, 혼성채, 고정사업장, 이중거주자 등 유형별로 판단조건 및 권고규정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시기 차이는 12개월로 정함

〈표 V-8〉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국제 비교

	EU ¹⁾	미국	영국	호주 ²⁾	일본
R.1 혼성금융상품	O	-	O	O	-
시기차이	12개월		12개월	3년	
면제	유동화기구 등		유동화기구 등	유동화기구 등	
R.2 금융상품 특별규정	O ³⁾	-	O ³⁾	2.2는 미채택	2.2는 미채택
R.3 미인식 혼성지급	O	-	O	O	-
R.4 역혼성채	O	-	O ⁴⁾	단순화된 형태	-
R.5 역혼성채 특별규정	△ ⁵⁾	-	X	X	-
R.6 공제가능 혼성지급	O	O	O ⁶⁾	단순화된 형태	-
R.7 이중거주자	O	O	O ⁷⁾	O	-
R.8 이전 불일치	O	-	O	실행가능성 고려	-
R.9 제정 원칙	-	-	O	O	-
Grandfathering	-	-	X	X	-
R.10 구조화 약정	O	-	O	△ ⁸⁾	-
R.11 특수관계자	O	-	O	△ ⁸⁾	-
R.12 기타 정의	O	-	O	O ⁹⁾	-
기타	-	-			-
조약관련			X	O	△ ¹⁰⁾
Thin Cap과의 관계			-	추가 고려 필요	-
GAAR			혼성불일치 규정 회피 방지 ¹¹⁾	재구조화 지침 발행	-
부인된 지급 원천징수			이자소득	이자소득	-
적용시기			2017.1.1.	2018.1.1. or 입법 6개월 후	-

2020.1.1.¹²⁾

〈표 V-8〉의 계속

	EU ¹⁾	미국	영국	호주 ²⁾	일본
규제자본	적용 제외 검토 예정 ¹³⁾		적용 제외	미정(추가검토)	-
우선순위	우선적용		우선적용	우선적용	-

- 주: 1) EU의 경우 일부만 조세회피방지지침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두 논의 중임에 따라 개정된 지침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 2) 호주의 경우 입법이 되지 않았으나, 조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됨.
- 3) EU의 지침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목적상 과도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혼성불일치 방지 등을 포괄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배당소득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4) 영국 내 고정사업장,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규정을 분화시키고 후속규정을 추가함.
- 5) EU의 경우 역혼성체 관련 특별규정인 도관성 제한을 지침에 포함하여 역혼성체 또는 혼성고정사업장의 도관성을 제한함
- 6) BEPS 보고서상 우선규정은 모법인 관할국의 지급을 부인하는 것이나, 영국에서는 투자자 관할국의 지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함.
- 7) 영국은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이중거주자 규정을 분화시키고 후속규정을 추가함.
- 8) 호주는 잠재적인 결정으로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9) 호주의 경우 관련 권고사항은 없으나 향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금융상품의 범위는 호주의 회계기준 등에 따름.
- 10) 일본은 독·일 조세조약 개정시 BEPS 보고서에서 권고한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혼성불일치(Action 2)와 관련해서는 혼성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에 대해서 조약에 반영함.
- 11) 영국은 개별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TAAR(targeted anti-avoidance rule) Section 259M TIOPA 2010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회피방지를 다룸.
- 12) EU의 지침안에 따르면 혼성불일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역혼성체와 관련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13) 금융업부문의 규제자본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유럽각료이사회 내 합의에 따라 관련된 연구와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자료: 저자작성

Ⅵ. 시사점

-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Action 2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세제 등에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
 - Action 2의 권고사항 이행은 사실상 강제적 성격이며, 영국·호주 등에서도 대부분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시사점에서는 Action 2 권고사항 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행정과 납세협력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함
 - － 이러한 사항을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조세정책적·실체법적·여타 관련 제도 및 조세행정적 시사점으로 나누어 기술함

1. 주요 분류별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 혼성불일치에 대한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Action 2 보고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지만 관할국에서도 대략적인 혼성불일치 위험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납세자에게 혼성불일치 미발생의 소명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주요 항목별·국가별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보다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함
 - 따라서 사전적으로 잠재적인 혼성불일치 위험을 금융상품과 혼성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해 봄

가. 금융상품과 관련된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중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항목은 이익참가부사채와 옵션결합주식,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익참가부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배분)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익의 배당 후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음
 - － 조건부 전환증권도 신종자본증권과 유사하나 발행법인의 제한이 있으며 실무상 금융기관만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위험이 크지 않으나 추후 범위가 확대되거나 비금융업종으로 발행이 확대될 경우 동일한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옵션결합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소득이므로 배당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험평가가 달라짐
 - － 따라서 옵션결합주식이 금전소비대차로 세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음
 - 파생결합증권은 잔여지분의 특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함
-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에 의한 혼성불일치는 수취국의 배당세제 혜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세액공제·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금융상품 발행자의 이자지급이 배당으로 분류되면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우리나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투자국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모든 국가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있음
- 금융상품의 인식방법 차이에 따른 차이는 Outbound에서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분리회계를 세무상 허용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혼성불일

치가 발생함

-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분리회계를 세무상 허용하는 국가로 확인됨
- 대상 금융상품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으나 신주인수권·전환특성 등의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 ☐ 국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워 다른 대안을 제시함
-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5. 가 및 나에서 기술함

〈표 Ⅵ-1〉 금융상품의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사례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		In/Out
금융상품의 혼성성	대상금융상품	대상투자국가가	Inbound
	이익참가부사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옵션결합주식 파생결합증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금융상품의 인식차이	대상금융상품	대상투자국가	Outbound
	지분특성을 가진 상품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나. 혼성체 등과 관련된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 ☐ 역혼성체로 인한 혼성불일치는 역내·외 투자 모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역내로의 투자인 경우 우리나라 신탁·동업기업과세 적용단체 등의 대상을 국외

에서 실제로 간주하게 되면 역혼성체가 발생하며 이의 이익은 D/NI의 혼성불일치가 됨

– 국외에서 우리나라 신탁·동업기업과세 적용단체 등을 실제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이탈리아 등의 국가만이 확인됨

○ 반면에 미국의 LP, 중국의 외상합작회사 등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간주하게 되면 국외에 역혼성체가 발생하며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역혼성체(미인식혼성지급)의 혼성불일치는 대응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외 역혼성체에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및 CFC규정 적용과 관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혼성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외에 혼성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유한회사 등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실체에 대해 국외에서 도관으로 간주하게 되면 혼성체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check the box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사례임

– 국외의 우리나라 내국법인의 도관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례조사가 필요함

○ 반면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국외 관할국에서 법인격이 존재하면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국외에 혼성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이중거주자는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요 경영,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이 국외에 있다면 이중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도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중거주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국외 실체가 아닌 고정사업장은 과세방법에 따라 혼성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외 고정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국외 설립지국 또는 우리나라와 기업의 거주지국 모두 과세하므로 혼성체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 － 일부 속지주의 과세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외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

〈표 Ⅵ-2〉 혼성체 등의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사례

구분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		적요
		설립지 관할국 제도	투자자 관할국 제도	
역혼성체	우리나라	신탁, 동업기업과세적용회사 등	- ¹⁾²⁾	우리나라에 역혼성체가 설립
	국외	미국: LP 등 중국: 외상합작회사 베트남: 합작회사 홍콩: 파트너십 등		국외에 역혼성체가 설립
혼성체 ⁴⁾	우리나라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미국(check the box rule) 등 ²⁾	우리나라에 혼성체가 설립
	국외	- ³⁾		국외에 혼성체가 설립
이중거주자		각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중복되면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이 중복되는 경우 ²⁾		

주: 1) 비록 우리나라에 일부 판례가 있더라도, 국내외세제에 대한 명확한 적용 방법이 확인되지 않고 논쟁의 소지가 많아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음.

2) 향후 추가적인 국외 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 실체를 도관으로 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고정사업장은 대부분 혼성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다. 이전불일치에 대한 위험 평가

- 이전불일치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에 대한 사실의 확인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위험 자체의 평가는 투자자 관할국이 Action 2 적용국가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매우 단순함
 - 위험 자체는 내국법인에 차입금을 제공한 외국법인 및 상위 법인의 관할국이 Action 2의 권고사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됨
 - 따라서 2016년 10월 31일 현재 총 87개국이 BEPS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혼성불일치 규정을 도입한다면 이 이외의 국가의 외국법인에 차입한 경우 이전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Action 2는 공통접근이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어 최소기준이 되기 전까지는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2. 조세정책적 시사점

가. 경제적 영향·세수확보 측면을 고려한 적용시기 고려

- 일반적으로 모든 BEPS Action의 각 권고사항을 도입하면 세수효과만큼 투자자의 세후수익률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본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하여, 이러한 조세 회피방지제도는 일정 부분 경제적 효과와 부(-)의 관계임
 - 예를 들어 유해조세환경이나 이자비용공제제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그 경제적 효과인 자본수입국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 즉, 세수를 확보하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
 - 반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후수익률 하락으로 자본수입이 줄어드는 효

과를 가져옴

- 주요국들이 BEPS 프로젝트에 맞춰 세법을 정비하는 것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추는 경우 해외투자 감소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운용사례를 자세히 검토하여 해외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¹¹⁸⁾

- 그러나 혼성불일치 규정은 다른 Action 보고서와 달리 연계규정(linking rule)의 성격 및 이전불일치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영향이 일치하지 않음
 - 우선규정과 대응규정으로 나누어 각 국가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역혼성규정은 대응규정이 없으나 CFC규정이 사실상 대응규정의 역할을 수행함
 - (간접) 이전불일치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규정 미도입시에도 규정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하위 회사의 대출/차입에서 효과가 해소될 수 있음
- 따라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이 너무 늦으면 거래 감소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기회세수감소를 가져옴
 - 우리나라가 혼성불일치 규정을 도입하지 않아도 투자자 관할국 또는 하위 회사의 관할국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의 세후수익률 하락은 동일함
 -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경우와 동일함에도 세수손실만 가져옴
 - 우리나라가 우선규정을 적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세수를 대응규정 또는 이전불일치규정을 적용한 국가에서 가져가게 됨
- 그러나 혼성불일치 규정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빠르게 되면 다른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 시기의 차이로 인해 차이 기간 동

118) 김범준, 「국내투자 혼성과세의 과세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92면.

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3년 동안 혼성금융상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혼성불일치 규정 미도입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보다 3년 뒤 도입국가를 예정하는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세후수익률이 규정 적용 금액만큼 우리나라가 불리함

- 따라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각국의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에 발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의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에 대한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자본 수·출입국의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시기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주요국 중 영국을 제외하고는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을 확정된 국가가 없으나, EU 지침에서 권고하는 2020년이 적정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는 2018년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미국·일본·중국 등은 아직까지 혼성불일치 규정 전면 적용에 대한 시행시기를 논하고 있지 않음
 - 다만 EU의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관련 지침이 늦어도 2020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U 도입 시 연계규정 효과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나. 시행시기 이전의 충분한 대비기간 및 전파

- 혼성불일치 규정은 다른 보고서에 비해 많은 권고사항과 이에 따른 다른 세제와의 문제 및 정보 확보의 문제와 관계되어, 모든 내용을 습득하고 관련 거래를 파악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됨

- 실질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권고사항이 다수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및 세제와 연동되고 있음
 - 상황에 따라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권고사항 8가지와 이를 보충하는 4가지 권고사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양한 거래와 연계됨
 - － 각 권고사항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형태에 대해 나열한 것이어서 실제 이러한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는 훨씬 다양한데, 이는 Action 2 보고서의 사례의 수만 보아도 알 수 있음
 - 또한 혼성불일치는 금융상품, 도관, 고정사업장, 이중거주자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CFC규정, 과소자본세제, 연결납세제도, 합병세제 등과도 관련되어 있음
- 혼성불일치는 내국세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상대국가의 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적용하기가 더 어려움
 - 다른 제도와는 달리 투자자 관할국과 발행자 관할국 또는 혼성체 등의 설립국가 세제가 파악되어야 혼성불일치 여부가 확인 가능함
- 혼성불일치 규정 중 이전불일치 규정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어 동일지배그룹 등의 모든 거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즉, 우리나라 회사가 혼성불일치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일지배그룹이고 상위 단계의 어떠한 외국법인 간 혼성불일치 거래가 존재한다면 이전불일치 규정이 적용됨
- 또한 혼성불일치 규정은 규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약정에 대한 적용을 배제(grandfathering)하지 않음
 - Action 2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모두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약정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폭넓고 복잡한 규정의 이해, 정보의 획득, 현존하는 약정의 재조정을 위해서 도입시기까지 충분한 시간·논의 및 정보전달이 필요함
 - 혼성불일치 규정의 도입시기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규정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체계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호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또는 법안 승인 후 6개월이란 기간을 두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혼성불일치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 － 2014년 추계보고서부터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입법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6년 재정법에 도입함

다. 불확실한 과세에 대한 명확화

- 혼성불일치는 국가 간 과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과세제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도하지 않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혼성불일치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국내 세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한파트너십을 설립하였으며 도관성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를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 도관으로 보고 있었으나, 후속적으로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역혼성체가 발생하게 됨
 - 이는 납세자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납세자가 취하고 있는 세무상 효과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아 효율성·효과성을 낮추게 됨
 - － 납세자별로 다양한 세무처리를 하고 있으면, 일괄적인 혼성불일치 식별이 어려움

- 혼성불일치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과세제도는 옵션결합주식, 환매조건부매매와 주식대여, 조건부인수대가, 외국단체의 도관 여부 등임
 - 옵션결합주식이 발행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 담보차입인지 아니면 주식매매거래인지 여부
 - － 옵션의 형태, 행사가격, 의결권, 감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필요해보임
 - 비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매매와 주식대여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 또는 법적 형식에 따라 인식되는 것인지 여부
 - 회사 인수에 따른 조건부인수대가(earn-out clause)가 주식매수대가의 조정인지 확정시 비용인지 여부
 - 외국 단체가 법인인지 도관인지 여부

3.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실체법적 시사점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정비

-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배당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취지의 제도이지만 조문형태는 배당에 법인세 과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음
 - 이 제도는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 배당 시 이러한 배당에 포함된 소득세를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임
 -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익이나 잉여금이 자회사 소득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계없음
 -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신종자본증권처럼 잉여금의 분배이지만 신고조정으로 손

금산입하는 경우 문언의 엄격해석 시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익배당·잉여금분배에 대해 법인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 자회사의 관할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것이며, 이의 배당·분배가 자회사 관할국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야 함
 - 또한 국외 유동화회사 소득공제에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 배당을 통해 소득공제되는 부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이론상으로는 배당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지만, 국외 세제에 대한 다양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것임
 - － Action 2에서도 이는 우선규정 대상은 아니지만 대응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나. 동업기업특례제도의 적용제한 규정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허용은 우리나라의 역혼성체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에 대해 도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므로 국외에서는 이의 적용과 무관하게 국외의 회사법상 규정과 대비하여 실제로 볼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국외에서 투자한 단체의 경우 국외에서 단체를 실제로 보는 경우에는 동업기업특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역혼성체에 대응하는 권고사항 5.2에 해당하는 내용임

다. 비용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 혼성불일치 규정의 우선규정 적용으로 이자비용이 부인된 경우 이의 소득의 구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이자비용이 부인되었음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함
 - Action 2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소득의 재분류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이론상으로는 배당의 특성을 가진 경우라면 배당소득으로, 이자비용의 부인 성격이라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함
 - 예를 들어 과소자본세제는 차입금을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나, 다른 이자비용 부인제도는 이자비용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재분류하지 않음
 - 국외의 경우도 이자비용공제제한(earning stripping rule) 같은 경우는 이자비용초과 사용에 대한 비용 부인으로 보아 배당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혼성금융상품의 혼성성 문제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우선규정 적용은 배당으로 분류하고, 그 외 혼성채 등과 관련된 이자지급 등에 대한 우선규정 적용은 비용 부인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 제도에서는 소득의 재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적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각국과 일관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영국·호주 모두 이자비용이 부인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할 예정임
 - 이러한 배경에는 혼성불일치 규정은 조세회피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소득의 재분류(부채/자본의 재분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라. 적용 배제의 대상 고려사항

- 혼성불일치 규정 입법 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적용 배제에 대한 문제임
 - 이러한 문제는 혼성불일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보획득의 문제 등에 따른 조세행정 ·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기인함
- Action 2 보고서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 예외와 관련하여 규제자본과 유동화기구 등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금융상품매매업자의 혼성양도에 대해서도 배제하고 있음
 - 규제자본에 대해 Action 2에서는 그룹 간 거래에 대해 적용을 예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으나, 영국은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배제하였으며 EU 및 호주도 이를 검토 중임
 -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가 적용되는 유동화기구 등에 대해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Action 2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상품매매업자의 혼성양도에 대해서 영국에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EU · 호주에서도 배제할 예정임
 - 이는 배당 과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¹¹⁹⁾, 사례 1.34는 이에 대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나 조정금액이 없다고 하고 있음
- 유동화기구 등에 대한 배제는 Action 2에서 명확하므로 적용 배제하면 되나, 규제자본에 대해서는 보다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혼성불일치 규정은 연계규정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적용 배제를 하지 않으면 규제자본에 대한 배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임

119) HM Revenue & Customs, op.cit., 2016, p.159.

- 더구나 규제자본에 대한 적용은 Action 2 보고서에서 한 국가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 금융상품매매업자의 혼성양도는 우리나라 세제에서는 영향이 없으나, 편의를 위해 국외 금융상품매매업자와의 혼성양도거래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도 있음
- 이 밖의 적용예외로 조세회피 목적기준, 금액 또는 비율을 통한 적용최소기준을 고려할 수 있으나 Action 2나 세계 각국의 사례로 볼 때 이는 현재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님
- 혼성불일치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조세회피)목적은 구분하지 않으므로, 목적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 현재 도입중인 국가에서 목적을 고려해주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사례는 없음
- 금액 또는 비율 기준의 적용최소기준도 각국의 사례에 존재하지 않음
 - 다만, 호주는 이전불일치 규정의 적용 어려움 때문에 이전불일치에 대해서만 최소기준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다른 국가에서 최소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계규정을 고려할 때 최소기준을 두는 것은 세수유출의 효과만 나타날 것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일반적 또는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과의 상호보완 가능성

- 현행 혼성불일치 규정은 모든 혼성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며 Action 2 보고서 이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혼성불일치 규정의 보완적 규정으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영국은 영국 혼성불일치 규정의 의도가 Action 2와 다르거나 Action 2가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조세회피방지규정(targeted anti-avoidance rule)을 두고 있음
- 호주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통한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 이전에 재구조화하는 약정에 대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

정의 적용 여부 및 혼성불일치의 의도와 목적 미고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적 또는 특정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다른 형태의 혼성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사법적 판단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존재하나 이는 혼성불일치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방지하지 못함
 -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도관으로 간주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를 실질이 도관이 아니란 점을 다룰 수는 없음
- 따라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이전에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다른 세제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으므로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른 조세규정에서 없는 내용을 혼성불일치에만 두는 것은 조세 실체법적 근간을 바꾸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법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반적 또는 특정 조세회 피방지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혼성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바. 특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중과세에 대한 고려

1) 과세시기 차이의 정의

- Action 2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경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킨다고 기술하는데 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약정의 종류와 거래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며,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 영국 및 EU는 12개월, 호주는 3년으로 보고 있음
- 이를 규정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은 높아지나 동일한 기간의 적용으로 인해 개별 금융약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규정하지 않는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과세시기 차이의 구체적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보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 추세가 과세시기 차이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 시 상대국가의 실무적 적용을 고려하여 개별 약정별로 상대국가와 일치시킬 수 있음
 - 세계적 추세가 과세시기 차이를 규정한다면 세수배분문제 및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혼성불일치의 연계규정으로 인해 너무 길면 상대방 국가에서 대응규정만을 적용하여 기회세수손실을 가져오며, 너무 짧으면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세후수익률을 낮추게 되어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됨

2) 이중과세 등의 Action 2에서 고려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 대비

- Action 2의 사례 등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논하기 위한 사례만을 기술하여서 이중과세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음
 -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중과세는 조세제도 자체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순히 행정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뜻하는 것이 아님
- Action 2의 사례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거나, 후속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음

- 역혼성체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비용만이 발생하게 되고 청산하면 공제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영구미공제결손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러한 경우는 역혼성체의 이익에 대해 미인식혼성지급규정 적용 이후 과세기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더 문제가 발생함
 - 혼성체 · 이중거주자 · 고정사업장의 이중포함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조약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
 - D/NI가 발생하여 비용부인 또는 소득이 과세된 이후 이중포함소득 이외에 원인으로 해소가 이루어지는 경우(ex, 금융상품의 과세시기 차이)에 대한 반대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음
 - Action 2에서는 (역혼성체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혼성불일치를 보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에 비추어 반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Action 2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별도의 내국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국가가 거의 없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확인되지 않음

4. 여타 세제에 대한 시사점

가. 과소자본세제와의 상호작용

- 혼성불일치 규정과 과소자본세제는 공제되는 이자지급의 부인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나, 목적이나 적용방법이 달라 별개의 규정으로 보고 있음¹²⁰⁾

- Action 2 보고서에서도 혼성불일치규정 적용 여부는 이자공제제한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음
 - － 사례 9.2에서도 이자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혼성불일치가 영향을 받지 않음
- 다만, 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자가 중복으로 부인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이자공제제한 운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중복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 혼성불일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함
 - 영국·호주 등에서도 혼성불일치 규정을 다른 제도보다 먼저 적용하고 있으나, 과소자본세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미미함
 -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과소자본세제가 없으며, 호주는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 중에 있음
- 소득을 재분류하는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형태에서는 혼성불일치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혼성불일치에서의 이중과세 가능성이 존재함
 -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대상 차입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이미 배당(자본)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혼성불일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자 관할국에서 혼성금융상품 규정의 우선규정 적용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대응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혼성불일치 규정을 과소자본세제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부인된 이자의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 과소자본세제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된 차입금을 제외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과소자본세제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부터 적용하나 혼성불일치규정 대

120) OECD, op, cit., p.98.

상 차입은 혼성불일치 세제효과로 인해 이자율이 낮기 때문임

– 이런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혼성불일치 규정이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의 부담을 일부 회피하게 해주게 됨

○ 과소자본세제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된 차입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중복 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과소자본세제에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된 차입금이 해당되면 이미 부인된 비용을 다시 부인하게 됨

□ 우리나라에서 혼성불일치와 과소자본세제의 고려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과소자본세제에서 혼성불일치 규정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과소자본 비율 산정 시에는 포함시키되 이자지급 부인 시에는 배제하는 방법을 적용함

○ 과소자본세제 이자지급부인시 배제하는 방법은 부인이자가 기부인된 것으로 보는 방법과 다음 적용단계의 차입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혼성불일치 규정 대상 차입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부인은 과소자본세제에서 이미 부인된 것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과 혼성불일치 규정 대상 차입에 적용하였을 부인금액을 다음 순서의 낮은 차입에 적용하는 것임

나. 유보소득 과세(CFC 규정) 고려사항

□ CFC 규정은 혼성불일치 규정에서 역혼성체에 대한 대응규정 성격과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며, 권고사항은 전자와 관련되어 있음

○ 역혼성체와 관련하여 CFC 규정을 도입하여 혼성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CFC 규정으로 인한 혼성금융상품에서의 투자자 경상소득과세 및 이중포함소득으로의 분류는 CFC 규정 자체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아님

- 혼성불일치 규정 운용에 있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일 뿐임

□ 그러나 역혼성체의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CFC 규정의 적용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적용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Action 2에서는 역혼성체의 혼성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국가에서 CFC 규정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역혼성체의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은 지급자의 모든 형태의 공제되는 지급 (비현금비용은 제외)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혼성체 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이 필요함
 - 우리나라 CFC 규정은 수동적 소득에 맞춰져 있어, 역혼성체의 능동적 소득이 존재하면 혼성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음
- 영국·호주 등도 CFC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조정이 없었거나 계획되지 않고 있음

□ 만약 CFC 규정을 정비하여 역혼성체과세 또는 경상소득의 포함·이중포함소득으로의 분류를 포함하게 된다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ction 2 사례에서 역혼성체과세(사례 4.3) 또는 경상소득의 포함(사례 1.24)에서는 세액공제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중포함소득(사례 6.4)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음
 - 다만 사례에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다 납세자가 이중포함소득을 입증하는 데 확신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론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투자자 관할국에서 포괄적 과세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국의 지침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중포함소득으

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¹²¹⁾

– 반면에 호주에서는 면제나 세액공제의 적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¹²²⁾

다. 연결납세·합병·법적실체와 도관 간 변경 시 결손금공제제도 보완

- 혼성체 등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발생 가능성은 연결납세제도,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역혼성체 투자에 의해 발생함
 - 혼성체 등의 소득은 그 자체가 이중포함소득이므로 혼성체의 소득과 공제되는 비용은 혼성불일치 대상이 아니나, 비용은 이중공제되면서 이 비용을 혼성체 관할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과 상계되는 경우에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연결납세제도 및 역혼성체 투자는 제도 적용 시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될 수 있게 하며, 적격합병 및 조직변경은 이중공제된 비용이 결손금으로 이월되어 이중포함소득 이외의 소득과 상계됨

-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요건이 엄격하여 혼성불일치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지분이 없어도 관련 소득을 수취해가는 외국법인과 그러한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비해 연결납세제도 대상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지분율 100%를 요구하고 있어, 지분 없이 자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손익을 귀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자회사의 비용이 외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국외의 세제가 인지하지 못한 형식으로 국내 연결자회사를 도관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121) HM Revenue & Customs, op. cit., p. 338.

122) The Board of Taxation, op. cit., p. 30.

-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시 혼성체가 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에서 배제가 요구됨
- 적격합병 및 조직변경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므로 혼성체의 적격합병 및 조직변경 시 결손금 승계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가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되지 않는다고 증명한) 이중공제비용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혼성체가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더 이상 혼성체가 아니므로 피합병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중포함소득이 아님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시 혼성체를 탈피하게 되며,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중공제비용에 따른 결손금과 상계 시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 따라서 혼성불일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혼성체의 적격합병 및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제한하는 것이 요구됨

5. 조세행정적 시사점

가. 개별 사례의 축적을 통한 접근방법 및 이의 적용대상

-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분류하여 정리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유형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움
 - 발생원인은 Action 2 권고사항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며, 실제 거래에 대한 거래유형별 위험평가 접근방법이 개별 사례 축적 접근방법보다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임
 - 그러나 실제 조세행정에서 이에 대한 유형별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융상품의 요건 다양성, 국외 과세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함
 - － 국외 금융상품은 유형별 금융상품 내에서도 발행조건에 따라 혼성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혼성양도·혼성채 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과세제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본 보고서에서 식별한 것처럼 일부 유형에서는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은 거래와 관련 국가를 대응시켜 판단할 수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채무상품 중 이익의 배당 형식을 취하지만 손금으로 공제되는 상품과 배당과세면제 등이 부여되는 국가를 식별하여 이러한 경우에 혼성불일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사전에 인지한다면 세무조사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이러한 사례의 약정을 맺을 때 고려할 수 있음
- 사전에 식별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개별 사례의 축적을 이용하여 대응하여야 함
 -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무작위로 납세자에게 D/NI 또는 DD가 아님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비효과적인 방법임
 - 따라서 연구·동향조사 등을 통해 개별 사례를 축적하여 사전에 혼성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사례 축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외 금융상품의 혼성성, 혼성양도, 일부 국외 과세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혼성채 등이 대상이 됨¹²³⁾

나. 조세정보 교환 노력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의 조세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여러 차원에서 강조됨

123)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 참조.

- 권고사항 5.3에 따르면 비거주 투자자에게 배분된 지급액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위해 도관체의 적절한 신고와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는 과세당국 간 원활하게 교환되어야 함을 제시함
 - 권고사항 8에 따른 이전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과세제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에서도 혼성불일치 거래 유형 중 특히 이전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수의 거래 당사자가 속한 관할의 세법체계 및 세무처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 권고사항 9.1에 따르면 혼성불일치 규정은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상대방 관할국의 규정 적용 여부, 거래의 구조와 지급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함
 - 권고사항 9.2에 따르면 보고서상 규정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체에 대한 관할국의 취급에 대한 정보 교환 차원의 협력 의무를 제시함
- 혼성불일치 발생위험이 높은 외국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식별과 그에 대한 실무적인 세무상 대응,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는 관할국 세제 정보 등에 대해 빈번하고 심도 있는 공유노력이 필요함
- 각국의 상이한 세제를 이용하여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함에 따라 일방 관할국에서 독자적으로 혼성불일치를 판단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임
 - 규정 적용에 따른 혼성불일치 조정에는 항상 이중과세의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관할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201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¹²⁴)을 통한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혼성불일치 해소를 포함한 역외 탈세 적발 목적을 달

성해야 함

- 다만 MCAA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는 금융기관을 통해 과세당국에 제출되는 정보이므로 이외의 세무처분 및 지분구조 등의 과세정보의 경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이나 다자간 협약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이행의무 수준이 권고(best practices)단계인 Action plan 12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OECD, 2015a)을 통해 거래의 구조와 지급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교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해야 함

다. 이중포함소득 및 결손금 산정을 위한 구분경리

- 혼성체 등의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비용은 이월되어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혼성체의 구분경리가 필요함
 - Action 2에서는 혼성불일치 항목과 이중포함소득 항목별 추적이 어려울 경우 각국은 실행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인세제하에서는 항목별 추적 자체가 요구되지 않음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므로 항목별 추적이 불필요함
 - 그러나 혼성불일치 규정에 따라 부인된 비용을 향후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를 위해서는 이중포함소득 외의 소득과 구분경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구분경리는 국외 혼성체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혼성체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를 요구받으며,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가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각 연결법인별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국외의 혼성체 ·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만 세무상 구분경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라. 납세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고려

- Action 2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D/NI, DD, 이전불일치 등 전반적인 거래 유형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해야 함¹²⁵⁾
 - 납세자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혼성불일치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납세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지급이 합리적인 기간 내 경상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D/NI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권고사항 1.1에 따르면 인식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합리적 기간 이내에 지급액이 경상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함
 - 거래에서 발생한 지급이 수취인의 경상소득에 포함되어 어떠한 공제나 감면의 혜택 없이 과세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해야 함
- 혼성체와 이중거주자로 인해 발생하는 DD의 측면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부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해당 비용이 다른 관할의 어떠한 소득과도 상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세당국에 입증해야 함
 - 권고사항 6.1과 7.1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하여 초과 이중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125) 보고서상으로는 show, satisfy, the burden of establishing 등의 표현을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제시하고 있음

- 만약 이월된 미사용 손실이 존재하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납세자가 다른 관할에서 해당 미사용 손실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과세관청은 비이중포함소득과 상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이전불일치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의 납세자는 이전불일치 규정이 해당 관할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함
 -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에 따른 다른 과세관할의 조정 자료와 지배그룹 과세소득 산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면제됨
 - －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조정의 범위를 이전불일치 지급금이 혼성공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계된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납세자는 각 관할국의 CFC제도상 시기·정량 규정에 따라 적절히 주주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해야 함
 - 해당 지급이 관할국의 CFC제도의 대상소득에 해당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주주 또는 모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경감되지 않은 일반 세율로 완전히 과세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해야 함
 - －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측면에서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CFC제도에 따른 해외유보소득의 합산을 면밀히 살펴야 함
- 혼성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 여부의 판단은 권고사항 적용 범위의 판단을 위해 선제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관련 거래가 구조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세무처분 불일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관할의 투자자들에게 주로 홍보되고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 권고사항 10.2에 따르면 세무처분 불일치로 인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구조화 약정 거래에 해당함

- 의결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동일인 또는 특정 그룹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공동지배로 간주하여 지분율을 합산하지만 납세자가 특정 상황에 대해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공동지배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음
 - 권고사항 11.3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간접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인 경우 자산운용사가 투자지침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과세관청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함

- Action 2 보고서상 여러 측면에서 제시된 납세자의 입증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 구조화 약정 해당 여부 및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주로 집중됨
 - 특히 간접이전불일치의 경우 동일지배기업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며 혼성불일치와 무관한 차입을 한 경우에도 상위 회사의 혼성불일치가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납세자 권리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만약 추정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단계에서 혼성불일치가 없었음에도 이전불일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Action 12에서는 간접이전불일치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어¹²⁶⁾,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가가 비례원칙상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심판에서는 관련 당사자 간의 간주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경우¹²⁷⁾와 추정규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간접이전불일치와 같은 동일지배기업이지만 국외

126) OECD, *Mandatory Disclosure Rules, Action 1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pp. 75~78.

127) 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가16 결정, 헌재 1995. 7. 21. 선고 92헌바27 결정 등.

제3자의 경우에 부합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사전고지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협력부담을 줄이고 과세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입증책임에 대한 최소기준이나 허용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납세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 구성권, 「국제조세에 있어 혼성불일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6.
-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제29권 제1호, 한국조세협회, 2012.2.
- 김범준, 「국내투자 혼성과세의 과세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2
- 손영철, 「환매조건부매매 및 대차거래에서의 세법상 실질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7호 제3권, 한국세법학회, 2011.
- 임동원,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7호, 20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 11-1호, 2016.
- Alan Judge & Casey Plunket, “The debt-equity conundrum – New Zealand,”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Axel Hilling, “The debt-equity conundrum – Sweden,”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Belema Obuoforibo,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0. Anti-Avoidance,” IBFD, Last Reviewed: 15 August 2016.
- Blair Dwyer,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1.
- Chiara Bardini & Michel Lambion,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4 November 2016.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May 2016.

David Southern, "The debt-equity conundrum – United Kingdom,"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6 Revenue Proposals," February 2015.

_____,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7 Revenue Proposals," February 2016.

_____, "Preamble to 2016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February 17, 2016.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United States," 2016.

_____, "Taxation and Investment in China," 2016.

Diane Ring, "The debt-equity conundrum – United States,"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Ernst & Young, "2016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_____, "Global Tax Alert, European Council achieves broad consensus on draft directive aimed at closing down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y tax systems," 201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EU) 2016/1164 as regards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ies Article 2.," 2016/0339, 25.10.2016,

_____, "Corporate tax avoidance: Council agrees its position on hybrid mismatches," 2017.

Geoffrey Scardoni, Anna Sergiel, and Louis Thomas, "The debt-equity conundrum – Luxembourg,"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Gerrit De Keizer & Michiel Sunderman, "The debt-equity conundrum – Netherlands,"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HM Government, "Autumn Statement 2014: policy costings. 'Corporation tax: hybrids'," 2014.
- _____, "Budget 2016: policy costings. 'Corporation Tax: extend scope of hybrid mismatch rules'," 2015.
- HM Revenue & Customs, "Corporation Tax: minor changes to the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 technical note," 2016.12.5.
- _____, "Draft guidance - Hybrid and Other Mismatches," 2016,
- IFA, "The debt-equity conundrum," IFA Cahiers 2012, Volume 97b, 2012.
- IRAS,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2014.5.19.
- Jean-Yves Hemery & Siamak Mostafavi, "The debt-equity conundrum - France,"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J.G. Rienstra,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8., Country Analyses IBFD."
- _____,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 _____,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 _____,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 Jodi Kelleher & Dean Kraus, "The debt-equity conundrum - Canada,"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Overview Of The Tax Treatment Of Corporate Debt And Equity," 2016. 5. 20.
- _____, "Background,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November 30, 2015.
- Masao Yoshimura, "The debt-equity conundrum - Japan,"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Khadija Baggerman-Noudari,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December 2016.

KPMG, "Amended Japan-Germany Tax Treaty," KPMG Japan tax newsletter 2015. 12. 24.

_____, "Taxation in Japan 2016," 2016.

Nina Umar,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November 2016.

OECD, "BEPS Action 2 Branch Mismatch Structure," 23 September 2016.

_____,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Tax Policy and Compliance Issues," March 2012

_____, "Mandatory Disclosure Rules, Action 1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_____,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O. Popa, "Chapter 6: Past, Present and Future of Tax Structuring Using Hybrid Entity Mismatches in International Tax Structures in the BEPS Era: An Analysis of Anti-Abuse Measures (M. Cotrut et al. eds., IBFD 2015)," Online Books IBFD, August 2016.

Patricia Brown, "The debt-equity conundrum - General Report,"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Paul te Boekhorst,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20 December 2016.

PriceWaterhouseCoopers, "Changes in the Japanese Tax Laws Following the OEC

- D · BEPS Project – The 2015 Tax Reform Proposal, BEPS News,” 2015. 2. 25.
- _____,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PwC’s analysis of the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4 May 2016
- Rachel Saw, “Vietna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July 2016.
- Shi 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November 2016.
- Treasurer, “Review of application of hybrid mismatch rules to regulatory capital,” 4 Aug 2016.
- The Board of Taxati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Hybrid Mismatch rules: A Report to the Treasurer,” March 2016.
- _____,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Hybrid rules: Consultation paper,” November 2016.
- United Kingdom, “Draft Guidance – Hybrid and Other Mismatches,” December 2016.
- Ying Zhang,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IBFD, Last Reviewed: 1 December 2016.
- Yoram Keinan & Shay Menuchin, “The debt-equity conundrum – Israel,” IFA Cahiers 2012 - Volume 97B, 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6.12.29.)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검색일자: 2016.12.29.)
-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자: 2016.12.29.)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 (검색일자: 2017.1.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1>) (검색일자: 2017.1.6.)

EU 위원회(<https://ec.europa.eu/>) (검색일자: 2017.1.7.)

싱가포르 국세청(<https://www.iras.gov.sg/>) (검색일자: 2016.12.29.)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 (검색일자: 2016.12.29.)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 (검색일자: 2017.1.5.)

일본 재무부(<http://www.mof.go.jp/>) (검색일자: 2016.12.22.)

Alston & Bird LLP(<http://www.alstontax.com/>) (검색일자: 2016.12.29.)

Ernst & Young(<http://www.ey.com/>) (검색일자: 2016.12.29.)

IBFD(<http://online.ibfd.org/>) (검색일자: 2017.1.5.)

United States Code(<http://uscode.house.gov/>) (검색일자: 2016.12.29.)

〈부록 1〉 BEPS Action 2 권고사항

Chapter 1. 혼성금융상품규정(Hybrid Financial Instrument Rule)

권고사항 1

1. D/NI결과가 초래되는 지급 관련 불일치 해소

다음 규정은 금융상품의 양도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대체지급과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지급에 적용해야 함

- (a) 지급자 관할국은 D/NI결과가 발생하는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함
- (b) 만약 지급자 관할국에서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령자 관할국은 D/NI 결과가 발생하는 지급을 경상소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 (c) 합리적 기간 내에 경상소득에 포함될 지급임을 과세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의 인식시기 차이는 D/NI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금융상품과 대체지급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은:

- (a) 금융상품은 지급자와 수령자의 관할국에서 부채, 자본 혹은 파생상품을 과세하는 규정에 따른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혼성양도를 포함함
- (b) 혼성양도는 다음에 해당되는 납세자와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의 양도를 위해 체결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 (i) 납세자는 양도된 자산의 소유자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권리가 납세자의 의무로 취급됨
 - (ii) 거래상대방 관할국의 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양도된 자산의 소유자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거래상대방의 의무로 취급됨

이러한 목적에서 자산의 소유권은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소유자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모든 규정을 포함함

- (c) 관할국은 거래상대방이 금융수익이나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거래를 금융수익이나 자본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함
- (d) 거래 상대방 관할국의 법에서 금융상품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은 금융수익이나 자본수익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 (e) 대체지급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본래 금융수익이나 자본수익을 대체하는 다음의 지급으로, 금융상품을 양도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을 포함함

만약 금융상품에 의해 직접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

- (i) 지급자의 경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지급
- (ii)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될 지급 또는
- (iii)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킬 지급을 포함함

3.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금융상품 관련 지급에만 규정 적용

금융상품의 조건으로 인해 세무처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상품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은 혼성불일치의 조정대상이 되나, 금융상품의 조건이 아닌 금융상품을 보유한 정황이나 납세자의 상황으로만 발생하는 불일치는 혼성불일치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음

4. 규정의 범위

이 규정은 납세자가 구조화 약정의 당사자이고 지급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에만 적용함

5. 규정의 예외

권고사항 1.1(a)의 우선방안은 다음 상황과 같이 설립지 관할국(establishment jurisdiction)의 법률에 따라 특별 세무처리와 특례규정의 대상이 되는 투자전문회사(investment vehicle)가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a) 설립지 관할국(establishment jurisdiction)의 세무정책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지급의 공제를 유지하고자 함
 - (i) 납세자는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혹은 최소과세 대상이고,
 - (ii) 납세자가 발행한 금융상품의 보유자는 해당 지급이 현재기준의 경상소득으로서 과세됨
- (b) 설립지 관할국의 규정과 조세체계는 투자전문회사(investment vehicle)가 얻은 투자소득의 전부나 실질적인 전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금융상품의 보유자에게 분배하고 지급하는 경우에 유효함
- (c) 설립지 관할국의 조세 정책은 다음의 지급총액 대하여 적용됨
 - (i) 설립지 관할국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되고
 - (ii) 수령자 관할국과 설립지 관할국 사이의 조약으로 인해 수령자 관할국의 법에 따라 수령자의 경상소득에서 배제되지 아니할 것
- (d) 구조화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아님

권고사항 1.1(b)의 후속규정은 상기 투자전문회사에 의한 지급에도 계속하여 적용함

Chapter 2.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에 대한 특별 권고사항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권고사항 2

1. 공제 가능한 지급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의 부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D/Nl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자가 해당 지급을 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당소득 과세면제는 국내법에서 적용해서는 안됨

이와 동일하게, 관할국은 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배당소득과 세제 외의 유사한 기타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함

2. 혼성양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제한

혼성양도에 따른 세액공제의 이중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성양도로 인한 지급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모든 관할국은 거래에 따라 납세자의 순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공제를 제한해야 함

3. 규정의 범위

권고사항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이 없음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45

Chapter 3.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에 대한 규정 (disregarded hybrid payment rule)

권고사항 3

1. D/NI결과가 발생하는 지급에 대한 불일치 해소

다음 규정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disregarded payment)에 적용함

- (a) D/NI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자의 관할국은 해당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할 것임
- (b) D/NI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령자의 관할국은 해당지급을 경상소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임
- (c) 지급자 및 수령자 관할국의 법에 따라 이중으로 소득이 포함되어 이를 상계하는 지급자 관할국의 공제범위까지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
- (d) 이중으로 포함된 소득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은 다른 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임

2. 혼성지급자의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규정의 목적상

- (a)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disregarded payment)은 지급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공제되고 수령자 관할국의 법률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임
- (b) 혼성지급자는 수령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자의 세무처리가 인식하지 아니한 지급을 발생시키는 자임

3.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이중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에서 혼성지급자가 지급하는 인식되지 아니한 지급을 공제한다면 혼성불일치를 야기함

4. 규정의 범위

이 규정은 불일치의 당사자가 동일 지배그룹에 있거나,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의 당사자로 지급이 해당 거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함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 49

Chapter 4. 역혼성 규정 (Reverse hybrid rule)

권고사항 4

1. D/NI를 발생시키는 지급의 범위까지 불일치 해소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역혼성으로 인한 지급의 관점에서, 지급자의 관할국은 D/NI를 발생시키는 지급의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해야 함

2. 역혼성과 관련된 지급에만 적용되는 규정

역혼성은 투자자에게는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고, 설립지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도관체로 간주되는 거래 당사자를 의미함

3. 혼성불일치에만 적용되는 규정

만약 발생소득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함

4. 규정의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은 불일치의 당사자가 동일 지배그룹에 있거나, 구조화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지급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 55

Chapter 5. 역혼성의 세무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 tax treatment of reverse hybrids)

권고사항 5

1. CFC 규정과 역외투자제도의 개선

각 관할국은 역혼성의 지급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D/NI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외투자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함. 마찬가지로, 이전된 불일치 거래의 측면에서도 역외투자제도 도입을 고려하거나, 개정해야 함

2.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과세 도관성(tax transparency)의 제한

만약 역혼성의 소득이 설립지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면서, 역혼성과 동일 지배집단 내 비거주 투자자의 발생 소득도 투자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경우, 역혼성은 설립지 관할국에서 거주하는 납세자로 간주되어야 함

3. 중개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 요구

비거주 투자자에게 분배된 지급액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적절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자신의 관할국에서 설립된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정보 보고를 요구해야 함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 63

Chapter 6. 공제 가능한 혼성지급 규정 (Deductible hybrid payments rule)

권고사항 6

1.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한 불일치 해소

다음 규정은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공제 가능하며, 모법인의 관할국에서도 중복 공제되어 혼성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한 혼성지급자에게 적용되어야 함

- (a) 모법인의 관할국에서는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해야 함
- (b) 만약, 모법인의 관할국에서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면, 지급자 관할국은 중복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해야 함
- (c) 지급자와 모법인의 관할국 양쪽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상쇄시키기 위한 공제는 불일치를 발생시키지 않음(이중포함소득)
- (d)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공제는 다른 과세기간의 이중포함소득과 공제할 수 있음. 공제가 과도하게 부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초과 공제액이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어떠한 관할국의 과세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

2. 혼성지급자가 지급하는 공제가능한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자의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지급에 대한 지급자는 혼성지급자로 간주됨

- (a) 지급자는 지급자 관할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은 지급자가 거주하는(모법인 관할국)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자(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거나,
- (b) 지급자는 지급자 관할국의 거주자이며, 지급은 다른 관할국(모법인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자(또는 특수관계인)의 투자자에게 중복공제를 발생시킴

3.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지급이 지급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공제될 때,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4. 규정의 적용 범위

후속규정(The defensive rule)은 불일치의 당사자들이 동일 지배집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구조화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지급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우선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Chapter 7. 이중거주 지급자 규정 (Dual-resident payer rule)

권고사항 7

1.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한 불일치 해소

다음 규정은 양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공제가능한 지급을 통해, 혼성불일치에 따른 중복공제를 발생시키는 이중거주자에게 적용되어야 함

- (a) 각각의 거주지 관할국에서는 중복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의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해야 함
- (b) 공제가 양 관할국의 법률에 따른 소득과 상쇄되는 경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음(이중포함 소득)
- (c)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공제는 다른 과세기간의 이중포함소득과 공제할 수 있음. 공제가 과도하게 부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초과 공제액이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어떠한 관할국의 과세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

2. 이중 거주자가 지급하는 공제 가능한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납세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할국 법률에 따른 과세목적상의 거주자라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함

3.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지급에만 적용하는 규정

지급이 지급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공제될 때,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4. 규정의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 77

Chapter 8. 이전 불일치 규정 (Imported mismatch rule)

권고사항 8

1. 간접적인 D/NI 결과를 발생시키는 지급 범위까지 공제를 부인함

지급자 관할국에서는 간접 불일치 지급금에 대하여 공제한 것을 부인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자의 관할국에서 수령자가 해당 지급금을 혼성 공제에서 상계하는 범위에 한함

2. 혼성 공제(hybrid deduction)의 정의

혼성 공제는 다음을 원인으로 한 공제를 의미함

- (a)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의 지급
 - (b)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혼성지급자가 지급한 부인된 지급
 - (c)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역혼성체의 지급
 - (d)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중복공제를 유발한 혼성지급자 또는 이중거주자의 지급
- 또한 수령자가 다른 혼성 공제에서 상계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인한 공제를 포함함

3. 이전 불일치 지급(imported mismatch payment)

이전 불일치 지급은 혼성불일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수령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한 지급임

4. 규정의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은 불일치의 당사자가 동일 지배그룹에 있거나, 구조화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지급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 83

Chapter 9. 제정원칙 (Design principles)

권고사항 9

1. 제정원칙

혼성불일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a) 관할국 법률에 따른 조세혜택을 되돌리기보다는 불일치를 해소함
- (b) 포괄적으로 적용됨
- (c) 자동적으로 적용됨
- (d) 협력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함
- (e) 국내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함
- (f) 명확하고 투명하게 적용함
- (g) 각 관할국에서 법제화되기 위해 충분히 유연함
- (h) 납세자에 의해 이행이 가능하며, 관련된 협력비용을 최소화함
- (i) 과세당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함

관할국은 상기 제정원칙들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국내법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실행 및 협력

관할국은 권고사항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다음의 조치사항들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 (a) 권고사항들에 대한 합의된 지침을 개발
- (b) 권고사항 실행을 위한 협력(시행 시기 포함)
- (c) 경과규정의 개발(기존의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될 가정 제거)
- (d) 권고사항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검토
- (e)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체에 대한 관할국의 취급에 대한 정보 교환
- (f) 납세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정보제공 노력(OECD의 합리적인 노력 포함)
- (g) Action Plan 3,4를 포함한 BEPS의 다른 Action Plan과 권고사항 간 상호작용 고려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93

Chapter 10. 구조화 약정 (Definition of structured arrangement)

권고사항 10

1. 일반적 정의

구조화 약정이란 혼성불일치의 영향이 약정상 조건을 통해 가격에 반영되거나, 계약의 사실관계와 제반상황(조건 포함)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약정을 의미함

2. 구조화 약정의 구체적 예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도록 사전에 설계된 거래의 사실과 상황이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함.

- (a) 혼성불일치를 일으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거나, 계획 중 일부를 구성하는 약정
- (b) 혼성불일치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 단계, 거래를 수반하는 약정
- (c) 전체 또는 일부가 절세상품으로 시장화된(marketed) 것으로 세무이익(tax advantage)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혼성불일치에서 발생한 약정
- (d) 혼성불일치가 발생한 관할국의 납세자에게 우선적으로 판매된 약정
- (e) 혼성불일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수익률 조정 등을 포함한 거래의 조건변경이 가능한 약정
- (f) 혼성불일치 요소 제거 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약정

3. 납세자가 구조화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납세자 혹은 동일지배집단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혼성불일치의 인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혼성불일치로 인한 세무상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구조화 약정의 당사자로 보지 않음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105

Chapter 11.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Definitions of related persons, control group and acting together)

권고사항 11

1. 일반적 정의

다음 권고사항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a) 동일지배집단에 속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제3자가 양 당사자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임.
- (b) 다음과 같은 경우 두 당사자는 동일지배집단에 속해 있음.
 - (i)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 (ii)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제3자가 두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 (iii)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제3자가 두 당사자 모두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 (iv) OECD 모델조세협약(2014) Article 9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 (c)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의결권 혹은 상대방의 투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상대방의 지분을 일정비율 보유한 것으로 간주함

2. 지분의 합산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라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영향력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출자지분과 의결권의 전체를 지배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함.

3. 공동 지배

두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권, 혹은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함.

- (a) 두 당사자는 동일 집단(family)의 구성원임
- (b)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함(regularly acts)
- (c)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권 혹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수행함
- (d)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지배권 혹은 소유권은 동일 인물이나, 지배집단에 의해 관리됨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가 투자지침상 조건에 따른 투자의 원천과 혼성불일치에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두 펀드는 공동 지배관계 판단상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 관계로 간주되지 않음

Chapter 12. 기타 정의 (Other definitions)

권고사항 12

1 정의

- 발생수익(Accrued income): 투자자의 효익(benefit)을 위하여 수령자, 투자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 거래(Arrangement):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계약, 구조, 계획 혹은 이해 등을 의미하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포함함. 광범위한 거래의 일부, 단일한 거래 혹은 여러 거래로 구성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ECD 보고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관련한 조세조약의 혜택에 대한 승인'(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의 문단 4에 정의됨
- 정관(Constitution): 당사자와 그 소유자간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법인 혹은 조합의 조항을 포함함
- 공제/소득 불포함(D/Ni outcome): 지급자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액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며, 수령자의 관할국에서는 경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D/Ni가 발생함 D/Ni는 지급의 인식 시기 문제, 관할국에서 지급액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그러나, 특정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시점에 지급이 인식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시점의 불일치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됨(권고사항 11(c)참조)
- 중복 공제(DD outcome): 하나 이상의 관할국에서 지급액이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함
- 공제(Deduction): 지급자의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액의 특성과 처분에 대한 적절한 결정 이후, 납세자의 과세대상 순소득 산정 시 지급액을 공제하거나, 동등한 세액 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 임원(Director): 당사자 혹은 신탁관리자를 포함하여, 정관에 따라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함
- 분배(Distribution): 당사자가 소유자에게 이익 혹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이중포함소득(Dual inclusion income): 비용 공제와 비용 부인의 경우, 불일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할국의 법률하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과 관련됨. 그러나, 양쪽의 관할국에서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국내 배당과세 제외 등의 이중과세 완화의 혜택을 받더라도, 이중포함소득임
- 출자지분(Equity interest): 투자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함
- 출자이익(Equity return): 이익 또는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가정하에 거래의 조건, 분배액과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출함
- 설립지 관할국(Establishment jurisdiction): 거래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설립된 장소의 관할국을 의미함
- 가족(Family): B가 다음에 해당될 때, A는 B와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임
 - A의 배우자이거나 동성 배우자(civil partner)인 경우

- A의 친족인 경우(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 A의 친족의 배우자 혹은 시민적 파트너인 경우
- A의 배우자 혹은 시민적 파트너의 친족
- A의 배우자 혹은 시민적 파트너의 친족의 배우자 혹은 시민적 파트너
- 입양된 친족
- 재무이익(Financing return): 경제적으로 지분에 비례하거나, 약정의 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됨
-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권고사항 1,3,4,6,7의 문단3에서 정의됨
- 경상소득에 포함(Included in ordinary income): 수취인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에 대한 성격과 세무처분을 적절히 결정한 후 관할국의 법률에 따른 과세소득 계산 시 경상소득으로 처분된 범위까지의 지급을 경상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투자자(Investor):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함
- 투자자 관할국(Investor jurisdiction): 투자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관할국을 의미함
- 불일치(Mismatch): 불일치란 중복공제(DD outcome)나, 공제/소득 불포함(D/NI outcome)을 의미하며, 향후 예상되는 불일치를 포함함
- 화폐(Money): 화폐로 전환 가능한 모든 형태 등이 포함되며, 제3자에 대한 지급 수단을 포함함
- 역외투자제도(Offshore investment regime): CFC 제도, 해외투자펀드 규정 등 투자자의 발생소득이 투자자 관할국 법률이 적용되도록 세원에 포함시키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함
- 경상소득(Ordinary income): 납세자의 한계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지급의 특정 분류를 위해 면제, 배제, 공제 혹은 다른 세액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함(예를 들어, 지급자의 기본적 세금에 대한 간접 세액공제) 원천세 혹은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부과된 다른 소득에 대해 수령자의 관할국에서, 세액공제나 다른 세액 경감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이 감소하더라도, 납세자의 한계세율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함
- 수령자(Payee): (수령자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포함) 거래를 통해 지급받는 자를 의미함
- 수령자 관할국(Payee jurisdiction): 수령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관할국을 의미함
- 지급자(Payer): (지급자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포함)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자를 의미함
- 지급자 관할국(Payer jurisdiction): 지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관할국을 의미함
- 지급(Payment): 배당, 차입, 상환, 미지급 거래 등을 포함하여 지급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함. 다만 단지 과세 목적으로 간주되는 지급이나, 거래당사자 간 경제적 권리의 생성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 당사자(Person): 자연인, 법적 당사자, 법인격 없는 단체(unincorporated body)와 신탁을 포함함
- 납세자(Taxpayer): 관할국에서 거주자로서, 혹은 원천 규정 준수의 이유로(관할국 내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 신탁(Trust): 적격 업무를 처리하는 신탁관리자를 포함함
- 의결권(Voting rights): 배당, 정관변경 혹은 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자료: BEPS Action 2 final report p.121

〈부록 2〉 BEPS Action 2 사례 요약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1	혼성금융 상품규정	부채/자본 혼성성에서 이자지급	특수관계자 간 원금·이자 지급이 후 순위에서 정해진 지급능력을 충족 못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급지 국가에서는 부채로, 투자자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을 과세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Y	Yes	- 투자국가에서 권고사항 2.1을 적용하지 않는다면(권고사항 2.1의 적용시 D/NI가 발생하지 않음) 지급지 국가의 우선규정 및 투자국가의 대응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 - 제3자로부터 특수관계자 금융상품을 취득하여도 혼성불일치 범위에 포함
1.2	혼성금융 상품규정	부분적인 과세면제의 부채/자본 혼성성에서 이자지급	특수관계자 간 부채/자본 혼성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지급지 국가에서는 부채로, 투자자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을 부분 과세면제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의 범위	Y	Yes	- 투자국가에서 권고사항 2.1을 적용하지 않는다면(권고사항 2.1의 적용시 D/NI가 발생하지 않음) 지급지 국가의 우선규정을 배당과세면제 정도까지 적용 및 투자국가의 대응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
1.3	혼성금융 상품규정	경감세를 적용 부채/자본 혼성성에서 이자지급	특수관계자 간 부채/자본 혼성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지급지 국가에서는 부채로, 투자자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에 대해 경감세를 적용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의 범위	△	배당소득에만 경감세율이 적용되면 해당됨	- 투자국가에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경감세를 적용한다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당에만 경감세를 적용한다면 불일치 발생 - 불일치 발생시 우선규정 및 대응조정이 완전한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까지만 적용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4	혼성금융 상품규정	외국남부세액공 제를 적용받는 이자지급	특수관계자 간 부채/자본 혼성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지급지 국가에서는 부채로, 투자자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에 대해 외국남부세액공제 를 적용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의 범위	Y	Yes	- 투자국가에서 권고사항 2.1을 적용하 지 않는다면(권고사항 2.1의 적용시 D/NI가 발생하지 않음) 지급지 국가의 우선규정을 외국남부세액공제에 따라 완전과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적용 및 투자국가의 대응규정을 순차 적으로 적용
1.5	혼성금융 상품규정	과세면제되는 인에 대한 이자 지급	특수관계자 간 부채/자본 혼성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지급지 국가에서는 부채로, 투자자 국가에서는 자본으로 보아 배당이 적용되나, 투자자는 관할 국에서 과세면제대상임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의 범위	N	No	- D/NI가 혼성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의 납세지 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성불일 치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혼성금융상품이 D/NI를 발생시 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의 납세지위와 관계없이 혼성불일치를 야 기하므로 우선규정을 적용(대응규정은 적용해도 투자자가 과세면제이므로 영 향 없음)
1.6	혼성금융 상품규정	과세체계가 존재 하지 않는 국가 의 인에 대한 이 자지급	법인세 과세체계가 없는 국가에 소재 하는 회사에 이자지급	이자의 혼성금 용상품규정 적 용 여부	N	No	- 지급자관할에서는 이자비용 공제, 수취 자관할에서 과세되지 않아 D/NI가 발 생하지만, 수취자 관할에서 과세체계가 없어 애초부터 과세될 수 없으므로 혼 성금융상품규정의 범위나 규정에 해당 할 수 없음
1.7	혼성금융 상품규정	속주주의 과세체 계 납세자에 대 한 이자지급	속주주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국가 의 납세자에게 이자지급	지급이자의 혼 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N	No	- 금융상품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가 아니므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혼성불일치에 해당하지 않음
1.8	혼성금융 상품규정	과세면제 고정사 업장에 대한 이 자지급	국외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관할국에서, 국외고정사업장에 지급 하는 이자지급으로 이는 지급자는 공	지급이자의 혼 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Y	- 차입으로 인해 고정사업 장 소재지국과 회사의 거 주국에서 지급이자에	- 금융상품의 혼성성에 대한 판단은 금융 상품의 조건이 관할국의 세법상 불일치 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제되는 비용이나 수취자는 과세되지 않음			과세되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됨 - 국외고정사업장에 대한 면제로 인해 대응규정은 영향이 없음	불일치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여기에서는 국외고정사업장이 보유)에만 기인하는 경우 혼성불일치가 아닌 - 혼성금융상품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취자(고정사업장) 관할국에서 과세된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존재함
1.9	혼성금융 상품규정	세금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이자지급	지급자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있으나, 수취자는 세금면제 자취제도를 통해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있음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N	과세면제지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채권 보유 시에도 D/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래에서 발생한 불일치가 금융상품의 조건이 아닌 거래당사자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불일치는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혼성금융상품규정은 금융상품의 조건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적용
1.10	혼성금융 상품규정	특수목적 실체에 의해 지급된 공제가능한 배당	리츠(부동산투자펀드)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투자자의 경상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	배당의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N	리츠(부동산투자펀드)가 지급하는 배당이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은 금융상품의 조건이 아닌 리츠의 실업목적에 따른 특별한 세무상 자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 금융상품의 조건이 아닌 지급자의 납세 지위로 인한 불일치이므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 혼성금융상품규정이 아닌 권고사항 2.1은 적용이 가능함
1.11	혼성금융 상품규정	공제와 동일한 세금감면	지급자 관할국에서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 만큼 지급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타국의 수취인에게 환급해주는 경우	지급된 배당의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조정 방법	Y	배당이 공제가능한 비용이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함	-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은 배당세제혜택과 동등하며, 금융상품(배당)에 대한 과세대우로 인한 발생임으로 혼성금융상품규정이 적용됨
1.12	혼성금융 상품규정	지분율에 비례한 부채의 자본 재	지분율에 따라 지급을 대여하였는데, 투자자 관할국에서 지분율에 따른 대	지급이자의 혼성금융상품규정	Y	- 권고사항 2.1 적용 가능 - 지분율에 따른 대여 사실	- 혼성금융상품규정은 특수관계자가 개입한 금융상품에만 적용됨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분류	어는 지분으로 분류하는 경우	적용 여부		은 자금조달약정에서 유 의적인 요소로 금융상품 의 조건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혼성금융상품규정이 적용되는 금융상 품조건은 대출의 권리·의무, 담보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매우 폭넓게 적용 되는데, 자본비용에 따른 대출은 다른 형태의 것과는 달리 대출의 상업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금 융상품의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1.13	혼성금융 상품규정	무이자 대출에 대한 간주이자 발생액	무이자대출로 자회사에 대출, 자회사는 회계목적상 무이자대출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여 매년 상각액을 비 용으로 인식하나, 모회사는 구분하지 않음	혼성금융상품 적용 여부	Y	동일 관할국의 지급자와 수령자가 세무와 회계처리 를 달리 적용하여 D/NI발 생	- 발생이자 상각액은 지급과 관련되는데, 지급은 가치이전이며, 미래의무나 조건 부담으로 인해 지급 가능성이 있는 금액 을 포함함(향후기간 지급의무가 증가하 지 않더라도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 측면에서 미지급명목가치를 포함함) - 사례는 동일 관할국에서 금융상품의 세 무처리를 달리하여 불일치가 발생함 - 금융상품 개별요소의 가치평가에 지급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1.14	혼성금융 상품규정	무이자 대출에 대한 간주이자	국의 소재 자회사에서 무이자대출을 제 공하고, 자회사는 세무상 시장이자를 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혼성금융상품 적용 여부	N	지급자 관할국의 과세목적 상 공제를 발생시키는 대 출하의 지급이 없음	- 혼성금융상품규정은 지급과 관련해 받 생한 D/NI 결과만 적용하는데, 이 공 제는 지급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음 - 당사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권리가 발생 되는 것이 아닌 과세목적만을 위해 조정 되는 인정이라는 지급이 아님
1.15	혼성금융 상품규정	의무환증권으 로 지급된 주식 프리미엄의 가치 차이	무이자 전환증권에서 발생한 주식프 리미엄의 평가 가치 차이로 인해 불 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프리미엄의 공제가 혼성금 융상품 적용에 포함되는 불일 치를 발생시키 는지 여부	N	주식프리미엄의 평가가치 차이는 혼성불일치를 발생 시키지 않음	세무상 차이가 단지 평가차이에 따른 경 우, 이는 관할국 사이의 지급의 특성 차 이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되지 않음(과 세목적상 다른 가치의 측정이라는 불일 치는 혼성금융상품규정의 대상이 아님)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16	혼성금융 상품규정	전환사채의 발행 시 할인에 따른 가치평가 차이	투자자 옵션으로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전환사채에서 채권부분과 주식 옵션의 가치평가가 투자자와 발행자가 다르게 구분함	발행자의 이자 비용 손금산입 이 혼성불일치 를 발생시키는 지 여부	Y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채권의 요소 평가차이(부채와 자본의 구 분에 있어 평가차이도 포함)로 인한 이 자비용 손금산입은 혼성불일치 대상임
1.17	혼성금융 상품규정	환율차이 측정에 서의 미불일치	혼성성이 존재하지 않는 차입의 통화 환산으로 인한 차이가 발행하여 불일 치가 발생함	환율 차이가 혼 성불일치를 발 생시키지 여부	N	이자와 원금 자체의 과세 방법은 동일하므로 이는 통화의 가치평가 차이이지 자금 그 자체의 가치 차이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므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 키지 않음	차입자와 투자자 관할국의 세무처리의 차이가 없으며, 자금의 성격 또는 금액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통화의 환산으 로 인한 차이이므로 혼성불일치를 발생 시키지 않음
1.18	혼성금융 상품규정	부채 조건의 변 경 합의를 고려 한 자금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였으나, 이에 대 해 차입자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일시 불로 지급하고 이자율을 인하함	부채 조건 변경 에 따른 자금이 혼성금융상품규 정 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	Y	차입 그 자체하의 자금이 므로 D/N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혼성불일치에 해당하나, 이에 따른 투자 자의 대출채권 가치 하락 조정은 대출 그 자체의 지 금이 아니므로 혼성금융상 품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상품하의 지급인지 여부 판단은 금 융상품조건과 자금이 금융상품에 따른 또는 금융상품하의 요구사항을 면제하 기 위한 것인지에 따르므로, 대출조건 변경 합의에 따른 지급액은 금융상품하 의 지급임 - 따라서 D/N이 발생한다면 혼성불일치 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되며, 만약 투자 자 관할국에서 대출만기까지 과세를 이 연한다면 권고사항1.1(c)에 따라 시기 차이의 합리성이 판단되어야 함 - 투자자의 채권소에 따른 비용인수에 대 해 이는 대출 그 자체의 지급이 아닌 대 출하의 의무면제로 자금의 대상이 아님
1.19	혼성금융 상품규정	금융상품 취소대 가에 따른 자금	차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발행 대출을 매수(상환)하였으며, 이는 발행 자의 비용, 투자자의 수익으로 인식됨	차입의 취득이 혼성금융상품규 정의 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	Y	대출의 양도에 따른 자금 은 차입자의 대출하의 의 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 짐	-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취득은 일반적인 로 금융상품에 따른 자금이 아니지만, 이를 통한 발행자의 의무를 전체 · 부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하는지 및 조정 대상의 정도		자므로 금융상품에 것이므로 대상이됨	본 면제하는 것은 지급에 해당됨 -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소득을 면제 또는 특정 납세자위에 따라 차분금액 (추가금액제외)만을 과세하거나 금융상 품 보유에 따른 소득만 과세(자본자산 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혼성불일치가 발생함
1.20	혼성금융 상품규정	지급이 아닌 채 무의무면제	차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이 자·원금상환능력이 없어 투자자가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투 자자에게 공제가능하나 차입자는 소 득으로 보지 않음	부채조정에 따 른 D/N/I 결과 가 혼성금융상 품규정의 적용 범위인지 여부	N	이러한 의무면제는 금융상 품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 므로 해당하지 않음	채무의무 그 자체의 면제는 당사자간 가 치의 이전을 발생시키더라도 지급에 해 당하지 않음
1.21	혼성금융 상품규정	불일치가 아끼되 는 불확실한 이 자지급	채무자 재량으로 만기이전 이자지급 가능하고 채권자 재량으로 기한의 이 익을 포기할 수 있는 동일한 국가내 특수관계법인간 후순위차입거래에 대 하여 법인가 다른 회계정책을 채택함 에 따라 채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을 공제하나, 채권자는 실제 수취시점에 소득으로 인식함	미지급발생이자 가 혼성금융상 품 규정상 혼성 불일치를 발생 시키는지 여부	Y	시기 차이에 대해 납세자 가 합리적인 기간내 해소 를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 이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공제되나 채권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목 적상 불일치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발생이자는 금융상품화의 지급에 해당하 며,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수취인의 소득 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면, 이는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의 적용은 동일 국가내 금 융상품의 세부처리 차이로 인해 불일치 가 발생하는 것임
1.22	혼성금융 상품규정	불일치가 아끼되 지 않는 불확실 한 이자지급	- 특수관계자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여 SOC에 투자하였으며, 대 출에 대한 이자는 고정이자율로 지 급되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시 주 주에 대한 배당제한규정이 존재함 - 양국에서 부채거래로 취급되나, 채 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에 공 제, 채권자는 실제 이자가 수취될 때에만 소득으로 처리함	미지급발생이자 가 혼성금융상 품 규정상 혼성 불일치를 발생 시키는지 여부	N	발생이자가 지급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 으며, 사례의 정황상 지급 조건이 합리적이란 사실 때문에 과세관청은 발생이 자가 혼성불일치를 발생시 킨다고 간주하지 않음	-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지급에 대 한 예상되는 과세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결과와 불일치는 단순히 시기 차이 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함 - 금융상품 조건의 상업적 실적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들의 상업적 목적, 지급 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적 요소 등을 고 려해야 하며 잠재적 이해관계와 계약상 보장요소 등을 고려해야 함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23	혼성금융 상품규정	혼성체에 의한 혼성금융상품 관 련 지급	- 혼성체가 발행한 대출이 혼성체의 모회사에서는 부채로 혼성체가 존재 하는 국가에서는 지분으로 세무상 대우됨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Y	혼성금융상품규정의 조정 대상임	대출은 금융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며 D/N/I를 발생시키므로 혼성금융상품규정 의 적용대상임
1.24	혼성금융 상품규정	CFC 체계상 경 상소득에 포함된 지급	동일 집단내의 모법인과 손법인의 관 할국은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법인의 관할국은 적용하지 않으며, 모법인은 CFC 규정을 적용하 는 경우 자법인과 손법인의 혼성금융 상품 거래가 발생한	모회사 관할국 의 CFC 소득 산입이 지급자 관할국의 혼성 금융상품 규정 적용에 미치는 영향	△	CFC 체도에 따라 귀속된 소득은 이중과세를 발생시 킬 수 있으므로, CFC 제도 하 소득에 포함된 지급을 부인하는 경우, 공제가 규 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해 당 사례에서는 보고서상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제시함)	- 납세자는 혼성금융상품에 따른 지급이 1) 실제 CFC 체도에 따라 소득에 산입 되는 것이 요구되는 지급인지, 2) 주주 관할국의 CFC 체계상 소득으로 인식되 는 금액과 산입시기가 적합하다는 사실 에 대해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어떠한 공제에 의해 소득이 상쇄되거나 감소되 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이 경상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함 - 이중과세방지목적상 CFC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그 이후 혼성불일치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함
1.25	혼성금융 상품규정	금융수익의 범위 를 조정하는 리 스 관련 지급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을 조달 하며 지급거래의 담보를 위해 일부 자산을 양도함 - 채무자는 리스에 따른 임대료(공제 가능한 비용)와 함께 대출로 처리, 채 권자는 금융리스로 처리하며 수취액 을 경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D/N/I가 발생함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	N	- 혼성양도가 아니므로 채 무자 관할국법상 혼성금 융상품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채권자 관할국법상 금융 거래에 해당하므로 혼성 금융상품규정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있으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금 융수익이 채권자 관할국 에서 완전히 과세됨에 따 라 혼성금융상품규정에 따 른 조정을 요구받지 않음	금융상품거래인지의 여부는 국내법상 대 우에 의해 결정됨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26	혼성금융 상품규정	매매자산의 매입 에 대한 고려사 항	공정시장거래에 따른 주식양도거래 (금융상품매매업자(trader)는 주식처 분시 구매가를 비용으로 처리)	지급이 혼성금 용 상품 규정의 D/N에 발생시키 는지 여부	N	자산양도거래가 금융 또는 투자수익으로 계통된 것이 아니므로 혼성금융상품이 아님	-금융상품조건에 따른 주식양도거래가 아니므로 혼성불일치규정 대상이 아님 -자산양도거래는 일반적으로 혼성금융 상품규정 적용대상의 금융 상품에 해당 하지 않으나, 혼성양도이거나 대체지급 의 경우 금융상품에 포함됨
1.27	혼성금융 상품규정	취득가액을 구성 하는 이자	주식양도거래시 대가지급을 이연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주식양도자는 양 도대가로, 주식취득자는 이자비용으 로 보아 공제함	거래가격과 관 련된 양자의 세 무상 결과를 조 정하는데 혼성 금융상품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여 부	Y	자산양도거래는 주식취득 국의 법률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금융비용으로 처리되 어 혼성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식취득자는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함	-양국간 동시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혼성양도가 아니면서 대가지급 이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주식에 대한 이자가 아니며, 단가지급 이연에 따른 이자이므로 대체지급규정 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식취득자는 지급이자를 매각대가에 포함된 것이 아닌 해당국가 법률에 따 라 부채 또는 금융에서 파생된 비용으 로 과세처리하여, 혼성금융상품규정 적 용대상이 됨
1.28	혼성금융 상품규정	투자범인에 의해 지급된 이자	주식양도거래시 대가지급을 이연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주식양도자는 양 도대가로, 주식취득자는 이자비용으 로 보아 공제함. 다만, 주식취득자는 해당거래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자산 을 취득하였기에 과세소득 산출시 양 도가를 비용에 포함함	거래가격과 관 련된 양자의 세 무상 결과를 조 정하는데 혼성 금융상품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여 부	Y	-자산양도거래는 주식취득 국의 법률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금융비용으로 처리 되어 혼성금융상품의 범 위에 포함되므로 주식취 득자는 비용공제를 부인 해야 함 -다만, 주식취득자가 자산 양도 및 처분에 따른 과 세소득을 산출할 때는 이 자비용을 포함한 주식취 득가 전액을 고려해 산정 해야 함	주식취득자가 주식을 취득하며, 대가지 급 이연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혼성금융 상품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 지만, 주식취득자가 영업활동의 일부로 주식을 취득했고, 이를 다시 양도 및 처 분할 경우 과세소득 산출시 취득가에는 이자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즉, 혼성금 용상품 규정이 일반적 영업활동에서 이 득어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까지 부인하지는 않음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29	혼성금융 상품규정	거래실체에 지급된 이자	주식양도거래시 대가지급을 이연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주식양도자는 양도대가로, 주식취득자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공제할. 다만, 주식양도자가 영업활동의 일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소득 산출시 전체 금액을 정상소득으로 봄	거래가격과 관련된 양사의 세무상 결과를 조정하는데 혼성금융상품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Y	- 자산양도거래는 주식취득국의 법률에 따라 공제가 인정된 금융비용으로 처리되어 혼성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식취득자는 비용공제를 부인해야함 - 주식양도자가 과세소득 산출시 이자비용을 취득가에 포함하는 것은 주식취득국의 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자는 주식양도국의 법률상 정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식양도자가 과세소득 산출 시 이자를 포함시키지는 않음 - 주식취득국의 혼성금융상품 규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혼성금융상품 규정에 따른 혼성불일치 여부를 결정할 때 거래상대회사의 실제 세무처리보다 거래상대국의 법에 따른 세무처리를 고려함
1.30	혼성금융 상품규정	유보이인에 대한 구매가격 조정	- 다른 국가에 소재한 100%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또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에 양도함 - 해당 거래에는 이이연계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 주식취득국에서는 공제가능비용으로, 주식양도국은 자산처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세율을 적용받음	조정금액의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Y	- 지급이 구조화거래에 따라 발생했다면 주식취득국은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해 비용공제를 부인해야 함 - 주식양도국에 일반적으로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주식양도자가 금융상품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임), 대체지급규정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산양도계약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는 국내법(local law)에 따라 결정됨 - 사례에서 주식양도자가 원전자회사의 배당을 정상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지급은 대체지급으로 간주되어 권고사항1.2(c)에 따른 대체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에 주식취득국이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주식양도국에서 대체지급규정 적용이 가능한
1.31	혼성금융 상품규정	주식환매조건부 거래로 구조화된 차입	- 차입의 담보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식매각 후 원금과 이의 금융비용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주식환매조건부매각이 이루어짐 - 양도자 관할국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혼성금융상품규정의 적용범위 여부 및 조정금액	Y	- 혼성양도이며, 양도자는 이전주식의 배당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양수자는 소득을 면제하므로 D/N가 발생한 여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 권고사항2.1은 금융상품 발행자의 공제에 대한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양도자는 차입거래로 간주되므로 금융상품으로 양수자는 혼성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는 배당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면제되므로 혼성불일치를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따라 주식을 계속 보유로, 양수자 관할국에서는 법적 형식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식됨 - 배당에 대해 양도자 관할국에서는 귀속법인세 세액공제(gross-up)가 이루어지는데 배당은 양수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되며, 양수자 관할국에서는 배당에 대해 면제함			용범위에 포함됨 -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임	발생시점(지급)이 기초자산에 대한 별도의 지급으로 보더라도 혼성양도를 구성함) - 양도자 관할국에서 배당에 대해 귀속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혼성양도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정상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약정이 양수자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세무원가를 낮추도록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련없이 범위에 포함됨
1.32	혼성금융상품규정 주식대여약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차입 후 상환약정을 통해 차입자는 보유기간 동안 주식의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게 되며, 대여자는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며 상환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차입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나 이의 이자는 대여자에게서 차입자로 이전됨 - 대여기간 중 배당이 지급되면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이를 배당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함 - 차입자 관할국은 대여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취한 배당은 면제, 지급한 배당보상금은 공제가능 비용으로 보며, 대여자 관할국은 주식대여약정을 부인하고 계속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보상금(배당)은 면제함	혼성금융상품규정의 적용범위 여부 및 조정금액	Y	- 주식대여약정은 혼성양도이며, 차입자는 배당보상금을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대여자는 배당소득으로 면제하여 D/N이 발생하므로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됨 - 더구나 이 사례에서 배당보상금은 대체지급에 해당됨 - 대여자와 차입자는 특수관계자이므로 혼성금융상품규정에 해당함	- 권고사항 2.1은 금융상품 발행자의 공제에 대한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차입자는 주식차입이라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대여자는 혼성양도에 해당하며, 차입자는 배당보상금으로 인해 비용으로 공제되는 데 반해 대여자는 배당으로 면제되므로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 차입자 관할국에서 배당에 대해 면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혼성양도에서 차입한 금융상품으로 정상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조정은 납세자의 납세지(또는 금융상품 보유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입자의 매매업자로서 과세지위), 이 사례는 금융상품조건, 납세지위, 자산의 보유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지급에도 해당하므로 차입자의 공제가능한 비용의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33	혼성금융 상품규정	차입자의 배당에 과세되는 경우에 서 주식대여약정	주식대여약정에서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배당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차입자의 배당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	혼성금융상품규 정의 적용범위 여부 및 조정금 액	Y	- 주식대여약정은 혼성양도 이며 혼성양도에서 조탈 된 자금으로 투자한 소득 에 대한 과세여부는 고려 하지 않으며, D/NI가 발 생하므로 혼성금융상품규 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함 - 그러나 차입자가 매배입 자이며 이러한 사업의 일 부로 주식차입을 하여 관 련소득에 포괄적인 과세 가 이루어진다면 조정될 금액은 없으며, 배당보상 금이 대체지급이라고 하 더라도 차입자의 배당에 과세되며 대여자는 관할 국에서 배당을 경상소득 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라면 마찬가지로 조정될 금액이 없음	근거와 관계없이 불일치를 발생시킴
1.34	혼성금융 상품규정	배당보상금이 거 래손실을 발생시 키는 주식대출거 래	- 금융상품 매매업자의 거래로서 매배 관련 순손익이 소득에 반영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1.32과 동일함 - 공매도 거래(주식가격 하락 예상)를 위해 주식차입(주식변환의무존재), 해당기간 동안 배당보상금을 지급해 야 함 - 차입한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처 분함에 따라 만기에 주식을 재취득	사채의 주식대 출거래가 혼성 금융상품규정의 범위에 포함되 는지 여부	Y	사채의 주식대출거래는 혼 성양도이므로 혼성금융상 품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조 정액은 없음	- 1단계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판단 /2단계 조정금액판단 - 해당 공제는 금융상품의 조건에서 기인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특정과세 처분 및 매매대상인 기초자산의 성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채에서 의 거래손실을 발생시키는 배당보상금 은 금융상품에 의한 공제가능한 자금으 로 간주되지 않음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하여 반환 후 거래 종료되었으며 해당 거래로 인하여 금융상품매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함 - 주식대여법인은 본래 배당수익이 면제되므로 수취한 배당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음				- 만약 차입관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또는 제세혜택을 부여한다면 배당보상금은 대체지급에 해당하므로 혼성금융상품규정이 적용됨 - 실제 결과보다 거래와 관련지급의 성격에 기반한 예상과세 결과를 더 고려하므로 실제로 배당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규정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5	혼성금융 상품규정	거래당사자가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지 않는 주식대출거래	- 거래의 법적형식(판매 및 재배포)을 우선하여 주식대출을 과세목적상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1.34와 동일 -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차분하고 주식대출 기간 동안 배당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배당보상금을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간주하는 대신 주식차입자 및 대출자 모두 주식취득비용의 조정으로 처리함 - 주식차입자 관할국법상 주식거래는 실은 공제가능하나, 주식대여자 관할국에서는 주식거래이익에 대해 비과세수익으로 처리	거래의 불일치 해소 위한 혼성금융 상품 규정 적용 여부 △		양도자 관할국에서 기초자산의 배당을 정상소득에 포함시키거나, 양수자 관할국에서 기초자산의 배당을 면제한다면, 대체지급에 해당함 - 양 관할국에서 주식대여를 진성매각으로 간주하므로, 지급은 부채·자본·파생상품이 아니며 혼성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양도자가 배당을 비과세이익으로 변환시켰거나, 양수자가 배당에 대해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혼성금융상품 규정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지급규정이 적용됨	
1.36	혼성금융 상품규정	미지급이자 있는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급한 프리미엄에 대한 공제	-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자지급기간 도중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급받음 - 새롭게 채권을 취득한 회사는 국내 법상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정상소득으로 포함하지만 프리미엄으로	거래의 불일치 해소 위한 혼성금융 상품 규정 적용 여부 △		- 사례의 채권프리미엄은 권고사항 1.2(c)에 규정된 대체지급에 해당함 - 만약 양도계약이 구조화 거래의 일부였다면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해야 함 -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혼성불일치를 일으키지 않으나 채권취득을 위해 미지급된 이자에 대한 프리미엄지급이 불일치를 야기함 - 양도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채권 매각대기에는 권고사항 1.2(c)에 해당하는 금융 또는 자본주의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지급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원래 채권보유자는 프리미엄으로 받은 수익을 경상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 - 채권을 취득하고 양도받은 각각의 회사가 채권발행자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음				이 포함되어 프리미엄은 대체지급이 된 - 사례는 권고사항 10에 따른 구조회계 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약 사실과 상황상 재무상 불일치를 발생시키도록 거래가 설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함
1.37	혼성금융 상품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거래에 대한 배당보상금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되려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 로 인해 배당기준일 이후 인도되었을 경우 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배당보상금에 혼성금융상품규 정 적용 여부	N	혼성양도이나 거래당사자 의 재무상 상황의 차이로 D/N이 발생했으므로 배당 보상금은 혼성금융상품규 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인도함에 따라 배당에 대해 양사(양국)가 각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를 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은 혼성양 도이나 거래당사자간 재무상황 차이로 발생한 D/N은 혼성금융상품 규정에 포 합되지 않음
2.1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	배당귀속세액공 제에 권고사항 2.1의 적용	회사가 다른 국가의 고정사업장을 통 해 회사 관할국의 제3자인 개인투자 자에게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하여, 고 정사업장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개인 투자자는 배당으로 귀속세액공제를 받음 회사의 관할국에서는 다른 국가의 고 정사업장의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혼성금융상품규 정의 적용 여부 와 조정금액	Y	권고사항 2.1이 먼저 적용 되며, 2.1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투자자와 특수관계인 이거나 구조화된 약정이란 면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 용함	관련 지급이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되고, 투자자 관할국에서 귀속법인세 세액공제 가 이루어지므로 권고사항 2.1에 따라 세액공제가 부인되어야 함 권고사항 2.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특 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회사 관할국에서 세금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자에게 만 판매되었다면 구조화약정으로 보아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2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	채권대여약정에 권고사항 2.2의 적용	채권대여약장에서 대여자 관할국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입자 관할국은 법적 형식에 따라 모두 채권을 인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자가 원천징 수된 후의 수취한 순이익을 대여자에 게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양 관할	권고사항 2.2의 적용여부 및 조 정금액	Y	D/N을 발생시키지 않는 혼성양도이므로, 각 관할국 은 약정에 따른 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여한 세액공제를 부인함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채권을 인식하는 혼성양도로 권고사항 2.2에 따라 약정에 대한 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여 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례는 차입자가 모든 이익을 대여자에 게 이전하므로 차입자는 세액공제 가산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국 모두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예에 해당하는 법인세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함
2.3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	혼성금융상품 규정과 권고사항 2.1의 조화	혼성금융상품 발행자 관할국에서 발행 이후 혼성금융상품규정을 도입하고, 그 다음연도에 투자자 관할국에서 권고사항 2.1을 도입함	각 기간별 조정 금액	Y	우선규정을 적용하는 관할국은 발행지 관할국에서 권고사항 2.1을 도입하면 우선규정 적용을 중지하여야 함	투자자 관할국에서 권고사항 2.1을 적용하기 이전까지는 발행자 관할국에서 혼성금융상품 우선규정을 적용하며, 이후는 우선규정 적용을 중단하고 투자자 관할국의 권고사항 2.1을 적용함
3.1	미인식 혼성지급 규정	혼성대출과 미인식 실체를 이용한 부인된 지급 구조	- 모범인과 혼성체인 지주회사간 대출, 지주회사(혼성체)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혼성대출 실행 - 모범인과 혼성체인 이자는 혼성체(지급자) 관할국에서 비용공제, 모범인(수취자) 관할국에서 배당과세면제	혼성불일치규정 적용여부	N	- 지급자 관할국법상 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미인식혼성지급규정을 적용함	- 지급자 관할국은 이중포함소득 식별과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요청을 막기 위해 지급자에 구분경리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취인 관할국은 수취인에게 귀속되는 내부그룹비용과 지급자 관할국법에 따라 신고된 지급자의 과세소득정보를 얻을 수 있음
3.2	미인식 혼성지급 규정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한 미인식 혼성지급	- 연결납세제도 운영 중이며 종속회사는 국외고정사업장을 설립함 - 고정사업장은 100% 지배하는 회사를 보유중이며 세무목적상 통합되어 인식됨 - 모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지급차입, 해당 차입은 법률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관할국에서 이자비용이 공제되거나 모회사에 의해서는 부인됨	혼성불일치규정 적용 여부	△	- 금융상품의 조건 때문에 세부결과상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혼성금융상품규정을 적용해야 함(간접적으로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이 될 수 있음) - 혼성금융상품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이 아니라면 미인식혼성지급규정을 적용해야 함 - 우선규정의 적용으로 고정사업장 관할국에서 이중으로 포함된 소득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종속회	- 연결납세제도로 내부거래 관련비용이 인식되지 않는 사실은 혼성금융상품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규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불일치의 인식은 우선적으로 실제지분이 아닌 법자원에서 금융상품의 성격, 금액, 시기를 검토해야 함 - 고정사업장 관할국은 모범인 관할국에 관련제정에 대해 구분경리를 요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고정사업장의 결손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특별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모범인 관할국은 모범인에 귀속되는 내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사의 소득에서 차감한 이 자비용을 부인해야 함 - 후속규정의 적용으로 이 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모회사는 지급 이자를 소득에 포함시켜 야 함	부그룸비용과 고정사업장 관할국의 법 에 따라 신고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법 인 관할에서 인식되지 않으나 고정사업 자 관할국법상 인식되는 계정항목의 취 소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4.1	역혼성규정	과세제의 실제로 서 역혼성제의 이용	장상가액(시장이자율)에 따라 역혼성 체에 지급된 이자가 투자국과 설립국 가 모두에서 이자수익으로 과세되지 않음	권고사항 4 적용 여부	N	No(D/NI)는 발생시키나 투 자자(국)에 직접 지급되었 을 경우에도 경상소득(과 제가능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혼성규정 을 적용하지 않음	구조화 거래의 조건(1. 혼성불일치로 인 해 이득을 취함 or 2. 불일치를 발생시 킨다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받아 인지하고 있을 경우)
4.2	역혼성규정	소득에서 일부 제 외된 지급에 대한 권고사항 4 적용	역혼성체를 통한 자금대출방식으로 지출한 공제가능 이자비용 중 일부를 과세되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수취	권고사항 4 적용 여부	Y	Yes	- 역혼성체 규정에 따른 조정은 비례적이 어야(이중과세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함) 하므로, 실제 과제가 제외된 부분 에 대해서만 공제를 부인해야 함 - 자본율(사채는 50%) 등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판 단함. 구조화된 거래를 설계한 자에 의 해 100% 지배되는 회사는 구조화 거래 의 당사자로 간주되어 권고사항 4 적용 범위에 포함됨
4.3	역혼성규정	권고사항 4와 CFC 체계하에서 포함되는 지급	역혼성체가 (다른 동일집단기업으로 부터)누취하는 서비스소득이 최종모 회사의 CFC rule에 따라 과세	권고사항 4 적용 여부	N	No	- 서비스 소득이 CFC 규정에 따라 최종 모회사의 소득으로(세액공제 등의 혜택 없이) 과세되므로 D/NI가 아니어서 권 고사항 4 적용이 배제됨 - CFC 규정을 통해 세액공제 등을 부여 하지 않고 서비스 소득 전체가 과세되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는지 확인 필요 - 지급자가 이러한 모회사의 과세를 입증
4.4	역혼상규정	권고사항 4와 권고사항 6의 상호 작용	역혼상체에 지급되어 과세되지 않는 혼상체의 비용(투자국과 설립국에서 이중공제)	권고사항 4 또는 권고사항 6 적용여부	Y	Yes	- 권고사항 4가 적용되면 권고사항 6의 이중공제는 발생하지 않음 - 역혼상을 이용한 혼성금융상품규정의 회피를 막기위해 역혼상규정이 적용됨
6.1	공제가능 혼성지급 규정	기간 귀속과 가치 평가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 각국의 소득 인식시기의 차이 및 감가상각률의 차이에 따라 이중포함소득금액과 공제가능비용의 차이 발생 - 혼성지급자의 지급이 각국에서 중복공제를 발생시켜 DD가 발생함	공제가능 혼성지급규정 적용에 따른 조정 방법	△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범위(이중포함소득을 초과)에 적용	- 과세관청은 중복공제와 이중포함소득을 식별하기 위해 양 관할국의 소득에 대해 구분경리를 요구할 수 있음 - 비용은 해당 비용 관련된 이중포함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손실이월을 막기 위해 지배력 변경시 손실 연속성규정(loss-continuityrule)을 적용할 수 있음
6.2	공제가능 혼성지급 규정	DD와 이중포함 소득과의 상계 여부	-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고, 고정사업장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함 - 타국에 설립된 고정사업장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이 모법인 관할국에서도 공제되어 DD가 발생함	고정사업장의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가능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고정사업장 관할국에서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 상계를 금지하거나,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어느 국가에서도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적용에서 배제됨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공제(미사용 비용)는 다른 과세기간의 이중포함소득과 상계될 수 있음. 과다한 공제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초과 공제액이 어떠한 관할국의 과세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할 수 있다면 이월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6.3	공제가능 혼성지급 규정	주식선택권의 부여로부터 발생한 중복 공제	혼상체의 주식선택권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공제금액 차이 발생	공제가능 혼성지급규정 적용에 따른 조정 방법	△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은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범위(이중포함소득을 초과)에 적용	- 비용의 계정명보다 해당 지급이 무슨 비용을 의미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함 - 후속규정 적용시 비용공제한도를 결정하는 이중포함소득은 다른 국가에서 이중과세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음 - 이중과세조정과 이중포함소득 판단의 문제에서 양국간의 과세관청은 협력비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구조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함
6.4	공제가능 혼성지급 규정	CFC제도에 따른 이중포함소득 산 출	DD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CFC Rule 에 따라 귀속된 소득을 이중포함소득 으로 봄	공제가능 혼성지급 적용 규정에 따른 방법	△	CFC제도에 따라 포함되는 소득에 한해 이차비용 공 제를 허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수입배당금조 정) 등의 이중과세조정은 이중포함소득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중포함소득 으로 간주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음 - CFC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는 해당 국 가의 법률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면 납세자가 이중포함소득 입증 에 보다 편리함
6.5	공제가능 혼성지급 규정	파트너십 대출로 발생한 DD	혼성지급자인 파트너십이 지급한 비 용의 이중공제에 따라 불일치가 발생 함	공제가능 혼성지급 적용 규정에 따른 방법	Y	- 동일지배 집단에 포함되거나 구조화 거 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후속규정이 적 용됨 -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의 당사자인지 여 부는 혼성불일치를 인식하고 있음이 합 리적으로 예상되거나 불일치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임 - 후속규정 적용시 불일치와 관련된 이차 비용충약을 부인함 - 실행방안으로 혼성체에서 발생한 손실 을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 상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미사용손실 을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과 상계되 도록 거래를 조작하는 것을 특별규정을 통해 방지	- 이중거주국에서는 이중공제가 이루어 진 이차지급에 대해 조정을 실행함 - 이중거주국 모두 조정하게 되면 초과과
7.1	이중거주자 지급규정	이중거주자를 이 용한 이중공제	이중거주자인 기업이 다른 소득없이 여혼성체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이중	이중거주자 지 급규정 적용여 부	Y	Yes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거주국에서 이중공제가 이루어짐				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자는 투자자국 모회사에 조건이 동일한 자금대여를 수행하거나 투자한 역혼상체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중거주자의 소득이 (-)이면 미공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중거주자규정에 따라 이중거주자 지위가 부인된다면, 거주국가는 향후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기존 다른거주국에서 이월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 각국은 이중포함소득이 아닌 소득을 통해 미공제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거주자 기업에 대해 연결납세 등의 그룹제도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 또는 특정규정을 신설해야 함
8.1	이전불일치 규정	구조화된 이전 불일치 규정	동일지배그룹 내의 직접적인 혼성금융상품거래 당사자는 아니나 이 상품들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반적인 차입으로 자금 조달함	혼성 금융상품 당사자가 아닌 이를 통한 간접적인 자금조달자의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여부 및 적용금액	Y	Yes	- 동일지배그룹 내에서 직접적인 혼성금융상품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반적인 차입으로 조달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체 동일구조화 약정의 일부분으로 보아 일반적인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액을 부인해야 함 - 이를 위해 납세자는 추적접근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간단계의 회사들의 구조화거래와 관련된 이자지급을 추적하여 어느수준까지 이자를 부인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8.2	이전불일치 규정	구조화된 이전 불일치규정 및	동일지배그룹내의 직접적인 혼성금융상품거래 당사자는 아니나 이 상품	혼성 금융상품 당사자가 아닌	Y	Yes	- 동일지배그룹내의 관련된 회사는 이자지급을 추적접근방법으로 부인하여야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직접적인 이전 불일치 규정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반적인 차입으 로 자금 조달하는 회사가 존재함과 동시에,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이 자지급자는 기존에 제3자와 자금대출 이 존재하고 있었음	이를 통한 간접 적인 자금조달 자의 이전불일 치규정 적용여 부 및 적용금액			하며, 이 경우 상위단계에서 이미 혼성 불일치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전불일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혼성금융상품 거래시 기존재하는 대출 약정은 사전에 관련되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구조화된 이전불일치가 적용 되지 않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혼성불 일치공제가 존재하는 부분만큼은 직접 적인 이전불일치규정이 적용됨
8.3	이전불일치 규정	직접 이전불일치 규정의 적용	- 동일지배그룹 관계시간 금융거래하 에서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중 손자회사(각각 다른 과세관할) 순으 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음 - 모회사시간 혼성금융상품거래로 혼 성공제가 발생하고 자회사 손자회사 간 공제가 가능한 이자비용이 발생하 는 데 후자가 전자보다 금액적으로 클 - 해당 혼성금융상품거래는 전반적인 구조화거래의 일부로 관여된 것이 아님	손자회사의 이 자비용이 이전 불일치 규정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Y	손자회사 관할국은 손자회 사가 자회사에 지급한 이 자비용의 혼성지급과 상계 된 부분만큼 부인해야 함	- 혼성금융상품은 전반적인 구조화 거래 의 일부로 관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므 로, 구조화된 이전불일치규정은 적용되 지 않음 - 직접 이전불일치규정은 손자회사 관할 국의 이자비용공제를 부인하도록 적용 되어야 하며, 부인금액의 한도는 수취 한 자회사가 혼성공제를 통해 지급금과 소득을 상계한 정도로 한정함
8.4	이전불일치 규정	직접 이전불일치 규정하 배분	- 사례 8.3과 동일한 상황하 손자회사 는 보고서상 권고사항을 적용응임에 따라 이전불일치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 두 개의 손자회사는 각각 자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함	손자회사의 이 자비용이 이전 불일치 규정의 조정 대상 인지 여부	Y	손자회사 관할국은 손자회 사가 자회사에 지급한 이 자비용이 혼성지급과 상계 된 부분만큼 부인해야 함	직접 이전불일치규정은 손자회사의 이자 비용공제를 부인하도록 적용되어야 하 며, 부인금액의 한도는 혼성공제를 통해 소득과 상계한 지급금을 한도로함
8.5	이전불일치 규정	간접 이전불일치 규정의 적용	동일그룹내(국가는 다름) 상위 단계 에서 혼성공제가 발생하였으며(구조 화된 거래의 일부는 아님), 혼성금융	관계회사(손자 회사의 이자비 용이 이전불일	Y	관계회사(손자회사)가 관 계회사(자회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이전불일치 금액)	- 구조화된 거래 또는 직접 이전불일치규 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간접이전불일 치규정을 적용함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상품 당사자의 직접 하위 관계회사(자회사)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지만 그 자회사의 하위 관계회사(손자회사)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공제가능 이자비용을 지급함	치 규정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과 혼성공제 비율만큼 부인	- 혼성금융상품 발행자의 초과혼성공제는 다른 관계회사의 총당회 과세소득과 상계된 것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라 관계회사(자회사)는 간접혼성공제에 해당함 - 관계회사(자회사)의 간접혼성공제는 직접 이진불일치규정에 따라 관계회사(손자회사)의 이진불일치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함
8.6	이진불일치 규정	이진불일치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회사에 지급한 금액	- 동일그룹내(국가는 다름) 상위단계에서 혼성공제가 발생하였으나(구조화된 거래의 일부는 아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반면 혼성금융상품 당사자의 관계회사(자회사)와 바로 하위단계의 두 관계회사(손자회사)는 권고사항을 이행중임 - 관계회사(자회사)가 혼성금융상품 당사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 이자비용은 혼성공제예보다 작은 반면 또 다른 관계회사(손자회사)가 자회사에 지급한 공제가능 이자비용은 혼성공제예보다 큼	혼성금융상품 당사자의 관계회사(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이진불일치 금액이 이전 불일치 규정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Y	자회사의 공제가능 이자비용을 전액부인하고, 손자회사는 조정하지 않음	혼성금융상품 발행자의 관계회사(자회사)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경우 또다른 관계회사(손자회사)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더라도 자회사만 이진불일치규정을 적용함 (지급금 수령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을 경우 이 지급금은 이진불일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8.7	이진불일치 규정	직접 이진불일치 규정은 간접 이진불일치 규정보다 우선적용	- 동일그룹내(국가는 다름) 상위단계에서 혼성공제가 발생하며(구조화된 거래의 일부는 아님), 혼성금융상품 발행자의 관계회사(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에서 권고사항을 이행중인데, 공제가능 이자비용과 혼성공제의 금액이 동일함 - 또한 발행사의 다른 관계회사(자회사)의 자회사(발생사업장에서 손자	이진불일치 규정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조정 금액	Y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회사(자회사)의 공제가능 이자비용만 부인	- 혼성금융상품 당사자의 관계회사(자회사)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어 직접 이진불일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간접 이진불일치규정보다 먼저 적용해야 함 - 직접이진불일치규정 적용으로 혼성공제가 모두 상계되어 초과혼성공제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이진불일치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회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관계회사들(손자회사)도 공제 가능 이자비용과 혼성공제금액이 동일함				
8.8	이전불일치 규정	조달된 과세지급을 초과하는 혼성공제	혼성금융상품 당사자가 공제한 혼성공제금액이, 구조화되지 않은 직접적 이전불일치 대상 자회사와 간접적 이전불일치 대상의 손자회사의 지급액보다 큼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금액	Y	이전불일치 지급액을 각각 모두 부인함	직접이전불일치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금액에 대해 간접 이전불일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을 부인함
8.9	이전불일치 규정	조달된 과세지급을 초과하지 않는 혼성공제	혼성금융상품 당사자가 공제한 혼성공제금액이, 간접 이전불일치 대상의 손자회사의 이전불일치 지급액보다 작음(직접 및 구조화 이전불일치 지급은 해당하지 않음)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금액	Y	간접 이전불일치 적용이 되는 손자회사들은 자회사(손자회사의 모회사)의 배분된 혼성공제금액에 대해 각각 비율에 따라 이자지급 공제를 부인함	직접 이전불일치나 구조화 이전불일치 규정 대상이 없으므로, 간접 이전불일치 지급과 상계된 혼성공제에 대해 간접 이전불일치지급 비율로 안분하여 부인함
8.10	이전불일치 규정	연결납세제도하의 손실이전에 대한 이전불일치 규정의 적용	금융약정이 구조화약정이 아닌 공동 지배그룹 내에서 혼성공제의 회사가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하여 손실을 다룬 연결납세회사에 이전하는데 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관할국에 존재함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금액	Y	혼성공제를 인식하는 회사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결납세를 통해 혼성공제와 상계되는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해 이전불일치 규정을 적용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과세지급과 상계되지 않고, 연결납세 등을 통해 혼성공제에 따른 손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8.11	이전불일치 규정	이전불일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인 이중포함소득의 지급	혼성체는 이중포함소득과 혼성공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연결세제 적용에 따라 손실 이전 가능	이전불일치 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금액	△	- 이전불일치규정의 조정대상인 경우 공제가 부인되어야 하나, 혼성체에 지급하여 이중으로 포함되는 소득은 혼성공제를 통해 상계되지 않으므로 이전불일치규정에 따른 조	- 미인식혼성지급규정하 공제가 이중포함소득에서 공제(상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성체에 지급하는 이자(이중포함소득)는 이전불일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해당 공제가 이중포함소득을 초과하는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정이 필요없음 - 연결납계를 통해 혼성공제와 상계되는 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해 이진불일치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를 부인함	경우 이에 한하여 이진불일치규정에 따라 부인함 - 만약 연결세제를 적용하여 이진된 결손액이 초과혼성공제 금액과 상계되어(과세소득감소) 이진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경우 공제를 부인함
8.12	이진불일치 규정	이진불일치 규정과 손실의 이월	혼성체는 이종포함소득과 혼성공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연결세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손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함	이진불일치규정 적용 여부 및 조정금액	N	- 미인식된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혼성공제는 차기의 이종포함소득과 상계되어 혼성공제의 효과 가 해소되므로, 차기에도 이진불일치를 발생시키지 않음 - 초과혼성공제는 연결납계 제도와 이전되거나 지배 그룹내 다른 구성원으로 부터 수령한 과세대상소득과 상계되지 않았으므로 간접이진불일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차기로 이월된 손실이 차기연도 이종포함소득과 상계되는 경우 혼성공제효과가 해소됨에 따라 이진불일치규정 조정은 없음 - 재무상 결과 이진효과를 의도한 전반적인 제도, 계획, 합의에 의해 거래가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진불일치거래로 볼 수 없음 - 직접이진불일치규정하 해소되지 않은 초과혼성공제금액은 지배그룹내 다른 구성원을 위한 간접혼성공제 발생 여부 판단시 고려되어야 함
8.13	이진불일치 규정	공제가능 혼성지급, 역혼성, 이전 혼성불일치 규정	- 동일그룹에서 모회사는 두 개의 자회사를 갖고있으며, 하나의 자회사는 혼성체이며, 역혼성체인 손자회사와 연결됨(자회사는 은행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있으며, 이는 역혼성체가 수령한 이자수입과 상계하며, 자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은 모회사에서도 공제됨) - 반면,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 다	권고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급한 이진자비용이 이전 불일치 규정의 조정대상인지 여부와 조정 금액	Y	자회사와 손자회사 각각 직접 이전 불일치 규정에 따라 배분점근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만큼 이자비용을 부인	-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자회사는 모회사와 손자회사가 역혼성체인 손자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이진불일치규정 대상이 됨 - 배분점근법은 혼성공제발생액(사태에서는 DDD가 발생한 자회사인 혼성체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수령한 이자비용(이진불일치 지급금)으로 나는 비율에 권고사항을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본국에 소재한 손자회사는 모두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모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하며 손자회사는 역혼상체인 또다른 손자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함(구조화된 이전불일치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적용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이자비용(지급금)을 각각 곱하여 부인액을 계산함
8.14	이전불일치 규정	공제가능 혼성지급, 연결납세 그룹, 이전 혼성불일치 규정	- 동일그룹에서 모회사는 두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자회사는 혼성체이며 손자회사가 존재함 (자회사는 은행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있으며, 손자회사에 손실을 이전하고 손자회사는 이자수익과 상계하며, 자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은 모회사에서도 공제됨) - 반면,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 다른 국내 소재한 손자회사는 모두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모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하며 손자회사는 또다른 손자회사에 이자비용을 지급함 -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자회사의 이자비용은 혼성공제예보다 작으며, 손자회사의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은 혼성공제예보다 큼(구조화된 이전불일치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권고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이 이전 불일치 규정의 조정대상인지 여부와 조정 금액	Y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자회사는 직접이전불일치규정을 적용하며, 손자회사는 초과혼성공제에 대해 간접이전불일치규정을 적용함	- 권고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이자비용이 동일혼성공제와 상계되거나 이는 이중공제구조이므로, 손자회사의 간접이전불일치규정 적용시 자회사의 직접이전불일치규정 적용 결과 반영되어야 함 - 사례와 같이 혼성공제 발생 당사자(자회사)가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초과 혼성공제 전액은 손자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처리(손자회사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또다른 손자회사로부터 이자비용 (이전불일치 지급금)을 직접 수령하기 때문임) - 발생한 간접혼성공제는 직접이전불일치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공제비용만큼 이전불일치금액과 곱하여 상계함
8.15	이전불일치 규정	이중공제와 이전 불일치규정의 상호작용	- 그룹내 혼성체의 제3자이자비용을 모회사 및 설립지 다른 연결납세회사가 비용(손실이전)으로 인식하는	충당된 과세지급을 행하는 회사의 이전불일	Y	간접불일치 규정이 적용되어 있어 혼성공제금액에 따라 각 비율로 안분하여 이	혼성체의 이중공제에 대해 이와 상계한 충당된 과세지급 비율로 안분한 후, 다시 충당된 과세지급으로 안분하여 산정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데, 모회사 및 다른 연결납세회사에 충당된 과세지급이 존재함 - 권고사항은 충당된 과세지급을 행하 는 회사들의 관할국에서만 적용됨	치규정의 적용 여부 및 조정금 액		자치금을 부인함	된 금액을 부인함
8.16	이전불일치 규정	이전불일치규정 하의 혼성공제 이월	- 혼성금융상품의 지급자는 혼성공제 에 따른 손실을 이월하면서, 이월된 기간에 자금을 종속회사에 대출하여 수취한 이자소득과 상계함 - 권고사항은 충당된 과세지급을 행한 종속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됨	충당된 과세지 급을 행하는 회 사의 이전불일 치규정의 적용 여부 및 조정금 액	Y	이월된 혼성공제에 따른 손실이 충당된 과세지급과 상계되면 이전불일치 규정 이 적용됨	직접 이전불일치 규정에 따라 혼성공제 와 상계된 충당된 과세지급이 부인되는 데, 여기에는 이월된 혼성공제에 따른 손실도 대상에 포함됨
9.1	제정원칙	우선·후속규정 의협조	관할국 회계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혼 성불일치 규정의 적용 기간에 차이가 발생함(전환기간)	혼성불일치 규 정(우선규정, 후 속규정) 적용 방법	△	수령자 관할국이 혼성불일 치 규정을 먼저 도입하여 후속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기간 중 지급자 관할에서 우선규정 적용하는 경우 수령자 관할국에서는 후속 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하며 전환기간에 앞서 적 용된 후속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회계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기간중 규 정을 도입하는 경우 복잡성, 이중과세 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세법을 혼란시키지 않고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국은 규정 적용시 상호협조해야 함 - 전환기간은 지급자와 수령자의 회계기 간 차이를 의미하며, 불일치 해소의 완 전성을 위해 우선규정은 전진적용, 후 속규정은 전환기간을 포함하여 소급 적 용해야 함
9.2	제정원칙	이자비용제한 대 상 지급액의 공 제	후손위체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이 존재하며 차입자 관할국에서는 과소 자본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후손위 차 입금 관련 이자비용은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임	후손위체 이자 에 대한 혼성금 용상품 규정 적 용 방법	△	- 방범적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과소자본세제에 의해 이자비용의 공제가 제한됨 - 지급자의 후손위체이자지 급은 전액 부인되어야 하 며 미적용시 수취자는 진 액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함	- 혼성금융상품규정은 금융상품에 대한 실제지급이 거래당사자간 어떻게 간주 되는지보다 거래의 조건과 예상되는 세 무상 대우를 더 중시함 - 이중과세방지목적상 이자비용제한규정 과 혼성금융상품규정은 상호협력되어 야 함 - 우선규정: 과소자본세제의 작용이 혼성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금융상품 적용에 따른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됨으로 이중과세방지문항 상 혼성불일치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후속규정: 혼성금융상품규정에 따른 조정에(후순위채의 이자)이 이자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급자 관할국의 후속규정 적용을 제한해서는 안됨
10.1	구조화 거래	가격이 계약조건에 반영된 불일치	- 한 국가에서는 자본, 다른 국가에서는 부채로 분류되어 D/N/I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으로, 이의 이자율이 수취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해 결정됨	권고사항 1과 10이 적용되는 구조화된 거래 인지 여부	Y	조세혜택이 혼성금융상품의 가격(이자비용)에 반영되었으므로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된 거래임	혼성불일치의 영향이 상품의 가격조건(이자율)에 반영되었을 경우 권고사항 10.1에 따라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로 볼 수 있음(이자수취국의 세율이 반영된 이자계산공식이 거래조건에 명시되는 등의 경우)
10.2	구조화 거래	특수관계자가 아닌 중개기관을 통해 설계된 배 투매 대출	- 특수관계자와의 후순위채거래에 따른 혼성불일치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비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배 투매 - 비특수관계법인이 받는 이자수익은 배당으로 비과세소득이며, 지급자는 비용으로 처리(D/N/I) - 혼성금융상품에 따른 세금효과는 비특수관계법인과 모회사에 귀속됨 - 구조화된 거래에 따른 세무상 이익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없이 거래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권고사항 1과 10이 적용되는 구조화된 거래 인지 여부	Y	권고사항 10.1과 10.2가 적용되는 구조화된 거래임	다음과 같은 경우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로 볼 수 있음 - 불일치를 통한 세무상 이익이 거래가격(이자율)에 반영되었을 경우(거래조건을 통해 불일치가 거래가격에 반영되었는지를 판단) - 사실관계와 상황이 구조화된 거래를 나타낼 경우(사례에서는 비특수관계 중개기관을 통해 구조화거래를 구성) - 혼성불일치 효과를 제거할 경우 손실이 발생, 즉 세전으로는 손실발생 - 혼성불일치를 발생하는 거래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기준거래가 D/N/I를 발생시키는 구조화된 거래였음을 확인하는 강력한 지표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0.3	구조화 거래	질세상품화된 거래	-비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채가 세무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명시된 투자메모를 검토한 후 이를 취득하여 세무상 이익이 발생되는 국가에 소재한 비특수관계법인에 해당 사채를 처분하였는데, 이익이 자지금은 D/N/I를 발생시킴	-권고사항 1과 10이 적용되는 구조화된 거래 인지 여부 -이자수익이 비과세되는 사채의 보유자가 구조화된 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Y (△)	-구조화된 거래이며, 최종 사채를 구입한 회사는 불 일치를 의도한 구조화된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함 -다만, 이자수익이 비과세 되는 사채보유자가 세무상 불일치에 대해 합리적인 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구조화된 거래의 당사 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문서, 전자적 방식 또는 구두수단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잠재적 당사자 포함)에게 식별된 잠재적 세무상 이익이 소 개된 경우 해당 거래는 질세상품화된 거래로 간주됨(사례에서는 투자메모에 이자가 세금감면대상일 것이라는 설명 이 포함되어 해당 상품이 질세상품화로 투자자에게 거래되었다는 증거가 됨)
10.4	구조화 거래	구조화약정의 신탁수익자	-도관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에 발행자가 질세상품으로 혼성 금융상품을 발행하였으나, 신탁의 수익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	-수익자가 권고 사항 10.3의 구조화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Y	-수익자는 조세혜택을 향유 하므로 약정의 당사자임	-수익자가 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세금효과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결과는 신탁이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투자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포함되
10.5	구조화 거래	이전불일치약정	-펀드는 혼성불일치 규정을 운용하는 관할국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며, 이들은 세무자문을 받아 혼성불일치 규정을 운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완전자회사를 통해 배부 백론을 실행하도록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함	-차입자가 권고 사항 10.3의 구조화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Y	-차입자는 사전에 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세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중간자회사의 존재가 금융을 위한 것이고 이는 질세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구조화약정의 당사자임	-차입자가 구조나 질세효과를 알 수 있도록 약정설계에 대해 충분한 관여가 있다면 구조화약정의 당사자임 -차입자는 사전에 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세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중간자회사의 존재가 금융을 위한 것이고 이는 질세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구조화약정의 당사자임
11.1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신탁보유자산에 대한 특수관계자 규정 적용	-신탁수익자를 설정한 신탁설정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음 -신탁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신탁 설정자와 신탁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회사 간 특수관계	Y	-세부적인 사실관계들이 신탁설정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 신탁이 완전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탁설정자는 신탁이 보유한 회사의 간접적 보유자이나, 구체 적인 상황별 판단을 통해 신탁관리자가 신탁이 보유한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정의		신탁실정자는 혼성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함	존재 여부		지배하고 있는 신탁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11.2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특수관계자와 지 배그룹 - 조합의 파트너들	- 조합은 관할국에서 도관체로 간주되 며, 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물의 의결 권과 이익배분권을 보유함 - 조합은 자본의 40%를 보유한 국외 법인에 자금을 대하였으며 해당 자금거래는 혼성불일치를 발생시킴	조합원과 조합 의 특수관계 인 간 특수관계 존재 여부	Y	조합이 국외법인의 실질적 인 지배주주임에 따라 조 합의 파트너들이 국외법인 을 공동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적으로 특 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파트너들은 공동지배규정에 따라 다른 파트너와 자본이 합산되어 조합을 공동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국외법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됨
11.3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특수관계자와 지 배집단 - 의결권 과 지분가치의 산출	- 최상의 모회사는 자회사들의 자본을 각각 100%, 100%,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들은 손자회사의 지 분을 25%, 20%, 40%를 보유함 - 다른 투자자들의 지배력은 광범위하 게 분산되어 있음	기업실체인 특 수관계 존재 여 부	Y	직접지배 또는 간접지배를 통해 특수관계가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음	- 직·간접적으로 25%의 자본을 보유하 지 않더라도 동일지배집단에 속해 있다 면 특수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 다른 투자자들의 지배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면 최대주주는 소수지분 만으로도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함
11.4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공동지배-주주간 계약에 따른 지 분합산	- 주주간계약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지 분배당시 거부권, 동반배수청구권, 동반배도청구권이 부여됨 - 회사는 비특수관계자에게 금융상품 을 발행하였고, 이를 비지배주주인 개인이 취득함에 따라 혼성불일치 (D/NII)가 발생함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권 고사항 11.3(c) 에 따른 공동지 배에 해당하는 지 여부	N	- 지분통제 또는 가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합은 공동지배 판단대 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다만, 주주간계약의 조합 이 금융상품을 취득한 비 지배개인이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경우 개인주주는 공동 지배규정에 따른 특수관 계자로 볼 수 있음	- 동반배수·도청구권조항은 주주의 지 분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공동지배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시 고려하지 않음 - 공동지배 여부 판단 시 계약상항에 대 한 어떠한 정의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도 적용됨에 따라 주주간계약이 비지배개인이주주가 보유 한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 우 주주간계약과 혼성불일치가 발생되 는 거래간에 관련이 없어도 개인주주는 공동지배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간 주될 수 있음

No.	대제목	제목	Facts	Question	Y/N	Answer	분석
11.5	특수관계자, 지배집단 및 공동지배의 정의	동일한 이해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지배 또는 지배 지분	-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한 파트너십이 지배하고 있는(80% 보유) 타국기에 소재한 회사에 자금을 대하여 세무상 불일치가 발생함 - 조합의 계약조건은 무한책임사원에 게 조합의 투자를 결정할 우선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무한출자사원이 권고사항 11.3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Y	- 무한출자사원은 권고사항 11.3(d)에 따라 자금을 대어한 회사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동일 투자조합에 의해 부채와 자본이 보유될 경우 권고사항 11.3(d)에 따라 각각의 무한출자사원이 다른 무한출자사원의 자본을 합산, 보유하여 공동으로 조합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함

세법연구 16-02

우리나라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저 자 이동규 · 정 훈 · 조승수 · 신영효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ISBN 978-89-8191-874-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